(ISSN 2092-6014)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1000-100006-14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디자인 관련 법령집

2025. 11.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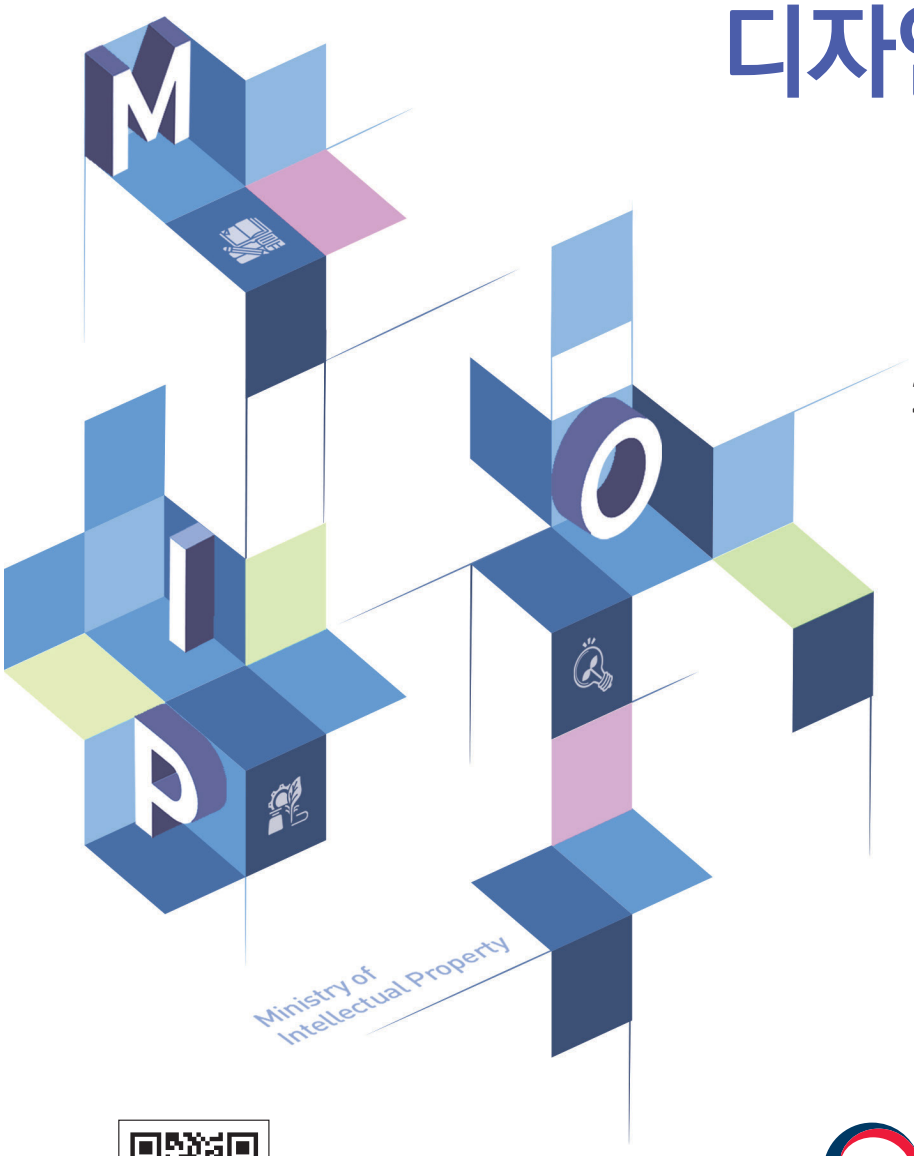

지식재산처

디자인 관련 법령집

Contents 목 차

Ⅰ 디자인보호법령

1.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20962호) ····· 3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74호) ····· 81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061호) ····· 95

Ⅱ 디자인 관련 훈령·예규·고시

1.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지식재산처훈령 제6호) ····· 277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지식재산처훈령 제7호) ····· 313
3.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 353
4.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 367

Ⅲ 부정경쟁방지법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375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9호) ··· 405

Ⅳ 종전 디자인보호법

1. 종전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20692호) ····· 435

I

디자인보호법령

1

디 자 인 보 호 법

법률 제20962호

디 자 인 보 호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제7조(대리권의 범위)
제8조(대리권의 증명)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제11조(개별대리)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6조(기간의 계산)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제18조(절차의 무효)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제21조(절차의 속행)
제22조(절차의 중단)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4조(수계신청)
제25조(절차의 중지)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5조(관련디자인)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제39조(공동출원)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43조(비밀디자인)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6조(선출원)
제47조(절차의 보정)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49조(보정각하)
제50조(출원의 분할)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제52조(출원공개)
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55조(정보 제공)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제5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3장 심사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1조(우선심사)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63조(거절이유통지)
제64조(재심사의 청구)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
제66조(직권보정)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재심사)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70조(심사·결정의 합의체)
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8조(준용규정)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79조(디자인등록료)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제83조(등록료의 보전)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제85조(수수료)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5장 디자인권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5조(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제97조(전용실시권)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99조(통상실시권)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0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1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2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3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제10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105조(디자인권의 포기)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07조(포기의 효과)
제108조(질권)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
제110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16조(과실의 추정)
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118조(서류의 제출)

제7장 심판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25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25조의2(국선대리인)
제126조(심판청구방식)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130조(심판관)
제131조(심판관의 지정)
제132조(심판장의 지정)
제133조(심판의 합의체)
제134조(답변서 제출 등)
제135조(심판관의 제척)
제136조(제척신청)
제137조(심판관의 기피)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40조(심판절차의 중지)
제141조(심판관의 회피)
제142조(심리 등)
제142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43조(참가)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45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46조(심판의 진행)
제146조의2(적시제출주의)
제147조(직권심리)
제148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
제150조(심결)
제151조(일사부재리)
제152조(소송과의 관계)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153조(심판비용)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제15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58조(재심의 청구)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67조(피고적격)
제16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6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2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9장「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제173조(국제출원)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 발생시기)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제183조(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
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
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9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10장 보칙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제208조 삭제
제209조(서류의 송달)
제210조(공시송달)

제211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12조(디자인공보)
제213조(서류의 제출 등)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
제216조(불복의 제한)
제217조(비밀유지명령)
제21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1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1장 벌칙

제220조(침해죄)
제221조(위증죄)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제224조(비밀유지명령위반죄)
제225조(비밀누설죄 등)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7조(양벌규정)
제228조(몰수 등)
제229조(과태료)

부 칙

디자인보호법

제 정 1961. 12. 31 법률 제 951호
전부개정 1973. 2. 8 법률 제2507호
일부개정 1973. 12. 31 법률 제2660호
타법개정 1976. 12. 31 법률 제2957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27호
일부개정 1982. 11. 29 법률 제3568호
일부개정 1986. 12. 31 법률 제3894호
전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208호
타법개정 1993. 3. 6 법률 제4541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5호
일부개정 1995. 1. 5 법률 제4894호
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82호
일부개정 1997. 4. 10 법률 제5329호
일부개정 1997. 8. 22 법률 제5354호
타법개정 1998. 9. 23 법률 제5576호 (특허법)
타법개정 1999. 9. 7 법률 제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2001. 2. 3 법률 제6413호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6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12. 11 법률 제6767호
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 제7289호
일부개정 2005. 5. 31 법률 제7556호
타법개정 2006. 3. 3 법률 제7869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7. 1. 3 법률 제8187호
타법개정 2007. 4. 11 법률 제8357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56호
타법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12.26 법률 제 9223호
타법개정 2009. 1.30 법률 제 9381호 (특허법)
일부개정 2009. 6. 9 법률 제 9764호
타법개정 2010. 2. 4 법률 제10012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11. 6.30 법률 제10809호
일부개정 2011.12. 2 법률 제11111호
타법개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2013. 5.28 법률 제11848호
타법개정 2013. 7.30 법률 제11962호 (변리사법)
일부개정 2014. 1.21 법률 제12288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40호
일부개정 2016. 2.29 법률 제14032호
일부개정 2017. 3.21 법률 제14686호
일부개정 2018. 4.17 법률 제15579호
일부개정 2019. 1. 8 법률 제16203호
일부개정 2020.10.20 법률 제17526호
일부개정 2020.12.22 법률 제17725호
일부개정 2021. 4.20 법률 제18093호
일부개정 2021. 8.17 법률 제18404호
일부개정 2021.10.19 법률 제18500호
일부개정 2022. 2. 3 법률 제18815호
일부개정 2022. 6.10 법률 제18886호
일부개정 2022.10.18 법률 제18998호
일부개정 2023. 6.20 법률 제19494호
일부개정 2023. 9.14 법률 제19710호
타법개정 2024. 2. 6 법률 제20200호
일부개정 2025. 1.21 법률 제20692호
일부개정 2025. 5.27 법률 제2096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像)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 10. 1.〉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

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디자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디자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디자인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디자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의 선임

제8조(대리권의 증명)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제11조(개별대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개정 2025. 10. 1.〉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32조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리인이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모두를 대표한다.〈개정 2025. 10. 1.〉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취하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의 신청
5.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

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지식재산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개정 2025. 10. 1.〉

제16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5. 11. 11.〉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2. 3.,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제58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절차의 무효)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0. 19.,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2. 29.〉

1.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21조(절차의 속행)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22조(절차의 중단)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

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2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제24조(수계신청) ①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30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제4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⑥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5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25조(절차의 중지)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

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개정 2025. 10. 1.〉

② 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의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권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 4. 17., 2025. 10. 1.〉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으로 증명한 날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디자인등록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제7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종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에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20.〉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이들 디자인 사이에는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6. 20.〉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3. 21.〉

② 삭제〈2023. 6. 20.〉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0., 2025. 10. 1.〉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이하 "물품류"라 한다)
4.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7.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8.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7.〉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2. 디자인의 설명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1.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 도면·사진 또는 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도면에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본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

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개정 2025. 10. 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5. 10. 1.〉

제39조(공동출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0.〉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43조(비밀디자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열람청구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라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선출원)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0. 1.〉

제47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2021. 10. 19., 2023. 6. 20.〉

1.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2. 제6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
3.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0. 19.〉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50조(출원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20.〉

③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다.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0. 19., 2023. 6. 20.〉

⑤ 제4항에 따라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9., 2023. 6. 20.〉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46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7. 3. 21., 2025. 10. 1.〉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3. 6. 20., 2025. 10. 1.〉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23. 6. 20.〉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①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52조(출원공개)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제212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이하 "디자인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 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業)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118조 또는 「민법」 제760조·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73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제12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제1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55조(정보 제공) 누구든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지식재산처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5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4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심사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개정 2025. 10. 1.〉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디자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61조(우선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1.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34조, 제37조제4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0.〉

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

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하여 제55조에 따른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7.〉

⑥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7.〉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디자인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4조(재심사의 청구)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제외한다)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20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19.〉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직권보정) ① 심사관은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관은 그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⑥ 직권보정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신설 2023. 6. 20.〉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제35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해

당하는 경우

2. 그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3. 6. 20., 2025. 5. 27., 2025. 10. 1.〉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0., 2025. 10. 1.〉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

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70조(심사·결정의 합의체)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결정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각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 제132조제2항 및 제133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결정할 수 있다.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합의체는 제68조제3항 및 제6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심사장은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사건의 번호
2.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과 관련된 디자인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②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등본을 이의신청인과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

135조(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은 "심사"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본다.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8조(준용규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 제129조,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 제142조제7항, 제145조, 제1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54조를 준용한다.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79조(디자인등록료) ① 제90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이하 "등록료"라 한다)를 내야 하며,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그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낼 때에는 디자인별로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내야 할 등록료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추가납부기간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등록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83조(등록료의 보전)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79조제3항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0. 1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 27.〉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

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5조(수수료)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개정 2025. 10. 1.〉

1.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등록료 및 수수료
2. 제121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청구한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 1. 21., 2016. 1. 27., 2021. 8. 17., 2025. 10.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등록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8. 17., 2025. 10. 1.〉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 2025. 10. 1.〉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6. 1. 27., 2021. 8. 17.〉

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3.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
   나. 제61조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다. 심사관이 제63조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4. 제157조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보정 또는 제12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심판청구가 제128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개정 2022. 10. 18.〉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디자인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개정 2025. 10. 1.〉

1. 디자인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5. 5. 27., 2025. 10. 1.〉

제5장 디자인권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제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였을 때
3. 제83조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주

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3.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제95조(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①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디자인권이 그 디자인권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②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③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디자인권은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①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

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디자인권

2.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디자인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7.〕

제97조(전용실시권)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實施事業)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④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디자인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99조(통상실시권)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

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④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⑤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⑥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00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6조의2제2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이전등록된 디자인등록의 원(原)디자인권자
2.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04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7.〕

제101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제100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타인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받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을 것
2.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3. 제1호 중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제102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2 이상의 등록디자인 중 그 하나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原)디자인권자
2.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의 원디자인권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해당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등록을 받은 자
2. 제104조제2항에 해당하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3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 등록디자인과 유

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하 "원디자인권"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디자인권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원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과 저촉되고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84조제5항,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10조, 제162조, 제16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05조(디자인권의 포기)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및 제97조제4항·제99조제1항 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및 제97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107조(포기의 효과)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제108조(질권)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110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자(공유인 디자인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제목개정 2021. 10. 19.〕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①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소멸된다. 〈개정 2021. 10. 19.〉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신설 2021. 10. 19.〉

〔제목개정 2021. 10. 19.〕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개정 2025. 10. 1.〉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

1.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3.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그 물건의 양도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5. 1. 21.〉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0. 10. 20.〉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16조(과실의 추정) ①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8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심판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9.〉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

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1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2025. 5. 27.〉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디자인등록된 후 그 디자인권자가 제27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①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

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4항제1호, 제49조,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4항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는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까지"로 보고, 제49조제3항 중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심판절차에서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5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제121조제1항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또는 제122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3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

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25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9. 1. 8.〕

제126조(심판청구방식) ① 제121조부터 제123조까지에 따라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0.〉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디자인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22조에 따라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디자인을 말한다)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

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2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실시하려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제120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7. 30.〉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과 출원번호(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일과 등록번호)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 또는 보정각하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개정 2023. 9. 14.〉

1. 심판청구서가 제126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127조제1항에 위반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나.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26조제2항 또는 제12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3. 9. 14.〉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14.〉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14.〉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신설 2023. 9. 14.〉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신설 2023. 9. 14.〉

〔제목개정 2022. 2. 3.〕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

제130조(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31조(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33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32조(심판장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133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4조(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135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제136조(제척신청) 제135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7조(심판관의 기피) 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36조 및 제137조에 따라 제척 및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140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1조(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35조 또는 제13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2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조서는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제142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3. 9. 14.〕

제143조(참가) ① 제125조제2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145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증

거보전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6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42조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146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147조(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제148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같은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50조(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제123조의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51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디자인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디자인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153조(심판비용) ① 제121조제1항 및 제122조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19조·제120조 또는 제123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0. 1.〉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4조제1항·제2항, 제143조 및 제144조는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밝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5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

결로써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58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무효가 된 디자인권(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된 디자인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

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1.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디자인의 선의의 실시
2. 등록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① 제1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이에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 목적 및 디자인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3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⑦ 제1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53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167조(피고적격) 제166조제1항에 따른 소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16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한 소 또는 제166조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6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6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0조에 따른 소송에서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172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개정 2025. 10. 1.〉

제173조(국제출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99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①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헤이그협정의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의 취지
2.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 주소가 서로 다르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락을 받을 주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3. 제174조 각 호에 관한 사항
4.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는 국가(헤이그협정 제1조(ⅹii)에 따른 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5. 도면(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7. 헤이그협정 제5조(1)(vi)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정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출원서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도면 또는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설명
3. 디자인권의 청구범위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국제출원서,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함께 헤이그협정 제1조(ⅹⅹⅷ)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 사본을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인"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장에서 "대체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의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3.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국제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국제출원인(대리인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과 연락을 하기 위한 주소 등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
5. 도면 또는 견본이 없는 경우
6. 지정국 표시가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대체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체서류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로 본다.〈개정 2025. 10. 1.〉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①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출원서 및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사무국으로 보내는 데에 필요한 금액(이하 "송달료"라 한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송달료, 그 납부방법·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①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으로 본다.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33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보,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로 한다.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5. 27.〉

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3조(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① 헤이그협정 제16조(1)(ⅳ)에 따른 포기 및 같은 협정 제16조(1)(ⅴ)에 따른 감축 등 변경사항의 등재에 따라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며, 국제등록디자인권(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 또는 포기의 효력은 국제등록부에 해당 국제등록의 변경사항이 등재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10조(5)(a)에 따른 비밀사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이하 이 절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목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2.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① 제48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은 "도면의 기재사항"으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48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으로 한다. 〈개정 2023. 6. 20.〉

④ 제48조제5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① 제50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는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로 한다.

② 제50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48조제4항"은 "제186조제3항"으로 한다.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51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일"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로 한다.

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5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은 각각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된"으로 한다.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① 제57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7조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2항 및 제5항"은 "제2항"으로 한다.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제61조제1항제1호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37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6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로 한다.

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물품류에 따라 같은 협정 제7조(1)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또는 같은 협정 제7조(2)에 따른 개별지정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및 개별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나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87조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

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199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국제등록만료일"이라 한다)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만료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93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없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2.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이 제96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0. 1.〉

② 제98조제1항제1호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③ 제98조제2항을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은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07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은 각각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①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이하 이 조에서 "경정"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

제디자인등록출원은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경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은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0. 1.〉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206조제2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제10장 보칙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디자인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 · 심사 · 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①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개정 2021. 8. 17., 2024. 2. 6.〉

1.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1의2.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

부를 반출하는 경우

3.「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②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제208조 삭제 〈2024. 2. 6.〉

제209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0조(공시송달) 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11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디자인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212조(디자인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디자인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3조(서류의 제출 등)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제216조(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심결,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제217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그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1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1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았을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장 벌칙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2. 6. 10.〉

제221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제2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제224조(비밀유지명령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7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5조(비밀누설죄 등)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연기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85조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도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225조를 적용할 때에 지식재산처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 2. 6., 2025. 10. 1.〉

제2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제1항,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28조(몰수 등) ① 제2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

는 손해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25. 10. 1.〉

부 칙 〈법률 제20962호, 2025. 5.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 및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74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제3조(심사관의 자격)
제4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제5조(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제8조(심판관 등의 자격)
제9조(서류의 송달 등)
제10조(디자인공보)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 정 1962. 3.22 각 령 제 561호
1963. 7.31 각 령 제 1401호
전부개정 1969.11.10 대통령령 제 4210호
전부개정 1973.12.31 대통령령 제 6975호
1978. 7.26 대통령령 제 9101호 (특허청직제)
전부개정 1981. 7.30 대통령령 제10430호
전부개정 1990. 8.28 대통령령 제13080호
1992.10.27 대통령령 제13746호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12.31 대통령령 제14060호
1996. 6. 3 대통령령 제15011호
1997.12.31 대통령령 제15577호
2001. 6.27 대통령령 제17248호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5. 6.30 대통령령 제18903호
2007. 6.28 대통령령 제20126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9호
전부개정 2009. 6.30 대통령령 제21581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1. 3.30 대통령령 제22788호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개인정보 보호법)
2012. 1.17 대통령령 제23519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3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 2014. 1. 7 대통령령 제25067호
2014. 1.28 대통령령 제25120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926호
일부개정 2015. 4.29 대통령령 제26217호
일부개정 2016. 9.27 대통령령 제27515호
일부개정 2017.12.29 대통령령 제28549호
일부개정 2021. 3.30 대통령령 제31577호
일부개정 2023.12.19 대통령령 제33999호
타법개정 2024. 7. 2 대통령령 제34657호
타법개정 2024. 8. 6 대통령령 제34808호
타법개정 2025.10. 1 대통령령 제35809호
일부개정 2025.11.25 대통령령 제3587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3조(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나 그 소속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 12. 30., 2015. 4. 29., 2025. 10.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4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것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및 시설·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4. 임직원 중 다른 기관에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이 없을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5조(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5. 4. 29., 2025. 10. 1.〉

1.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2.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3.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업무
4.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업무
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업무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다시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개정 2014. 12. 30., 2016. 9. 27., 2017. 12. 29., 2023. 12. 19., 2024. 7. 2., 2024. 8. 6., 2025. 10. 1.〉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3.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6.「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의2.「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의3.「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8.「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9.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지식재산관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11. 삭제 〈2023. 12. 19.〉

12.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지식재산관청의 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13. 삭제 〈2023. 12. 19.〉

14.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제8조(심판관 등의 자격) ①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나 그 소속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1. 지식재산처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 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이 될 수 있다.

③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 3. 30., 2025. 10. 1.〉

1. 특허심판원에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2.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3.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 3. 30., 2025. 10. 1.〉

〔제목개정 2021. 3. 30.〕

제9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제209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이나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령일 및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령증
2.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裁定) 및 디자인등록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⑥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⑦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소장에게 송달한다.
⑧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개정 2025. 10. 1.〉
⑨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송달 장소(국내로 한정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개정 2025. 10. 1.〉
⑩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⑪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⑫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에 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제10조(디자인공보) ① 법 제212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공보는 등록디자인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2호,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2023. 12. 19., 2025. 10. 1., 2025. 11. 25.〉
1. 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6. 디자인등록번호 및 디자인등록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삭제 〈2025. 11. 25.〉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삭제 〈2025. 11. 25.〉
나. 법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다. 법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라. 법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마. 법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인 경우: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
11.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법 제56조 본문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3. 12. 19., 2025. 10. 1.〉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삭제 〈2025. 11. 25.〉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삭제 〈2025. 11. 25.〉
나. 법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다. 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라. 법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마. 법 제56조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해당 디자인등록

출원에 대하여 모두 거절결정을 하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

11.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에 관련된 사항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디자인권자, 자연인인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자연인인 창작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1.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45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213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제35874호, 2025. 1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공보의 게재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10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른다.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늘릴 수 있고, 늘리는 경우에도 각 부과금액을 더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 제229조 제1항제1호	12만5천원	25만원	50만원
나.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9조 제1항제2호	12만5천원	25만원	50만원
다.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경우	법 제229조 제1항제3호	5만원	10만원	20만원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061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서류에 의한 절차)
제4조(서류의 제출)
제5조(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6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제7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8조(포괄위임)
제9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10조(포괄위임의 철회)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12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제13조(증명서류의 제출)
제14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제15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전자문서 이용신고)
제17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18조(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제19조(온라인 제출방법)
제20조(동시제출의 특례)
제21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제22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23조(서류의 원용)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24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제25조(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제26조(서류 등의 보정)
제27조(물건제출서)
제28조(물건의 반환)
제29조(기간의 지정 및 연장)
제30조(기간 경과 구제신청)
제31조(절차의 속행 통지)
제32조(절차의 수계신청)
제33조(포기 또는 취하)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제34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35조(디자인등록출원서)
제36조(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제37조(출원의 보완)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제39조(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제40조(디자인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제4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제42조 삭제
제43조(협의 결과의 신고)
제44조(보정의 각하결정)
제45조(보정의 각하결정서)
제46조(출원의 분할)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48조(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제49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제50조(창작자의 추가 등)
제51조(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제52조(지분 등의 기재)
제52조의2(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3장 심 사

제53조(심사의 순위)
제54조(동일출원의 심사)
제55조(심사참고자료)

제5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7조(우선심사의 신청)
제58조(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제59조(거절이유 통지서 등)
제60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제61조(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제6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제63조(일부 디자인의 포기)
제6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제65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66조(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제67조(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제68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제69조(디자인권의 소멸공고)
제70조(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제5장 심판 및 재심

제71조(심판청구서)
제72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73조(답변서 등)
제74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75조(증거의 첨부)
제76조(심사관의 의견서)
제77조(구술심리)
제77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제78조(심판참가 신청)
제79조(증인의 신청 등)
제80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81조(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82조(심리 재개)
제83조(심판의 결정서)
제84조(심판비용)
제85조(재심청구서)
제86조(준용규정)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87조(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제88조(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제89조(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제90조(국제출원의 방식 등)
제91조(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제92조(국제출원의 보정)
제93조(국제출원의 취하)
제94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제7장 보 칙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제96조 삭제
제97조 삭제
제98조 삭제
제99조 삭제
제100조(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제101조(디자인등록 표시)
제102조 삭제

부 칙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 정 1962.10.19 상 공 부 령 제101호
전부개정 1969. 6.16 상 공 부 령 제262호
전부개정 1970. 3.23 상 공 부 령 제316호
전부개정 1973.12.31 상 공 부 령 제403호
1975.12. 9 상 공 부 령 제468호
1978.11.24 상 공 부 령 제549호
(실용신안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1979. 8. 9 상 공 부 령 제588호
1980. 5.15 상 공 부 령 제602호
(특허법 시행규칙)
1980.12.31 상 공 부 령 제617호
전부개정 1981. 8.31 상 공 부 령 제640호
1987. 7. 7 상 공 부 령 제719호
전부개정 1990. 9. 4 상 공 부 령 제752호
1992.10.30 상 공 부 령 제785호
1993.12.31 상공자원부령 제 22호
1996. 6.22 통상산업부령 제 42호
1998. 2.23 통상산업부령 제 81호
1998.12.31 산업자원부령 제 19호
2001. 6.30 산업자원부령 제129호
2002. 2.28 산업자원부령 제158호
2003. 5.12 산업자원부령 제198호
2005. 2.11 산업자원부령 제257호
2005. 7. 1 산업자원부령 제285호
2005. 9. 1 산업자원부령 제300호
2006. 4.28 산업자원부령 제336호
2007. 6.29 산업자원부령 제405호
2008.12.31 지식경제부령 제 54호
2009. 6.30 지식경제부령 제 80호
2009.12.30. 지식경제부령 제108호
2010. 7.27 지 식 경 제 부 령 제137호
(특허법 시행규칙)
2010. 7.27 지 식 경 제 부 령 제139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011. 3.31 지 식 경 제 부 령 제180호
2011.12.23 지 식 경 제 부 령 제228호
2012.12.31 지 식 경 제 부 령 제279호
2013. 3.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 6.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17호
2014. 1.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47호
(변리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4. 4.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58호
일부개정 2014.12.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2호
일부개정 2015.12.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3호
일부개정 2016. 4.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8호
타법개정 2016.10. 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0호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7. 9.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2호
일부개정 2018. 6.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2호
일부개정 2018.10.1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3호
일부개정 2019. 9.2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6호
타법개정 2020. 7.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9호
일부개정 2020. 8.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1호
일부개정 2020. 8.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1호
일부개정 2021. 6.1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1호
일부개정 2021.10.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3호
일부개정 2022. 4.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8호
일부개정 2022.12.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1호
일부개정 2023.12.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5호
일부개정 2023.12.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5호
일부개정 2024. 3.1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1호
타법개정 2024. 8.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0호
일부개정 2025. 2.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9호
타법개정 2025.10. 1 총리령 제2054호
일부개정 2025.11.28 총리령 제206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 심판청구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제3조(서류에 의한 절차)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6. 10. 4., 2021. 6. 10., 2025. 10. 1.〉

제4조(서류의 제출)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5조(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첨부서류가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6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한글로 적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어로 적은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9. 22., 2025. 11. 28.〉

1.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
2. 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견제출, 보정, 기간 연장신청,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

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⑦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그 대리인은 제6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그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같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한 장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3.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

⑨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무효처분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8조(포괄위임)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에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2. 30.,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에 관한 등록(이하 "포괄위임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

호를 포괄위임등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포괄위임을 받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이 된 사항(이하 "포괄위임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12. 30., 2021. 6. 10., 2025. 10. 1.〉

1.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2.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출

제9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1. 제7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7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포괄위임의 철회)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 선정신고는 선정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8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2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13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고객번호 정보에 인감 또는 서명을 등록한 경우(「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명령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9. 24., 2021. 6. 10., 2025. 10. 1.〉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서명에 대한 공증서 등 서명에 대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에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또는 디자인에 관하여 서로 보호하기로 대한민국과 약속한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파리협약 동맹국 중 하나의 국가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면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④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따라 제출 서류명 및 제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14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이 법 제179조에 따라 본인의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2017. 9. 22.〉

1. 출원인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4. 우선심사신청인
5.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6. 재심사청구인
7. 심판청구인, 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8. 디자인권자
9.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0. 질권자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2025. 10. 1.〉

③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서명 또는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2025. 10. 1.〉

④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2025. 10. 1.〉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2025. 10. 1.〉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2025. 10. 1.〉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2025. 10. 1.〉

〔제목개정 2016. 10. 4.〕

제15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개정 2019. 9. 24., 2025. 10. 1.〉

1.「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3. 삭제〈2020. 7. 1.〉

제16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개정 2016. 10. 4., 2021. 6. 10.〉

1. 삭제〈2021. 6. 10.〉

2. 삭제〈2021. 6. 10.〉

제17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 전자문서는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6. 10., 2025. 10. 1.〉

② 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미리 공지한 경우에는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하여 해당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0. 1.〉

제18조(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온라인 제출 시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1. 6. 10.〉

제20조(동시제출의 특례) ① 법 제96조제1항 및 제6항, 법 제9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96조제1항 및 제6항, 법 제9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둘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22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

고객번호 정보변경신고서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인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4., 2025. 10. 1.〉

제23조(서류의 원용)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2025. 10. 1.〉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2025. 10.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37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재심사의 청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0. 4., 2017. 9. 22., 2018. 10. 18., 2025. 10. 1.〉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가. 법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나. 법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다.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5. 제3조를 위반하여 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 같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受理)할 수 없는 경우
9.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10. 한글로 적지 아니한 경우
11.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나 그 밖의 절차를 밟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한 경우
12.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출한 도면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방법 제8호바목,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2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8호아목부터 차목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재방법 제4호다목 및 라목,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방법 제9호사목에 따른 파일 형식이나 용량을 위반한 경우
1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적지 아니한 경우
15.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16. 해당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7.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그 밖의 서류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8.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디자인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9.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2025. 10. 1.〉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지 아니하고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으면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24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7. 9. 22.〕

제25조(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① 디자인권을 등록받거나 디자인등록출

원을 한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말하며,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2025. 10. 1.〉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2025. 10. 1.〉

제26조(서류 등의 보정) ① 법 제47조, 제48조, 제64조, 제128조, 제186조 또는 이 규칙 제46조에 따라 보정〔「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199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정은 제외한다〕하려는 자(법 제47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47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27조(물건제출서) 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따른다.〈개정 2025. 10. 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물건의 반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그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제출하는 때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29조(기간의 지정 및 연장) ① 법 제38조제2항, 제47조, 제128조제1항, 제177조제2항 또는 제178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 단축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2. 12. 19., 2025. 10. 1.〉

⑤ 법 제16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30조(기간 경과 구제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보완에 관한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기간이 지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31조(절차의 속행 통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32조(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절차의 수계(受繼) 또는 수계신청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수계신청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33조(포기 또는 취하)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포기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제34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제출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서류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1.〉

1.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답변서 또는 소명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또는 절차보완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전문개정 2019. 9. 24.〕

제35조(디자인등록출원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별표 2의 기재사항을 적는다.〈개정 2025. 11. 28.〉

제36조(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제출하는 견본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1. 견본 1개와 그 견본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제출할 것
2. 견본의 규격은 두께 1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얇은 천 또는 종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합을 2백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견본은 파손·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할 것
4. 견본은 취급 또는 보존이 쉬울 것
5. 견본을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우려가 없을 것

제37조(출원의 보완)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절차보완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개정 2019. 9. 24.〉

② 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19. 9. 24., 2020. 8. 28., 2025. 10. 1.〉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제39조(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디자인청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서에 그 비밀보장기간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단축(연장)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40조(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디자인등록출원번호
2. 디자인등록출원일
3.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해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라 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하는 접근코드

〔전문개정 2020. 8. 28.〕

제4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도면(사진·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한다)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42조 삭제 〈2025. 2. 12.〉

제43조(협의 결과의 신고)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을 정하여 신고하려는 자 또는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출원인을 정하여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경합(競合)하는 자 모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변

경신고에 대하여 협의 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한다.

제44조(보정의 각하결정) 심사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45조(보정의 각하결정서) 제44조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번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말한다)
2.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4.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특허법인(유한)"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6.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7. 각하결정연월일

제46조(출원의 분할) 법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하나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려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도면(사진·견본) 1통(분할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신설 2017. 9. 22.,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에 대한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라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내용 중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⑤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한 접근코드를 말한다. 〈신설 2017. 9. 22., 2020. 8. 28., 2025. 10. 1.〉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접근코드를 적음으로써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2.〉

제48조(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5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간행물 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50조(창작자의 추가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창작자의 기재를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법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때부터 법 제90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고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창작자를 정정할 수 없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창작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다만, 창작자의 사망 등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류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디자인권자는 법 제90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디자인권자가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 2025. 11. 28.〉

1. 창작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디자인권자 및 신청 전·후 창작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2025. 2. 12.〕

제51조(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같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지분 등의 기재)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거나 법 제5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적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한 지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②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52조의2(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① 외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8. 28.,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접근코드 부여의 신청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22.〕

제3장 심사

제53조(심사의 순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제54조(동일출원의 심사) 같은 디자인에 대하여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55조(심사참고자료)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1. 참고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5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57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61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58조(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서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디자인등록출원번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말한다)
4.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6.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7. 거절이유통지연월일(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결정연월일

제59조(거절이유 통지서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법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2.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 법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71조 및 제124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60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61조(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① 디자인등록공고일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고되거나 공개된 취지를 게재한 법 제212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디자인공보(이하 "등록디자인공보"라 한다) 또는 공개디자인공보(이하 "공개디자인공보"라 한다)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디자인의 설명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을 그 디자인등록공고일로 본다.〈개정 2025. 11. 28.〉

제6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① 법 제68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12., 2025. 10. 1.〉
1.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인이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 및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의견(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법 제69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을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제63조(일부 디자인의 포기)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별로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2., 2025. 10. 1.〉

제6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9., 2025. 10. 1.〉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디자인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2., 2025. 10. 1.〉

1. 삭제 〈2016. 4. 22.〉
2. 삭제 〈2016. 4. 22.〉

제65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디자인권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증(이하 "디자인등록증등"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28.,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증등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에 그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한 후,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66조(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6조 및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2025. 11. 28.〉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제1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2018. 6. 28., 2025. 10. 1.〉

1.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5호서식까지의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2.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3.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디자인등록증등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

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서식(등록사항란으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서식(등록사항란으로 한정한다)에 그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2025. 10. 1.〉

제67조(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등록증등,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12. 31.〕

제68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2. 31., 2018. 6. 28., 2025. 10. 1.〉

1. 제66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신청
2. 제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신청
3. 제6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신청

② 디자인등록증등,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디자인등록증등 또는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2018. 6. 28., 2025. 10. 1.〉

③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휴대용)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권자, 창작자 등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물품목록 명칭으로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 12. 31., 2023. 12. 21., 2025. 10. 1.〉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1.〉

제69조(디자인권의 소멸공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등록디자인공보 또는 공개디자인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70조(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증명 서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5장 심판 및 재심

제71조(심판청구서) ① 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 또는 제122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72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2. 30.〉

제72조의2(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3. 15.〕

제73조(답변서 등)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법 제144조제2항 및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136조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라 심판관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증거의 첨부) ①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답변서, 의견서, 그 밖에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류에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가 서류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고, 도면·견본 또는 물건인 경우에는 실물을 갈음할 수 있는 복사본이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심판 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77조(구술심리)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7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참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심판사건 관련 법률 또는 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관,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는 법 제142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5.〕

제78조(심판참가 신청) 법 제144조에 따라 심판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증인의 신청 등) ①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 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28.〉

③ 심판참가인이 그 참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①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심리 재개)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심리 재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심판의 결정서) 심판의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결정을 한 심판관이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연월일

제84조(심판비용) 법 제153조제5항에 따른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계산서 및 그 증거서류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85조(재심청구서) 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법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86조(준용규정) 법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및 법 제120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87조(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법 제174조제3호에서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장소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88조(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지식재산처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1.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2.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89조(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지식재산처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90조(국제출원의 방식 등) ① 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와 「헤이그 협정의 1999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공통규칙」의 규칙 7(4)(c)에 따라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2015. 12. 30., 2025. 10. 1.〉

1.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제출원서

2. 제1항에 따른 출원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는 제외한다)
3.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국제출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발명자 선언서
   나.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
   다.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

③ 법 제175조제2항제8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1. 출원인의 체약당사자
2. 디자인의 수 및 도면의 수
3. 국제등록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
4. 출원인의 서명

④ 법 제175조제3항에 따른 견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견본의 수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견본 1개와 지정국 중 비밀사본을 받기를 원한다고 통지한 국가에 각각 제출할 견본의 수를 합한 것으로 할 것
2. 견본은 펼쳤을 때 가로 26.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50그램, 두께는 3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3. 견본을 제출하는 복수디자인 국제출원의 경우 각각의 견본들이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용지에 부착되어야 하며, 오름차순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을 것
4. 모든 견본은 하나의 포장에 담겨져야 하고, 견본의 포장은 어느 방향이든 그 크기가 30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4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제91조(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① 법 제177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177조제2항에 따라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대체서류"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영어로 작성된 대체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대체서류가 지정기간 이후에 제출된 경우

에는 이를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92조(국제출원의 보정) ① 법 제173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47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국제출원서의 보정인 경우: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류 1통
2.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의 보정인 경우: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93조(국제출원의 취하)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4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법 제20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달라진 경정
2. 법 제48조에 따른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정
3. 국제등록일 또는 우선일에 대한 경정

제7장 보칙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206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電報)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발급이나 복사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2., 2019. 9. 24.〉

1. 디자인등록원부 발급신청, 자료열람(복사)신청, 서류등본(초본) 발급신청 및 디자인원부기록사항 발급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열람(복사, 발급)신청서

2.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및 심결문송달증명 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6조 삭제 〈2024. 8. 7.〉

제97조 삭제 〈2024. 8. 7.〉

제98조 삭제 〈2024. 8. 7.〉

제99조 삭제 〈2024. 8. 7.〉

제100조(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법 제212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는 읽기전용 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01조(디자인등록 표시) ① 법 제214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 표시
2. 디자인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20. 8. 28.〕

제102조 삭제 〈2023. 12. 21.〉

부 칙 〈제2061호, 2025.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정이나 절차보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별표 1〕〈개정 2019. 9. 24.〉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제35조제3항 관련)

1. 한글 글자체 도면: 지정글자 500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지정글자 도면 1】

가각간갈감갔강갖같
개갯거건걸겁것게겠
겨격겪견결겼경계고
골곳공과관교구국군
굴궁귀그극근글금급
기길김깁깃까깎깔깡
깨꾸꾼꿈꿔뀌끄끗끝
끼낀낌나난날남났낭
낮낯낱내낸낼냄냅냇
냈너넌널넘넛넣네녀
년녕노논놀놓누눈눌
느는늘니닌님닙다닦

【지정글자 도면 2】

단달닭담답닷당대댁
더던덩데도독돈돋돌
동돼되된될됩두둑둘
둥뒤뒷드득든들듭등
디따땀때떤떨떻또똑
뚝뛰뜨뜻라란랄람랑
래러럭런럼럽럿렀렇
레력련렴렸례로록롱
루류르른를리린림릿
마막만많말맑맙망맞
매맺머먹먼멍며면명
몇모목몸못묘무묶문

【지정글자 도면 3】

묻물뭐미민믿밀바박
밖반받발밝밤밥방배
뱀버번벌법벙베벽변
별병보복본볼봄봅봉
부분불붕붙비빈빠빨
뿐쁘쁜쁨사산살상새
색생서석선설섬섰성
세셔셨소속손솔송수
숙순술숨숲쉬쉴스슨
슬슴습슷승시식신실
싫심십싱싶싹써쎄쓰
씀씨씩씬아안앉않알

【지정글자 도면 4】

았앞애야약양어억언
얻얼엄업없엇었엉에
엣여연열엷였영예옛
오옥온올옴와완왜외
요욕용우욱운울움웃
원월위유으은을음읍
의읜이익인일읽임입
있잊자작잔잘잠잡장
재저적전절점정제조
족좀종좋죄죠주죽준
줄줌중즐지직진짐집
짓짜짝째쪽찡차착찬

【지정글자 도면 5】

참창찾채책처천철첫
초촌추춤충치친침칸
커컴켜코콩크큰큼큽
키킬타태터테토통투
특틈파판퍼퍽편표푸
피하학한함합해햇향
혜혀현호혼화확활획
후훈훌흐히

【보기문장 도면】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늘 씀에
편케하고자
함이라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늘 씀에 편케하고자 함이라

【대표글자 도면】

가낡더
떴끼릭
맺료콤
으숲황

2. 영문자 글자체 도면: 지정글자 52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

3. 숫자 글자체 도면: 지정글자 10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지정글자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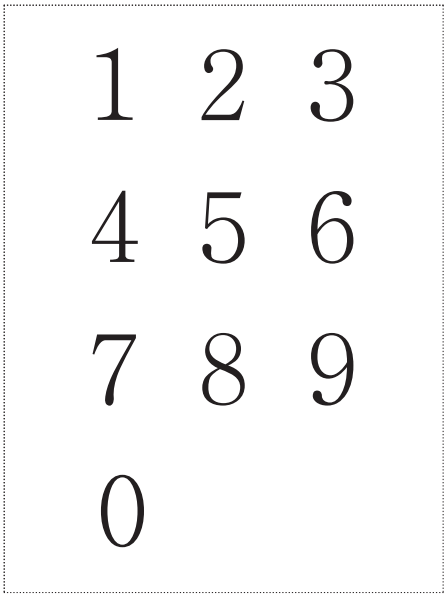

【보기문장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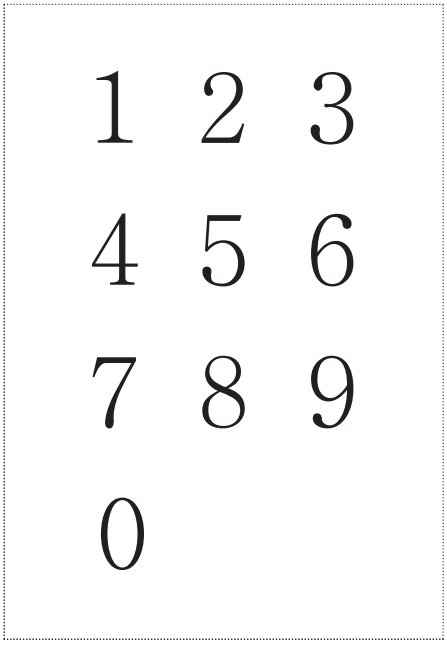

【대표글자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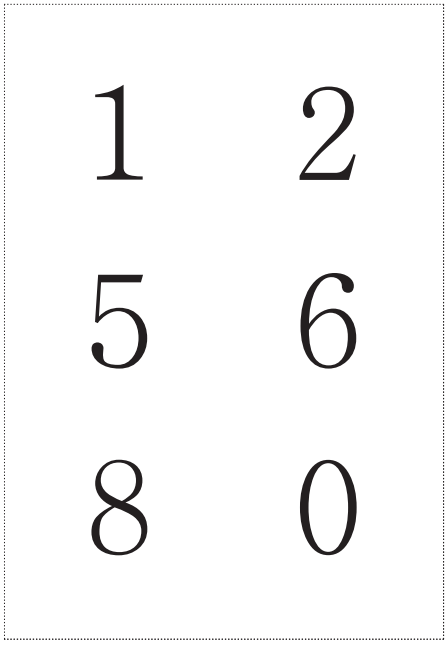

4. 특수기호 글자체 도면: 지정글자 16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지정글자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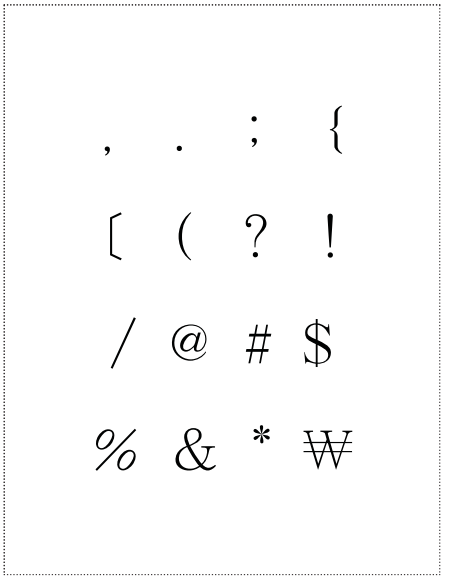

【보기문장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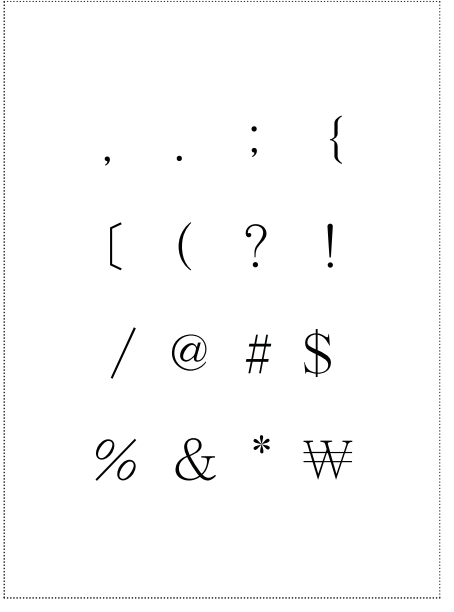

【대표글자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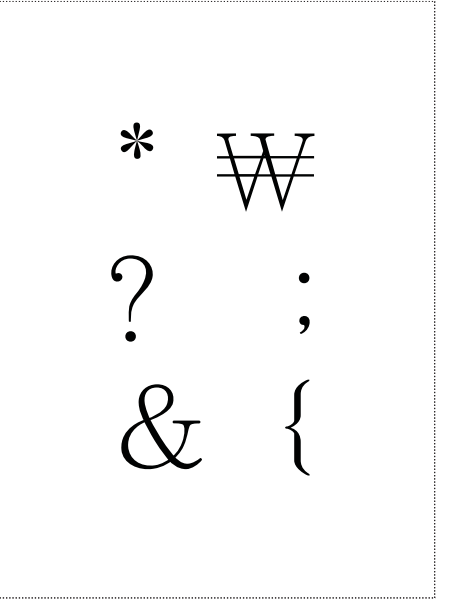

5. 한자 글자체 도면: 지정글자 900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지정글자 도면 1】

街佳假價加可家歌各
脚角干看間渴感敢減
甘甲强江講降個改皆
開客更去居巨擧車乾
健堅犬見決潔結京庚
慶敬景競經耕輕驚季
溪界癸計鷄古告固故
考苦高谷曲穀困坤骨
公共功工空果科課過
官觀關光廣交敎校橋
久九口句救求究舊國
君軍郡弓勸卷權歸貴

【지정글자 도면 2】

均極勤根近今禁金及
急給其基己幾技旣期
氣記起吉暖難南男乃
內女年念怒農能多丹
但單短端達談答堂當
代大對待德刀到圖島
度徒道都獨讀冬動同
東桐童斗豆頭得燈登
等樂落卵浪郎來冷兩
凉良量旅力歷練蓮列
烈令領例禮勞老路露
綠論料柳流留六陸倫

【지정글자 도면 3】

律利李理異林立馬莫
晩滿萬末亡忘忙望每
買賣妹麥免勉眠面名
命明鳴暮母毛木目卯
妙務戊武無舞茂墨問
文聞門勿物味尾未米
美民密朴半反飯發房
放方訪防拜杯白百番
伐凡法變別丙兵病保
報步伏復服福本奉逢
部否夫婦富扶浮父北
分不佛朋備悲比非飛

【지정글자 도면 4】

鼻貧氷事仕使史四士
寺射巳師思死私絲舍
謝算山散産殺三上傷
商喪尙常想相賞霜色
生序暑書西夕席惜昔
石仙先善線船選鮮舌
設說雪城姓性成星盛
省聖聲誠世勢歲洗稅
細小少所消笑素俗續
速孫松送修受壽守愁
手授收數樹水秀雖須
首誰叔宿淑純順戌崇

【지정글자 도면 5】

拾習乘勝承始市施是
時示視試詩式植識食
信新申神臣身辛失室
實心深甚十氏兒我惡
安案眼顔巖暗仰哀愛
也夜野弱約若藥楊洋
羊讓陽養於漁語魚億
憶言嚴業余如汝與餘
亦易逆然煙研悅熱炎
葉榮永英迎藝五午吾
悟烏誤屋玉溫瓦臥完
曰往王外要欲浴勇容

【지정글자 도면 6】

用于又友右宇尤憂牛
遇雨云運雲雄元原圓
園怨遠願月位偉危威
爲唯幼有柔油猶由遊
遺酉肉育恩銀乙吟陰
音飮泣邑應依意矣義
衣議醫二以已異移而
耳益認人仁印因寅引
忍一日壬入姉子字慈
者自作昨場壯將章長
哉在才材栽財再爭低
著貯敵的赤適傳全典

【지정글자 도면 7】

前展戰田錢電節絶店
接丁井停定庭情政正
淨精貞靜頂帝弟祭第
製諸除題兆助早朝祖
調造鳥族足存尊卒鐘
宗從種終坐左罪主住
宙晝朱注走酒竹中衆
重卽增曾證之只地志
持指支枝止知紙至直
盡眞辰進質執集且借
次此着察參唱昌窓採
菜冊責妻處尺千天川

【지정글자 도면 8】

泉淺鐵晴淸聽請靑體
初招草寸村最推秋追
丑祝春出充忠蟲取吹
就治致齒則親七針快
他打脫探太泰宅土統
通退投特波破判八敗
貝便片篇平閉布抱暴
表品豊風彼皮匹必筆
下何夏河賀學寒恨漢
閑限韓含恒亥害海解
幸行鄕香向虛許革現
賢血協兄刑形惠乎呼

【지정글자 도면 9】

好戶虎號湖或婚混紅
化和火畵花華話貨患
歡活皇黃回會孝效厚
後訓休凶胸黑興喜希

【보기문장 도면】

天地之道一陰
陽五行而已坤
復之間爲太極
而動靜之後爲
陰陽

天地之道一陰陽五行而已坤復之間爲太極而動靜之後爲陰陽

【대표글자 도면】

王講示
買道人
永多武
女明街

〔별표 2〕〈개정 2025. 11. 28.〉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제35조제4항 관련)

1. 물품에 대한 설명: 물품의 사용목적·사용방법·재질 또는 크기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전기스탠드로 뒷면에 음이온 발생장치를 갖추고 있음. 재질은 갓 부분은 표면이 매끈한 유리 재질이고, 몸체 부분은 구형(球形) 돌기가 형성된 철재이며, 전체 크기는 50㎝임.

2. 도면에 대한 설명: 도면(사진 또는 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도면별 설명
   (예문) 도면 1은 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2는 이 디자인의 앞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뒷면은 앞면과 같고, 도면 3은 이 디자인의 윗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4는 이 디자인의 아래쪽에서 바라본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9는 도면 5의 A부터 A′까지 부분의 절단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3. 도면에서 길이 표시 생략에 대한 설명: 도면에서 길이 표시를 생략하여 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이 명확하지 않아 생략한 길이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면상 몇 ㎜, 몇 ㎝ 또는 몇 m가 생략되었음을 표시
   (예문) 도면 1에서 표현된 디자인의 도면상 생략된 길이는 5㎝임.

4. 도면의 색채에 대한 설명: 도면 또는 사진에 색채를 입히는 경우에 흰색·회색 또는 검은색 중 하나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 도면 1에서 윗부분은 회색이고, 아랫부분은 검은색이며, 기둥 부분의 흰색은 생략하였음.

5. 투명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설명: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용기 내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윗면의 덮개 부분이 투명 재질로 되어 있음.

6. 부분디자인에 대한 설명: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물품의 부분을 도면이나 견본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전자의 손잡이를 나타내는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으려는 부분임.

7. 화상디자인에 대한 설명: 화상디자인이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관한 설명을 명확하게 기재
   (예문1) 이 화상디자인은 스마트 팔찌에서 투영되어 손목에 표시된 아이콘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며 스마트폰에 연동되어 전화, 날씨, 카메라, 전자계산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문2) 이 화상디자인은 벽면에 빛을 투사하여 시간, 날짜, 날씨, 온도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8.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에 대한 설명: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서 화면이 도시되는 부분만을 제출하는 경우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나타나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며 화면이 도시되는 부분 이외의 도면은 생략하였음.

9. 열리고 닫히는 디자인 또는 펼쳐지고 접히는 등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에 대한 설명: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변화 전후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자동차 뒤쪽의 스포일러 부분이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도면A 1부터 도면A 7까지는 펼쳐진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이며, 도면B 1부터 도면B 7까지는 접힌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임.

10.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에 대한 설명: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움직이는 상태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 상태, 동작 상태(동작 중의 기본적 자세, 동작 내용을 나타내는 궤적 등)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움직이는 "로봇완구"의 디자인으로서 도면A 1부터 도면A 7까지는 정지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면B 1부터 도면B 7까지는 움직이는 연속 동작을 나타내는 일련의 도면임.

11. 토목건축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토목건축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반복 생산성, 운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1) 이 디자인은 가옥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건축설계도에 따라 부품을 미리 생산·조립하여 시공하는 공법으로 이루어짐.
    (예문2) 이 디자인은 교량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제로 제작·조립하여 시공하는 공법으로 이루어짐.

12.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한 짝의 형태만을 도면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한 짝을 생략하여 그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문) 이 디자인은 좌·우측 이어폰이 한 세트로 구성된 블루투스 이어폰의 한 쪽 이어폰을 나타낸 것으로, 다른 한 쪽 이어폰의 디자인은 이 디자인과 대칭임.

13.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형태를 완전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마네킹 등의 보조적인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덧신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발에 씌운 형태를 완전하게 나타내기 위해 마네킹을 사용한 것으로 마네킹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것임.

14. 디자인 창작의 내용에 관한 설명: 공지된 디자인과 구별되는 독창적 요소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설명
    (예문1) 이 디자인은 기존의 단순한 원통형 조명과 달리, 물결 형태의 곡선을 상단에 적용하여 자연의 흐름을 연상시키고, 조명 조절 스위치를 곡선 내부에 숨겨 미려한 일체감을 구현한 점이 독창적임.
    (예문2) 이 디자인은 기존 의자의 일자형 다리 구조에서 벗어나, 나무 뿌리의 유기적 곡선을 모티브로 한 비대칭 다리를 적용하여 자연미와 조형미를 동시에 표현한 것임.

비고: 디자인의 설명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합니다.

〔별표 3〕 삭제 〈2025. 11. 28.〉
〔별표 4〕 삭제 〈2019. 9. 24.〉

〔별표 5〕〈개정 2014.12.31.〉

한 벌의 물품의 구분(제38조제4항 관련)

1. 한 벌의 여성용 한복 세트
2. 한 벌의 남성용 한복 세트
3. 한 벌의 여성용 속옷 세트
4. 한 벌의 장신구 세트
5. 한 벌의 커프스단추 및 넥타이핀 세트
6. 한 벌의 흡연 용구 세트
7. 한 벌의 침장 세트
8. 한 벌의 커피 용구 세트
9. 한 벌의 화채 용구 세트
10. 한 벌의 반상기 세트
11. 한 벌의 다기(茶器) 세트
12. 한 벌의 양념용기 세트
13. 한 벌의 밥그릇과 국그릇 세트
14. 한 벌의 주기(酒器) 세트
15. 한 벌의 나이프, 포크 및 스푼 세트
16.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세트
17. 한 벌의 제기(祭器) 세트
18. 한 벌의 세면 화장대 세트
19. 한 벌의 책상과 책꽂이 세트
20. 한 벌의 거실용 가구 세트
21. 한 벌의 테이블 세트
22. 한 벌의 사무용 가구 세트
23. 한 벌의 응접 세트
24. 한 벌의 탁자와 의자 세트
25. 한 벌의 부엌가구 세트
26. 한 벌의 서도용구(書道用具) 세트
27. 한 벌의 필기구 세트
28. 한 벌의 오디오 세트

29. 한 벌의 개인용 컴퓨터 세트
30. 한 벌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받침대 세트
31. 한 벌의 문짝과 문설주 세트
32. 한 벌의 화장실 청소용구 세트
33. 한 벌의 세면용구 세트
34. 한 벌의 전기칫솔 세트
35. 한 벌의 캠핑용 식기 세트
36. 한 벌의 자동차용 바닥매트 세트
37. 한 벌의 야외용 테이블 및 의자 세트
38. 한 벌의 자동차용 시트커버 세트
39. 한 벌의 변기용 부속품 세트
40. 한 벌의 골프클럽 세트
41. 한 벌의 드럼 세트
42. 한 벌의 사무용구 세트
43. 한 벌의 자동차용 페달 세트
44. 한 벌의 차량용 오디오 기기 세트
45. 한 벌의 스피커 박스 세트
46. 한 벌의 태권도복 세트
47. 한 벌의 유도복 세트
48. 한 벌의 검도복 세트
49. 한 벌의 등산복 세트
50. 한 벌의 스키복 세트
51. 한 벌의 승마복 세트
52. 한 벌의 야구복 세트
53. 한 벌의 손톱·발톱 미용기구 세트
54. 한 벌의 가방 세트
55. 한 벌의 지갑 및 벨트 세트
56. 한 벌의 화장용 브러시 세트
57. 한 벌의 머리빗 세트
58. 한 벌의 이발기구 세트
59. 한 벌의 면도용구 세트
60. 한 벌의 수유용품 세트
61. 한 벌의 출산 준비물 세트

62. 한 벌의 커튼 및 블라인드 세트
63. 한 벌의 트로피·상패 세트
64. 한 벌의 액자 세트
65. 한 벌의 정리용 수납상자 세트
66. 한 벌의 아이스박스 세트
67. 한 벌의 주방용 밀폐용기 세트
68. 한 벌의 와인잔 세트
69. 한 벌의 주방용 칼 세트
70. 한 벌의 주방용 국자 및 뒤집개 세트
71. 한 벌의 남자용 수의(壽衣) 세트
72. 한 벌의 여자용 수의 세트
73. 한 벌의 침실용 가구 세트
74. 한 벌의 가구용 손잡이 세트
75. 한 벌의 운동용 아령 및 역기 세트
76. 한 벌의 게임기 세트
77. 한 벌의 제도용구 세트
78. 한 벌의 스위치 및 콘센트 세트
79. 한 벌의 원예용구 세트
80. 한 벌의 수동공구 세트
81. 한 벌의 드라이버 세트
82. 한 벌의 손목시계 세트
83. 한 벌의 반창고 세트
84. 한 벌의 부항기 세트
85. 한 벌의 프라이팬 세트
86. 한 벌의 선박용 조타실(操舵室) 가구 세트
87. 한 벌의 선박용 침실 가구 세트
88. 한 벌의 선박용 휴게실 가구 세트
89. 한 벌의 선박용 선원식당 가구 세트
90. 한 벌의 자동차용 대시보드 패널(dashboard panel, center fascia) 세트
91. 한 벌의 레저자동차의 침실용 가구 세트
92. 한 벌의 주방용 붙박이(built-in) 물품 세트
93. 그 밖에 둘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 6〕〈개정 2015.12.30.〉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위반 횟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 사항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			
		1회	2회	3회	4회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전담인력의 수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전담인력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 취소	
3) 영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 취소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10. 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답변, 소명)서

(앞쪽)

〔서류 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
□ 재심사청구에 따른 의견 □ 심판사건 답변
□ 심판사건 의견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답변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의견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재답변
□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지식재산처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심판번호】)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 □ 전부 불수용 □ 일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의 표시】 직권보정 사항 중 ( )번 사항)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의견(답변, 소명)내용】
(【증거방법】)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8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1. 서류 구분 및 관련 규정

서류 구분	내용	관련 규정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사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	심사관이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통지한 직권보정 사항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심판장이 통지한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66조, 제128조제5항
재심사청구에 따른 의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64조
심판사건 답변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고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심판사건 의견	참가신청에 대해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 결과를 통지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44조 및 제147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답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권리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의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답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재답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절차에서 이의신청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부적합한 서류로 본다는 반려이유통지를 받고 소명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의2제3항

2. 처리절차

<table>
<tr><td rowspan="2">의견서·답변서·
소명서제출</td><td rowspan="2">⇒</td><td rowspan="2">접수 및
접수증 발급</td><td rowspan="2">⇒</td><td rowspan="2">서식 적격심사</td><td rowspan="2">⇒</td><td>·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td></tr>
<tr><td>·서식 흠결 시:
보정 통지 또는
반려 통지</td></tr>
<tr><td>(제출인)</td><td></td><td>(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td><td></td><td>(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td><td></td><td>(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td></tr>
</table>

※ 기재방법

1.【서류 구분】 란
서류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제출인】 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성명(명칭)】 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 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 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 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4)【특허고객번호】 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 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 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 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 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 란을 기재하거나 【주소】 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2) 【주소】 란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 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 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 항목 중 【포괄위임등록번호】 를 적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 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라. 공통

1) 【사건과의 관계】 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 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 란을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제출인】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 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 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 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마. 대리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반려이유통지를 받고 소명하려는 경우에는【대리인】란에 【성명의 영문 표기】란과 【대리인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성명의 영문표기】란을 【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의 명칭을 적습니다.

4. 【사건의 표시】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지식재산처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란 또는 【심판번호】란에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의 경우에는 【출원번호】의 다음 행에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 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30-2010-1234567
디자인일부 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 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30-2010-123456
등록에 관한 절차	【디자인등록번호】 권리 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 ※복수디자인등록의 경우에는 권리 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4자리)	30-1234567 ※복수디자인등록의 경우에는 30-1234567-0001
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DM/123456 또는 DM/123456A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지식재산처참조번호】 KR-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KR-2014-3123456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사건 구분-일련번호(6자리)	2010-당-123456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란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6.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 란
   가. 【서류 구분】 란의 선택사항 중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을 선택한 경우에만 이 난을 적습니다.
   나. 직권보정의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 불수용 항목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다. 직권보정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불수용 항목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하고, 직권보정된 사항들 중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의 번호를 일부 불수용의 표시 항목에 적습니다.

7. 【의견(답변, 소명)내용】 란

가. 의견(답변, 소명)의 이유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를 첨부합니다.

나. 【증거방법】 란에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적고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란에 증거내용과 그 부수를 적습니다.

8. 【첨부서류】 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의견,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 재답변의 경우에는 의견 또는 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심판사건답변, 이의답변의 경우에는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의 경우에는 소명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방법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 참조)

나. 【첨부서류】 란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10-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10-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

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파일이어야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3DS(3D Studio), DWG(Drawing), DWF(Design Web Format),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3DM(3 Dimensional Modeling)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 11. 28.〉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정(절차보완)서

(앞쪽)

【보정 구분】 □ 출원서 등 보정 □ 도면 등 보정 □ 이의신청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충 □ 출원서 보완
【제출처】 □ 지식재산처장 □ 특허심판원장 □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
【보정(보완, 보충)방법】
【보정(보완, 보충)내용】
(【그 밖의 사항】 □ 재심사청구 □ 지정기간단축신청)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기재방법 제10호를 참조합니다)
【보정료】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방법 제12호를 참조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1. 보정 구분 및 관련 규정

보정 구분	내용	관련 규정
출원서 등 보정	출원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書誌)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도면 등 보정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이의신청서 등 보정	이의신청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2조
심판청구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심판청구서 등 보충	보충요구서를 통지받고 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충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절차보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서 출원을 보완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2.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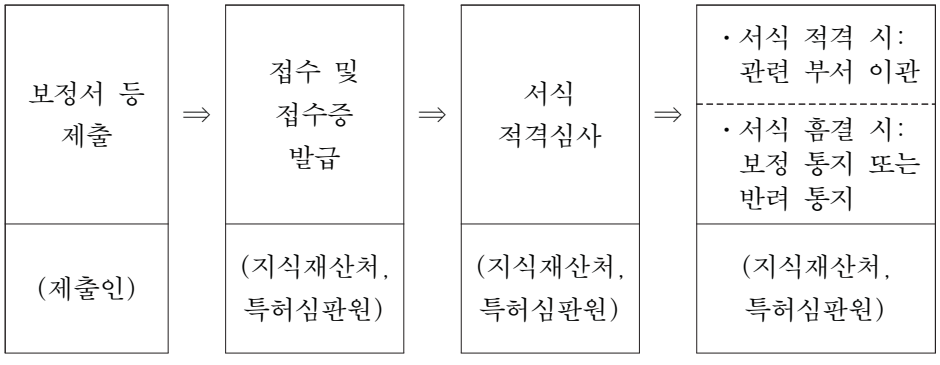

※ 기재방법

1. 【보정 구분】 란

보정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처】 란

가. 제출처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심판청구와 관련된 보정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다. 재심사청구와 관련된 보정인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 안에 표시(예: ☑)합니다.

3. 【제출인】 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 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 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 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 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4) 【특허고객번호】 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 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 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 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

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 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 란을 기재하거나 【주소】 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2) 【주소】 란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 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 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 항목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 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라. 공통

1) 【사건과의 관계】 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 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제출인】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4. 【대리인】 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 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 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 란의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 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5. 【사건의 표시】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란 또는 【심판번호】란에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으며,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의 경우에는 【출원번호】의 다음 행에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심판청구서 등 보정에서 보정할 서류가 법정기간연장신청과 관련된 경우에는 【출원번호】란에 해당 출원번호를 적고, 【심판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 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30-2010-1234567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DM/123456 또는 DM/123456A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 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30-2010-123456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사건 구분-일련번호(6자리)	2010-당-123456

6.【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란

가. 지식재산처장 등의 통지에 의한 보정인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나. 통지에 의하지 않고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예〕【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1-1-00-1234567-12

다.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7.【보정(보완, 보충)할 서류】 란

보정, 보완 또는 보충하려는 서류의 명칭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1〕【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예 2〕【보충할 서류】 심판청구서

8.【보정(보완, 보충)할 사항】 란

가. 하나의 보정서로 도면, 출원서, 그 밖의 서류의 서지(書誌)사항의 보정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도면의 보정과 서지사항의 보정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출원서 등 보정, 절차보완, 이의신청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정(보충)의 경우

1)【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 란, 【보정(보완, 보충)방법】 란 및 【보정(보완, 보충)내용】 란에 각각 해당 내용을 적고, 보정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 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첨부서류
【보정방법】 제출
【보정내용】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수수료
【보정방법】 납부
【보정내용】 미납 수수료

2)【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 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 항목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다만, 대항목에 속하는 소항목(창작자의 【주

소】 등) 단위의 보정은 불가능하므로 대상 항목을 대항목 단위로 적습니다.

〔예〕 【보정대상 항목】 창작자, 우선권 주장, 첨부서류 등

3) 【보정(보완, 보충)방법】 란에는 "정정", "추가", "제출", "납부" 등으로 적고, 하나의 식별 항목에 둘 이상의 보정방법을 적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쉼표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여러 개로 구성되는 식별 항목(창작자, 대리인 등) 중 일부내용(대리인 3명 중 1명)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보정방법을 "정정"으로 적습니다.

〔예〕 【보정방법】 정정, 추가

4) 【보정(보완, 보충)내용】 란에는 보정대상 항목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내용을 적고, 보정대상 항목이 반복되거나 소항목이 있는 경우(창작자, 우선권 주장 등)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 항목의 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보정방법이 "정정" 또는 "추가"인 경우 보정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정내용을 표시하며, 별지로 제출한 내용을 보정할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를 전문(全文) 보정하여 첨부합니다.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창작자

【보정방법】 정정, 추가

【보정내용】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1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123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2

5) 출원인 또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창작자가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의 특허고객번

호 정보변경(경정)을 이용하여 보정합니다.

6) 복수디자인출원 중 일부디자인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란에 보정하려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고, 【보정(보완, 보충)내용】란에는 해당 디자인의 서지사항 일부(【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부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까지)를 보정하여 새로 작성한 내용을 적고, 보정내용이 해당 디자인의 서지사항에 대한 "정정" 또는 "추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정된 내용임을 표시합니다.

〔예〕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4 디자인의 창작자의 주소를 정정하고 창작자를 1명 추가하며 우선권 주장 출원번호를 정정하는 경우

【보정대상 항목】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4
【보정방법】 정정, 추가
【보정내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피아노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7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1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568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2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US
【출원종류】 디자인
【출원번호】 2010-123456
【출원일자】 2010. 01. 03.
【증명서류】 첨부

7)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적고,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적고, 복수디자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적으며, 아울러 디자인이 추가되는 경우에는【수수료】란에 【그 밖의 수수료】란을 만들어 추가되는 디자인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예 1〕【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출원 구분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출원 구분】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예 2〕【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출원 구분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출원 구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예 3〕【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출원 구분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출원 구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복수디자인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디자인의 수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디자인의 수】3

8) 관련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거나 단독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적습니다.

〔예 1〕 관련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인 경우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예 2〕 단독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인 경우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관련디자인

【보정대상항목】 기본디자인의 표시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등록, 참조)번호】 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4

9)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하면서 「디자인보호법」 제36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예와 같이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란의 다음 줄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공개형태】 및 【공개일】란을 각각 만들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디자인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을 적습니다. 【첨부서류】란에는 주장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해당 서류를 보정서에 첨부합니다.

〔예〕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공개형태】 간행물에의 발표

【공개일】 2010. 07. 01.

다. 도면 등 보정의 경우

1)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 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도면"으로 적습니다.

〔예〕 【보정할 서류】

【서류명】 디자인도면

또한, 복수디자인출원 중 일부디자인의 도면에 대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 란에 해당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1〕 【보정할 서류】

【서류명】 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3

〔예 2〕 【보정할 서류】

【서류명】 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보정할 서류】

【서류명】 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3

2)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 란, 【보정(보완, 보충)방법】 란 및 【보정(보완, 보충)내용】 에는 모두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별지에는 【보정대상 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 란을 만들어 적으며, 보정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 항목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복수디자인출원 중 둘 이상의 디자인에 대하여 도면을 보정할 경우에는 각 디자인별로 면을 바꾸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은 후 【보정할 서류】, 【보정대상 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 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예 1〕 【보정대상 항목】 도면 1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정정한 도면 1

〔예 2〕 【보정대상 항목】 참고도면 3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추가한 참고도면 3

〔예 3〕 【보정대상 항목】 참고도면 1
【보정방법】 삭제

4) 【보정대상 항목】 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 항목명을 적고, 【보정방법】 란에는 "추가", "삭제", "정정" 중 하나만을 적으며, 보정방법을 복수로 적을 수 없습니다. 보정방법이 "추가" 또는 "정정"인 경우에는 【보정내용】 란에 추가 또는 정정된 내용을 적고, 보정방법이 "삭제"인 경우에는 【보정내용】 란을 삭제합니다.
5) 도면 중의 모든 식별 항목은 보정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보정대상 항목】이 "디자인의 설명"인 경우에는 【보정내용】 란에 해당 식별 항목의 내용을 모두 새로 작성하여 적습니다.
7) 도면을 출원했으나 디자인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으로서 변화 전·후의 상태를 각각의 도면에 표현하는 경우 등)에는 새로 추가되는 도면에는 기존의 도면과 구별할 수 있도록 다음 예와 같이 도면B로 구별하여 【도면B 1】, 【도면B 2】, 【도면B 3】 … 순으로 적고, 【디자인의 설명】 란에 "변화 전 상태의 도면은 별도 알파벳 문자가 없는 도면 1부터 도면 7까지이며,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은 도면B 1, 도면B 2, 도면B 3 … 등으로 표시한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여러 벌의 도면 간의 구분기준을 명시합니다.

〔예 1〕 새로운 벌의 도면이 추가되는 경우
【보정대상 항목】 도면B 1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추가한 도면B 1

〔예 2〕 기존 도면의 일부가 수정되고 새로운 한 벌의 도면이 추가되는 경우
【보정대상 항목】 도면 1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정정한 도면 1

【보정대상 항목】 도면B 1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추가한 도면B 1

9.【그 밖의 사항】란

가. 도면 등 보정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디자인보호법」 제64조에 따른 기간에 심사관에 의한 거절결정서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밖의 사항】란의 재심사청구 선택란에 표시합니다.

〔예〕【그 밖의 사항】 ☑재심사청구

나. 출원서 등 보정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디자인보호법」 제63조에 따른 기간에 심사관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지정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밖의 사항】란의 지정기간단축신청 선택란에 표시합니다.

〔예〕【그 밖의 사항】 ☑지정기간단축신청

10.【수수료】란

가.【수수료】란은 서식제출 후에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보정료 납부대상인 경우에는 【보정료】란에, 그 밖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료】란의 다음 줄에 【그 밖의 수수료】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합계】란에는 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심판청구서 등 보충의 경우에는 【수수료】란을 삭제합니다.

〔예〕【수수료】
【보정료】
【그 밖의 수수료】

【합계】

나. 거절결정 이후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정료】란을 다음 예와 같이 【재심사청구에 따른 보정료】란으로 수정하여 해당 금액을 적고, 【합계】란에 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예〕 【수수료】

【재심사청구에 따른 보정료】

【합계】

다.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합계】란의 다음 줄에【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11.【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2.【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정(보충)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방법 제3호, 제4호 및 제8호를 참조합니다)

나.【첨부서류】란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10-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10-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파일이어야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 참고도면을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SWF(Small Web Format),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Animated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또는 AVI(Audio Video Interleave)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영상에는 디자인의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여 중화질(640×480) 수준에 초당 용량이 600~700K/sec를 넘지 않아야 하며, 1출원의 용량은 총 200M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아. 별표 1의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을 대신하여 폰트파일〔TTF(True Type Font)〕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디자인등록출원 이후 보정 등을 위해 다시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정 시 제출 가능한 파일 형식〕

디자인의 종류	출원 시 제출파일 형식			보정 시 제출파일 형식	허용 여부
평면, 입체, 화상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3D모델링파일 제출 (IGES, OBJ, STEP, STL),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IGES, OBJ, STEP, STL)	⇨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IGES, OBJ, STEP, STL)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TIFF, JPEG, IGES, OBJ, STEP, STL)	허용
	참고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3D모델링파일 제출 (IGES, OBJ, STEP, STL),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IGES, OBJ, STEP, STL),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3D모델링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 3D모델링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IGES,	⇨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IGES, OBJ, STEP, STL)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TIFF, JPEG, IGES, OBJ, STEP, STL)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3D모델링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 3D모델링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글자체 디자인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폰트파일 제출 (TTF),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폰트파일(TTF)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TIFF, JPEG, TTF)	허용
	참고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폰트파일 제출 (TTF),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폰트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 폰트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폰트파일(TTF)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TIFF, JPEG, TTF)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폰트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 폰트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13.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 11. 28.〉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

(앞쪽)

【출원 구분】 □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분할출원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디자인의 수】)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창작자】
【성명】
【특허고객번호】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출원일(국제등록일)】
【증명서류】 □ 첨부 □ 미첨부
【접근코드】)
(【그 밖의 사항】 □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 디자인비밀보장 청구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 디자인이전희망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기재방법 제16호 참조)
【출원료】 개 디자인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1. 도면(사진·견본) 1통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합니다)
2.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18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1. 출원 구분 및 관련 규정

출원 구분	내용	관련 규정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일부심사등록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일부심사등록 대상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8조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1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에 대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0조 및 제18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분할출원	1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0조 및 제18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4조 및 제45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무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4조 및 제45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

2. 처리절차

출원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서식 흠결 시: 보정 통지 또는 반려 통지
(출원인)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 기재방법

1. 【출원 구분】 란

가. 출원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해당되는 물품류(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를 제외한 물품류가 해당됩니다.

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의 물품류가 해당됩니다.

2. 【참조번호】 란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 예와 같이 【출원 구분】 란의 다음 줄에 【참조번호】 란을 만들어 제출매체(온라인, 이동식저장장치, 서면)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권리별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예〕 【출원 구분】

【참조번호】 01

3. 【출원인】 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 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 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 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 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4) 【특허고객번호】 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출원인】 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 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 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 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1)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출원과 동시에 대표자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 란을 만들고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적으며, 【첨부서류】 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2)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 란의 다음 줄에 【지분】 란을 만들고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고, 【첨부서류】 란에 "지분약정서"라고 적어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3)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특별히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을 한 경우 또는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 란의 다음 줄에 【그 밖의 사항】 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적고, 【첨부서류】 란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어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 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출원인】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4. 【대리인】 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 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 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 란의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 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 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 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 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 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5.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란

가.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 【원출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란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번호나 국제등록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원출원의 출원번호】 30-2010-1234567

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경우 【무권리자의 출원번호】 란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과 관련되는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6.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란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란에는 해당 여부를 "단독디자인" 또는 "관

련디자인"과 같이 적습니다.

7. 【기본디자인의 표시】 란

이 난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적으며,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호)】 란에는 기본디자인의 출원번호,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호 중 하나를 적고,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추가로 【디자인의 일련번호】 란에 해당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가.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을 한 개의 복수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의 일련번호】 만을 적습니다.

나.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을 동시에 각각 별개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참조번호】 01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다. 기본디자인등록출원 이후 관련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 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라. 기본디자인 설정등록(2014년 7월 1일 전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여 설정등록된 것만 해당합니다) 이후 관련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등록번호】 30-1234567-00-00

【디자인의 일련번호】 M08

마. 위의 기재방법 중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디자인의 일련번호】 란은 기본디자인이 1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으며,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으로 출원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만 그 기본디자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8.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란

【기본디자인의 표시】 란 다음 줄에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란을 만들어 "1디자인" 또는 "복수디자인"과 같이 그 구분을 명시합니다.

9. 【디자인의 수】 란

가. 1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개수를 적을 필요가 없으며, 복수디자인인

경우에만 디자인의 개수(최대 100개까지)를 적습니다.

나. 디자인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의 수】란의 다음 줄에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고 디자인의 일련번호 순서대로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창작자】 및 (【우선권 주장】)란을 디자인의 수만큼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디자인의 개수가 두 개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창작자】
【성명】
【특허고객번호】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
【증명서류】)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2】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창작자】
【성명】
【특허고객번호】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
【증명서류】)

10. 【물품류】란

가. 이 난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속하는 하나의 물품류를 선택하여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물품류】 제1류

나.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물품류에 14류를 기재하며,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해당 물품류를 기재합니다.

1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가. 이 난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고시에 등록받으려는 물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디자인을 인식하는 데 적합한 명칭으로서, 그 물품의 용도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일반적인 명칭을 적습니다.

나.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 중 〔예 1〕과 같이 한 개의 물품명을 적습니다. 다만, 출원서 및 도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 2〕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부분의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컵

〔예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컵의 손잡이

다.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다음의 예와 같이 화상의 구체적인 용도(~용 화상)를 기재하며,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화상디자인, 화상 등으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정보통신용 화상, 의료정보처리용 화상, 방범용 화상, 정보표시용 화상, 건강관리용 화상 등

라.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한 벌의 물품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12. 삭제 〈2025. 11. 28.〉

13. 삭제 〈2023. 12. 21.〉

14. 【창작자】 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 란에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적은 국문 성명을 적고, 【특허고객번호】 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출원인과 창작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출원인의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창작자】 란에 창작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및 【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창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소】 란의 다음 줄에 【국적】 란을 만들어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은 삭제하며, 【주소의 영문표기】 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적습니다.

3) 【창작자】 란의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15. 【우선권 주장】 란

【우선권 주장】 란은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한 【출원국명】,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적고, 우선권 주장 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란에 “첨부”라고 적으며, 그 서류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란에 “미첨부”라고 적습니다. 다만, 출원국명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란에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적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6항에 따라 접근코드를 적으려는 경우에는 【접근코드】 란에 해당 접근코드를 적고 접근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지 않으며,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98-123456
【출원일】 1999. 07. 01.
【증명서류】 첨부
【접근코드】 4321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JP

【출원번호】 62-1234
【출원일】 1999. 08. 01.
【증명서류】 미첨부
【접근코드】 8765

16.【그 밖의 사항】란

가. 다음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 합니다.

구분	내용	관련규정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출원과 동시에 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2조
디자인비밀보장 청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6조
디자인이전희망	디자인이전의 의사가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나. 디자인비밀보장을 청구하는 경우

디자인비밀보장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란의 다음 줄에 【디자인비밀보장 청구】 및 【청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내용을 적고, 청구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3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그 기재방식은 "등록일부터 ○○개월"과 같이 적습니다.

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는 경우

출원과 동시에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밖의 사항】란의 다음 줄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공개형태】 및 【공개일】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첨부서류】란에는 주장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공개형태】 간행물에의 발표
【공개일】 2010. 07. 01.

라. 디자인이전희망

디자인이전희망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밖의 사항】란의 다음 행에 【디자인이전희망】, 【디자인이전대가】란을 만들고 희망하는 디자인이전 형태 및 대가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해당 사항에 표시(예: ☒)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전을 희망한 디자인등록출원은 공개 또는 등록공고 후 디자인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에 디자인이전희망 디자인으로 등록됩니다.

〔예〕 【디자인이전희망】 □ 양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예〕 【디자인이전대가】 □ 유상 □ 무상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란의 다음 행에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과제번호】, 【부처명】, 【과제관리(전문)기관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및 【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은 디자인에 대해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과제고유번호】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적습니다. 【과제번호】란은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과제별로 부여하는 세부과제번호를 적습니다. 【부처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과제관리(전문)기관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성과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으면 연구과제계획서에 적은 상위 연구사업명)을 적습니다.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부과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적습니다. 【과제수행기관명】란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기간】란은 해당 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적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이 창작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로서 출원서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또한, 이 창작을 지원한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전인 경우에는 【과제고유번호】란에 "미부여"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출원서 등의 보정을 통해 반드시 과제고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예〕 【그 밖의 사항】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과제번호】 ○○○○○○○○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과제관리(전문)기관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사업명】 미래선행디자인기술개발
【연구과제명】 스마트홈 환경 구현을 위한 지능형 감성제품 서비스 선행 디자인 개발
【과제수행기관명】 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기간】 2019. 4. 1. ~ 2020. 12. 31.

17. 【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명세 및 금액을 적습니다. 【출원료】란에는 디자인의 개수 및 출원료 금액을 적고, 아울러 출원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료】란을, 디자인비밀보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디자인비밀보장 청구료】란을,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료】란을 각각 만들어 각 해당 금액을 적고, 【합계】란을 만들어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개 디자인	원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료】		원
【디자인비밀보장 청구료】	개 디자인	원
【우선권 주장료】	개 디자인	원
【합계】		원

나.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합계】란의

다음 줄에【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다.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 날까지 납부합니다.

18.【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9.【첨부서류】란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첨부서류】 위임장 1통

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출원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출원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라.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10-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10-당-123456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파일이어야 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디자인 도면) 또는 별지 제5호서식(글자체 디자인 도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아.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도면을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SWF(Small Web Format),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WMV (Window Media Video), Animated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또는 AVI(Audio Video Interleave)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영상에는 디자인의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여 중화질(640×480)수준에 초당 용량이 600~700K/sec를 넘지 않아야 하며, 1출원의 용량은 총 200M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차. 도면을 전자적 이미지파일 또는 3차원 모델링파일 형식으로 제출하거나 참고도면을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 하나의 디자인 제출 시 파일 형식

디자인의 종류	출원 시 제출파일 형식		허용 여부
평면, 입체, 화상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 제출 (IGES, OBJ, STEP, STL)	허용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IGES, OBJ, STEP, STL)	허용
	참고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 제출 (IGES, OBJ, STEP, STL)	허용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IGES, OBJ, STEP, STL)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3D모델링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 3D모델링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글자체디자인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폰트파일 제출 (TTF)	허용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허용
	참고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폰트파일 제출 (TTF)	허용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폰트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 폰트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 복수디자인의 제출 시 파일 형식

※ 복수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파일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종류	M001의 제출파일 형식			M002의 제출파일 형식	허용 여부
평면, 입체, 화상 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3D모델링파일 제출 (IGES, OBJ, STEP, STL),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IGES, OBJ, STEP, STL)	⇨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IGES, OBJ, STEP, STL)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TIFF, JPEG, IGES, OBJ, STEP, STL)	허용
	참고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3D모델링파일 제출 (IGES, OBJ,	⇨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IGES, OBJ, STEP, STL)	허용

		STEP, STL),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IGES, OBJ, STEP, STL),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3D모델링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 3D모델링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TIFF, JPEG, IGES, OBJ, STEP, STL)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3D모델링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 3D모델링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글자체디자인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폰트파일 제출 (TTF),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폰트파일(TTF)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 (TIFF, JPEG, TTF)	허용
	참고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폰트파일 제출 (TTF), 동영상파일 제출	⇨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폰트파일(TTF)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폰트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 폰트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 (TIFF, JPEG, TTF)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폰트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 폰트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0.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5. 11. 28.〉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도면

(앞쪽)

(【디자인의 일련번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도면 1】

【도면 2】

【도면 3】

【도면 4】

【도면 5】

【도면 6】

【도면 7】

210㎜×297㎜(백상지 80g/㎡)

(뒤쪽)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관련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 관련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2항).

※ 기재방법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보존용지(2종) 70g/㎡〕의 A4 용지를 세로로 하여 위쪽을 철합니다.

나. 용지는 위쪽 40㎜, 왼쪽 25㎜, 아래쪽 및 오른쪽 20㎜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적으며, 용지의 아래쪽 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적습니다.

다. 도면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여 진한 먹물 또는 제도용 검은색 잉크로 선명하게 도시(圖示)하며, 연필, 잉크(제도용 검은색 제외), 크레파스 또는 그림물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된 이미지파일(300dpi 이상의 해상도) 형식인 경우에도 위에 준하여 도시합니다. 다만,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 시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무채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 도면 내에는 중심선, 기선(基線), 수평선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細線) 또는 내용의 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 부호 또는 문자를 적어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음영을 넣을 경우에는 모양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선, 점 또는 농담(濃淡)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면을 표시할 경우 절단된 부분에 해칭(연속된 빗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식별 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와 식별 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적으며, 식별 항목의 다음 줄에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 식별기호(【 】)는 식별 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도면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가로(횡)로 배치할 수 있으나, 도면 내용의 윗부분이 용지의 오른쪽이 되도록 배치하며, 【도면 ○】 식별항목은 가로(횡)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4) 도면의 기재순서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와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면을 우선순위로 하여 【도면 1】, 【도면 2】, 【도면 3】… 순으로 적습니다.
그 이외에 디자인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상태도 등을 【참고도면 1】, 【참고도면 2】, 【참고도면 3】… 순으로 식별 항목을 만들어 적되, 그 도면의 명칭은 다음 〔예〕와 같이 【참고도면 ○】란의 다음 줄에 적습니다.
〔예〕 【참고도면 1】
사용상태도

해당 도면 내용

5) 디자인의 내용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변화 전·후의 상태를 각각의 도면에 표현하는 경우 등)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도면의 식별 항목명에 영문자 대문자(A, B…순)를 적어서 구분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통상적인 디자인의 설명을 먼저 한 후에, "변화 전 상태의 도면은 도면A 1부터 도면A 7까지이며,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은 도면B 1부터 도면B 7까지"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구분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경우 화상디자인 및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출원은 여러 벌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라도 각 도면의 식별 항목명을 영문자 대문자로 구분하지 않고 4)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도면A 1】
【도면A 2】
【도면A 3】
【도면A 4】
【도면A 5】
【도면A 6】

【도면A 7】
【참고도면A 1】
【참고도면A 2】
【도면B 1】
【도면B 2】
【도면B 3】
【도면B 4】
【도면B 5】
【도면B 6】
【도면B 7】
【참고도면B 1】
【참고도면B 2】

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물품류】란의 위에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예〕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3
【물품류】 제1류

바. 도면의 쪽수가 여러 쪽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디자인마다 각 페이지 아랫부분의 여백 중앙에 도면의 총 쪽수와 해당 쪽과의 일련관계를 표시합니다.
〔예〕 3-1, 3-2, 3-3

2. 도면의 작성방법

가. 도면의 기초정보

1) 【물품류】란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것과 같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속하는 물품류를 적습니다.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것과 같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3) 【디자인의 설명】란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에 따라 적습니다.
4) 삭제 〈2025. 11. 28.〉

나. 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1) 디자인의 도면은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개 이상의 도면을 도시(圖示)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으며,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

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화면을 정지화면으로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도면 1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2는 디자인의 앞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3은 디자인의 뒷면을, 도면 4는 디자인의 왼쪽면을, 도면 5는 디자인의 오른쪽면을, 도면 6은 디자인의 윗면을, 도면 7은 디자인의 아랫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예 2〕 도면 1은 디자인의 표면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2는 디자인의 이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예 3〕 도면 8은 도면 3 중 A부터 A′까지의 절단면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9는 도면 4 중 A부분의 확대를 표현하는 도면임.

2) 1)항의 도면만으로 그 디자인의 용도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상태도 등 참고도면을 【참고도면】란에 도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참고도면 1은 이 물품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것임

3) 물품의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하여도 디자인을 명백히 알 수 있거나, 도면 작성상 생략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생략한 부분을 두 선의 평행한 1점쇄선(鎖線)으로 절단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 취지 및 생략한 부분의 도면상 길이를 적습니다.

4) 봉재(封材), 선재(線材), 판재(版材), 관재(棺材) 등과 같이 형상이 연속하는 것 또는 지물(紙物)과 같이 모양이 연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연속하는 것을 표시하는 도면은 그 연속 또는 반복적으로 연속하는 상태를 알 수 있게 도시하며,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형상이나 모양이 어느 한 방향 또는 상하좌우로 연속 또는 반복하는 것인지 등을 적습니다.

5) 단면도 또는 절단부 단면도의 절단면에는 평행사선을 긋고(이질의 결합에 따른 디자인적 표현을 나타내려면 각기 다른 방향의 평행사선을 긋습니다), 그 절단된 부분을 그 밖의 도면에서 쇄선으로 표시하되, 쇄선의 양끝에 부호를 붙이고 화살표로 절단면을 보는 방향을 표시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6) 부분 확대도를 도시할 경우에는 그 확대한 부분을 해당 부분 확대도

의 원래의 도면에 쇄선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다. 특수한 디자인의 도면

1) 조립완구와 같이 그 구성물의 도면만으로는 사용의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그 만들어지는 상태 또는 완성된 상태를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고, 조립한 후 분해하는 것과 같이 조립한 상태의 도면만으로는 분해된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각 구성물의 도면을 추가합니다.

2) 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움직임 또는 열림에 따라 디자인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일련의 도면을 도시하거나 변화 전과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을 각각 도시하고, 그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도면A 1부터 도면A 7까지는 열린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면B 1부터 도면B 7은 닫힌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임

3)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디자인의 도면은 다음의 요령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① 바깥쪽 둘레에 색채가 없어 모양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은 보이는 대로 표시합니다.

② 바깥쪽 둘레의 바깥면·안쪽면 또는 그 두께면의 어느 한 부분에 모양 또는 색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뒷면 또는 밑바닥의 모양 또는 색채를 나타내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 또는 색채만을 나타냅니다.

③ 바깥쪽 둘레의 바깥면·안쪽면 또는 그 두께면이나 바깥쪽에 둘러싸인 내부의 어느 곳에 둘 이상의 형상·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형상·모양 또는 색채를 각 면에 표시합니다.

라. 부분디자인의 도면

1) 부분디자인을 도면에 도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현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은 파선(破線)으로 표현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2) 부분디자인을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

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3) 부분디자인을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을 출원합니다. 다만, 전체디자인이 검정색 등 무채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채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분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서 해당 부분을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습니다.

5) 그 밖의 작성방법은 이 서식의 기재방법 제2호 도면의 작성방법 중 나목(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및 다목(특수한 디자인의 도면)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마. 화상디자인의 도면

1) 화상디자인이 평면적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평면적인 화상을 나타내는 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입체적인 경우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입체적인 화상을 나타내는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화상디자인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체에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하고,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그 밖의 기재방법은 라목의 부분디자인 도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변화의 순서와 형태가 분명해야 하며, 형태의 관련성 및 변화의 일정성이 있어 구체적인 하나의 디자인의 내용으로 도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도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을 도면에 도시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물품마다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을 각각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합된 상태의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합니다. 또한 도면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도면A 1부터 도면A 7은 찻잔이고, 도면B 1부터 도면B 7까지는 받침접시이며, 도면C 1부터 도면C 7까지는 한 벌의 다기 세트임.

3. 참고사항

가. 도면이 2면 이상으로 된 경우 처음 면 외의 면에는 【물품류】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및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도면을 갈음하여 서면으로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진의 규격은 최대 가로 10㎝ × 세로 15㎝ 이하, 최소 가로 7㎝ × 세로 10㎝ 이상의 크기로 하여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하며, 배경·음영 등이 디자인의 대상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드러나지 않아야 하고, 모든 도면을 사진으로 통일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진이 보조용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습니다.

다. 도면을 갈음하여 서면으로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쉽게 파손되거나 변경·변질되지 않을 것
2) 취급 및 보존이 쉬울 것
3) 용지에 붙이는 경우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견본 한 개와 견본의 사진(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가 명확히 표현된 사진 각 1통)을 각각 이 서식에 첨부할 것

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이 서식의 기재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두 개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도면에 도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전자문서 이용 시 유의사항

가.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입력합니다.

1) 도면 내용의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2) 디자인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3)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의 형식으로 완전히 삽입·저장되어야 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Object Linking and Embedding)〕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Dynamic Data Exchange)〕의 형식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참고도면을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SWF(Small Web Format),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Animated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또는 AVI(Audio Video Interleave)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영상에는 디자인의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여 중화질(640× 480) 수준에 초당 용량이 600~700K/sec를 넘지 않아야 하며, 1출원의 용량은 총 200M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5. 11. 28.〉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글자체 디자인 도면

(앞쪽)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
【지정글자 도면 등(폰트파일 제출 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관련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2항).

※ 기재방법

1. 글자체의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하도록 도면에 적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글자체 디자인 도면)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글자체가 적힌 것으로 봅니다.

2. 삭제 〈2025. 11. 28.〉

3. 글자체디자인의 경우에는 한글, 영문자, 그 밖의 외국문자, 숫자, 특수기호 또는 한자 글자체별로 구분하여 각각 출원하며, 각 출원건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글자체 디자인 도면)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을 도시합니다.

   가. 한글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1호(한글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나. 영문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2호(영문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다. 영문자를 제외한 그 밖의 외국문자 글자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도면을 작성합니다.

      (1) 【지정글자 도면】: 해당 외국문자의 알파벳 전체를 적습니다.

      (2) 【보기문장 도면】: 영문자의 대표문장을 해당 외국문자로 번역하여 적습니다.

      (3) 【대표글자 도면】: 영문자의 대표글자에 준하여 해당 외국문자의 낱글자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글자를 적습니다.

   라. 숫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3호(숫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마. 특수기호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4호(특수기호 글자체 도면)에서 규

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지정글자 도면】란에는 【지정글자 도면 1】, 【지정글자 도면 2】, 【지정글자 도면 3】…순으로 식별항목을 기재할 수 있고, 이때 【지정글자 도면 1】의 기재는 별표 1 제4호(특수기호 글자체 도면)의 【지정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바. 한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5호(한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4. 각 도면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 (보존용지(2종) 70g/㎡)의 A4 용지를 세로로 하여 위쪽 40㎜, 왼쪽 25㎜, 아래쪽 및 오른쪽 20㎜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적습니다.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은 가로 165㎜, 세로 237㎜ 이내이며, 각 용지는 한 면에 하나의 도면만을 적습니다.

나. 글자체디자인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도면의 식별항목을 【지정글자 도면 1】, 【지정글자 도면 2】 …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순으로 작성하여 용지의 위쪽 여백 중앙에 적습니다. 다만, 글자체디자인 도면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도면의 식별 항목을 적지 않습니다.

다. 【지정글자 도면】란은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의 네 모서리에 가로 5㎜ × 세로 5㎜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두고,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 12줄 × 세로 9줄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 및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라. 【보기문장 도면】란은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의 네 모서리에 가로 5㎜ × 세로 5㎜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두고 다음과 같이 도면을 작성합니다.

(1) 한글·영문자·한자의 경우에는 큰 보기문장과 작은 보기문장을 1장으로 구성하며, 큰 보기문장과 작은 보기문장 사이는 최소한 10㎜ 이상의 간격을 둡니다. 큰 보기문장은 작은 보기문장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는 기본값을 0%로 하며,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작은 보기문장의 글자의 크기는 20pt를 기준으로 하되, 글줄이 3줄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으며, 글자 사이는 기본값을 0%로 하고,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2) 숫자·특수기호의 경우에는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 및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마. 【대표글자 도면】 란에는 한글 및 한자의 경우에는 가로 4줄 × 세로 3줄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영문·숫자·특수기호의 경우에는 가로 3줄 × 세로 2줄의 영역표시 보조선을 둡니다. 각 대표글자는 영역표시 보조선 내의 각 사각형의 한가운데 위치하도록 하고, 각 사각형으로부터 2㎜의 여백을 둔 상태에서 최대한 크게 표기하되, 모든 글자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바.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은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이미지파일(파일의 확장자가 ai인 파일)을 수정하여 작성한 후 200dpi 이상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 또는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지정글자 도면 등(폰트파일 제출 시)】 아래에 글자체 글꼴 파일인 폰트파일〔TTF(True Type Font)〕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 【지정글자 도면 등(폰트파일 제출 시)】은 글자체 글꼴 파일인 폰트파일〔TTF(True Type Font)〕로 제출합니다. 이 경우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 아래에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나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2D이미지파일(JEPG, TIFF)과 폰트파일(TTF)을 혼합하여 제출하는 경우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은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이미지파일(파일의 확장자가 ai인 파일)을 수정하여 작성한 후 200dpi 이상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 또는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지정글자 도면 등(폰트파일 제출 시)】은 폰트파일〔TTF(True Type Font)〕로 제출합니다.

5. 그 밖의 기재방법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방법 제18호의 차목, 별지 제4호서식(디자인 도면)의 기재방법 제1호의 다목부터 마목까지, 제2호의 가목, 제3호의 가목 및 제4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5. 10. 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앞쪽)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 (기재방법 제4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6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출원인이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디자인보호법」 제52조).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 서식 흠결 시: 보정 통지 또는 반려 통지
(출원인)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 기재방법

1. 【출원인】 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 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 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 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 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4) 【특허고객번호】 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출원인】 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 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 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 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 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 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 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출원인】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2. 【대리인】 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 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 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사건의 표시】란

가.【출원번호】란에는 해당 건의 출원번호(예: 30-2014-1234567)를 적습니다.

나.【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된 디자인 중 일부 일련번호의 디자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2, M005, M009

다.【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출원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된 디자인 중 전부 또는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중 가장 앞선 일련번호 디자인의 물품명을 적습니다.

〔예〕【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M002, M005, M009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4.【수수료】란
【수수료】란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공개 건수와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금액을 적습니다.

5.【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6.【첨부서류】란
가.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출원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

당하는 서류는 출원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라.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10-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10-당-123456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

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파일이어야 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5. 10. 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청구서

(앞쪽)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비밀보장청구】
【청구기간】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개 디자인 원 (기재방법 제5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7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출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디자인보호법」 제43조).

2. 서식의 제출 및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 서식 흠결 시: 보정 통지 또는 반려 통지
(출원인)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 기재방법

1. 【출원인】 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 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 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 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 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4) 【특허고객번호】 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출원인】 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 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 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 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 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 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 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출원인】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2. 【대리인】 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 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 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사건의 표시】란

가. 【출원번호】란에는 해당 건의 출원번호(예: 30-2014-1234567)를 적습니다.

나.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2, M005, M009

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출원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된 디자인 중 전부 또는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중 가장 앞선 일련번호 디자인의 물품명을 적습니다.

〔예〕【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2, M005, M009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4. 【디자인비밀보장청구】 란
디자인비밀보장 청구기간을 【청구기간】 란에 적고, 청구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3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그 연수와 월을 "등록일부터 ○○개월"의 형태로 적습니다.

5. 【수수료】 란
【수수료】 란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비밀보장을 청구하는 디자인의 개수 및 디자인비밀보장의 청구료 금액을 적습니다.

6.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7. 【첨부서류】 란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출원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출원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

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 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라.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10-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10-당-123456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파일이어야 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5. 10. 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앞쪽)

【신청 구분】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디자인등록번호】
【등록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청이유】 (별지에 기재)
【증거방법】 (별지사용 가능)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개 디자인 원 (기재방법 제7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 (기재방법 제9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신청 구분	내용	관련 규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5조 및 제68조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 서식 흠결 시: 보정 통지 또는 반려 통지
(제출인)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 기재방법

1. 【신청 구분】 란
   신청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이의신청인】 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 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이의신청인】란에 이의신청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이의신청인 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 구분】란에는 "국가기관", "국내 법인", "국내 자연인", "외국 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습니다.

2) 【이의신청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이의신청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이의신청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이의신청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이의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의 수대로 【이의신청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이의신청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이의신청인】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이의신청인】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이의신청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

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4. 【사건의 표시】 란
【디자인등록번호】, 【등록일】 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적습니다.

5. 【신청이유】 란
이 난에는 "별지와 같음"이라 적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인이 디자인 창작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을 적습니다.

6. 【증거방법】 란
이 난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적고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또는 증거는 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

7. 【수수료】 란
이 난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이의신청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9. 【첨부서류】 란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라.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10-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10-당-123456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파일이어야 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모든 디자인을 3차원 모델링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5. 10. 1.〉

디자인등록증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등 록 Registration Number	제 호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Application Number	제 호
출 원 일 Filing Date	년 월 일
등 록 일 Registration Date	년 월 일
등록의 구분 Type of Registration	심사등록 Examined Registration

물품류 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Product

디자인권자 Owner

창작자 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년 월 일

지식재산처장

MINISTER,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직 인

서 명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5. 10. 1.〉

디자인등록증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등 록 Registration Number	제 호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Application Number	제 호
출 원 일 Filing Date	년 월 일
등 록 일 Registration Date	년 월 일
등록의 구분 Type of Registration	일부심사등록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물품류 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Product

디자인권자 Owner

창작자 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년 월 일

지식재산처장

MINISTER,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직 인

서 명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5. 10. 1.〉

관련디자인등록증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등 록 Registration Number	제 호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Application Number	제 호
출 원 일 Filing Date	년 월 일
등 록 일 Registration Date	년 월 일
등록의 구분 Type of Registration	심사등록 Examined Registration
기본디자인 Principal Design	등록 제 호 Registration Number

물품류 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Product

디자인권자 Owner

창작자 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년 월 일

지식재산처장

MINISTER,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직 인

서 명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5. 10. 1.〉

관련디자인등록증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등 록 Registration Number	제 호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Application Number	제 호
출 원 일 Filing Date	년 월 일
등 록 일 Registration Date	년 월 일
등록의 구분 Type of Registration	일부심사등록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기본디자인 Principal Design	등록 제 호 Registration Number

물품류 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Product

디자인권자 Owner

창작자 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년 월 일

지식재산처장

MINISTER,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직 인

서 명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13호서식〕

등 록 사 항

〔별지 제13호의2서식〕〈개정 2025. 10. 1.〉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Class

Product

Owner

Creator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INISTER,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직 인

서 명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13호의3서식〕〈개정 2025. 10. 1.〉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Class

Product

Owner

Creator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INISTER,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직 인

서 명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13호의4서식〕〈개정 2025. 10. 1.〉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Principal Design

Class

Product

Owner

Creator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INISTER,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직 인

서 명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13호의5서식〕〈개정 2025. 10. 1.〉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Principal Design

Class

Product

Owner

Creator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INISTER,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직 인

서 명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13호의6서식〕〈신설 2014.12.31.〉

REGISTRATION DETAILS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25. 10. 1.〉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등 록 제 호
Registration Number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 원 일 년 월 일
Filing Date
등 록 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등록의 구분 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물품류 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Product

디자인권자 Owner

창작자 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년 월 일

지식재산처장
MINISTER,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직 인

서 명

등 록 사 항

210㎜×148㎜(백상지 80g/㎡)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25. 10. 1.〉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등 록 제 호
Registration Number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 원 일 년 월 일
Filing Date
등 록 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등록의 구분 일부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물품류 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Product

디자인권자 Owner

창작자 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년 월 일

지식재산처장
MINISTER,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직 인

서 명

등 록 사 항

210㎜×148㎜(백상지 80g/㎡)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5. 10. 1.〉

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

PORTABLE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등 록 **제** **호**
Registration Number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 원 일 년 월 일
Filing Date
등 록 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등록의 구분 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기본디자인 등록 제 호
Principal Design Registration Number
물품류 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Product

디자인권자 Owner

창작자 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년 월 일

지식재산처장
MINISTER,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직 인

서 명

등 록 사 항

210㎜×148㎜(백상지 80g/㎡)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5. 10. 1.〉

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

PORTABLE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등 록 **제** **호**
Registration Number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 원 일 년 월 일
Filing Date
등 록 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등록의 구분 일부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기본디자인 등록 제 호
Principal Design Registration Number
물품류 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Product

디자인권자 Owner

창작자 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년 월 일

지식재산처장
MINISTER,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직 인

서 명

등 록 사 항

210㎜×148㎜(백상지 80g/㎡)

〔별지 제17호의2서식〕〈개정 2025. 10. 1.〉

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Class

Product

Owner

Creator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INISTER,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직 인

서 명

REGISTRATION DETAILS

210㎜×148㎜(백상지 80g/㎡)

〔별지 제17호의3서식〕〈개정 2025. 10. 1.〉

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Class

Product

Owner

Creator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INISTER,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직 인

서 명

REGISTRATION DETAILS

210㎜×148㎜(백상지 80g/㎡)

〔별지 제17호의4서식〕〈개정 2025. 10. 1.〉

PORTABLE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Principal Design

Class

Product

Owner

Creator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INISTER,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직 인

서 명

REGISTRATION DETAILS

210㎜×148㎜(백상지 80g/㎡)

〔별지 제17호의5서식〕〈개정 2025. 10. 1.〉

PORTABLE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Principal Design

Class

Product

Owner

Creator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INISTER,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직 인

서 명

REGISTRATION DETAILS

210㎜×148㎜(백상지 80g/㎡)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5. 10. 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용도

(앞쪽)

【제출 구분】 □ 국제출원서 등 □ 대체서류 □ 국제출원보정서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지식재산처참조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대체사항(보정사항)】

【대체할(보정할) 서류)】

【대체할 페이지(보정대상 항목)】

【보정방법】)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 (기재방법 제7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9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1. 제출 구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제출 구분	내용	관련 규정
국제출원서 등	국제출원서 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0조
대체서류	국제출원서류에 대한 대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1조
국제출원 보정서	국제출원서류에 대한 보정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2조

2. 처리절차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 기재방법

1. 【제출 구분】 란

제출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 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 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영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 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 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 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만큼 【제출인 ○○○의 인감(서명)】 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 란에는 "국제출원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 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제출인】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 란

가.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영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 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 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 【지정된 변리사】 란에는 대리인 신고 시 적은 영문 성명만을 적으며,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지정된 변리사】 HONG Gil Dong, KANG Gam Chan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4. 【사건의 표시】 란

서식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지식재산처참조번호】를 적습니다.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란

가. 지식재산처장 등의 통지에 의한 보정일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나. 통지에 의하지 않고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란에 보정의 대상이 되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6. 【대체사항(보정사항)】 란

가. 대체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 【대체사항】란의 【대체할 서류】란에는 대체하려는 서류명을 적고, 【대체할 페이지】란에는 대체하려는 서류의 페이지 번호를 적으며, 대체하려는 페이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예와 같이 적습니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체할 페이지가 포함된 국제출원서 일체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체할 페이지】란에는 '전체'로 적습니다.

〔예〕 【대체사항】
【대체할 서류】 국제출원서
【대체할 페이지】 1, 3, 5 (또는 전체)

나. 국제출원보정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보정사항】란에 【보정할 서류】,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을 적습니다.

1) 【보정할 서류】란에는 보정하려는 서류명을 적습니다.

2) 【보정대상 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 항목명을 적습니다. 다만, 소항목 단위의 보정이 불가능하므로, 보정하려는 식별 항목이 소항목인 경우에는 그 식별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대항목을 적습니다.

3) 【보정방법】란에는 "정정", "추가", "제출", "납부" 등으로 적으며, 둘 이상의 보정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모두 적을 수 있습니다.

4) 【보정내용】란에는 보정할 내용을 적되, "정정", "추가"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밑줄을 쳐서 보정된 내용임을 표시합니다.

〈보정할 사항의 기재 예시〉

출원 시 미제출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미납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정사항】
【보정할 서류】
【보정대상 항목】첨부서류
【보정방법】제출
【보정내용】
【첨부서류】위임장 1통

【보정사항】
【보정할 서류】
【보정대상 항목】수수료
【보정방법】납부

7. 【수수료】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1조를 참조하여 서식 제출 후에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9.【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출원서 1통(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영어로 작성된 대체서류 1통(대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3)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국제출원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첨부서류】 위임장 1통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 파일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파일이어야 합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25. 11. 28.〉

국제출원서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IMPORTANT

We strongly recommend that you file your international application online using eHague.

Warning: When using form DM/1, an extra publication fee of 150 Swiss francs applies per additional page of reproductions.

If using this form:

1. All fields are **mandatory** unless indicated otherwise.
2. Complete this form electronically; WIPO does not accept handwritten forms.
3. Avoid printing and scanning this form. Upload the completed and signed form directly to WIPO through **Contact Hague**.
4. One international application may contain up to 100 designs in the same class of the **Locarno Classification.**
5. **Reproductions** must be prepared according to standard requirements.
6. **Security clearance** is required by certain domestic laws:
   - designs created in the **Russian Federation** or **Uzbekistan**, by **domestic legal entities or nationals**, are subject to a security clearance procedure by the national Office to ensure that they do not contain state secrets; and
   - for designs crea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pplicant must obtain a license from the national Office before filing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7. Use the **Hague System Fee Calculator** to calculate the cost of your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consult **Hague System Fees and Payments.**
8. For more information on Contracting Parties and their Offices, refer to **Hague System Member Profiles**. For more information on the completion of this form,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ANNEXES

Annex I - submit a Declaration of Inventorship, or, if not possible, a Substitute Statement in Lieu of a Declaration of Inventorship (mandatory if designat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nex II - submit documentation concerning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designation of **China,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refer to item 15).

Annex III - identify information known to be material to the eligibility for protection of the design(s) concerned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nex IV - submit a micro entity certification in order to benefit from a reduction of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fer to item 18).

Annex V - submit documentation in support of a priority claim (designation of **China,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refer to item 13).

DM/1 (E)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For use by the applicant	For use by the Office of indirect filing
Reference(optional):	Office transmitt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f applicable)*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if any):	Name of the Office: .....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Annex(es):	Office reference: .....
☐ I ☐ II ☐ III ☐ IV ☐ V	Date of receip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y the Office: .....
	Signature and/or seal of the Office: .....

1 Applicant

☐ If there are several applicants, check this box and provide the information required under items 1, 2 and 3 below, for each additional applicant on a continuation sheet.

(a) The applicant is a:

☐ **Natural person** - Family(last) name: ..... Given(first) name: .....

☐ **Legal entity** - Official designation(legal nature): .....

(b) **Address**: .....

Postal code: ..... City: ..... Region/state(optional): ..... Country: .....

(c) **Email address**[1]: .....

(d) **Telephone(optional)**[2]: .....

1.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to this email address, unless an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is indicated in item 4 (only for multiple applicants) or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Please ensure that the email address is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2. Include the country and area code, e.g. +41 22 338 7575

2 Entitlement to File

The applicant must be a national of, or have a domicile, habitual residence or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commercial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Party**. You must indicate the corresponding **Contracting Party(ies)** in each field. If a field is not applicable, write “None”. For Contracting Parties that are also members of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GO) (European Union or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ndicate both entities (example: “France, European Union”) in all relevant fields. As regards member states of IGOs that are themselves not Contracting Parties, only indicate the name of the IGO.

(a) **Nationality**: .....

(b) **Domicile**: .....

(c)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

(d) **Habitual residence**: .....

3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Indicate the Contracting Party or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provided in item 2 above, to be considered as the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If no Contracting Party is indicated in the box below, and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filed through the Office of a Contracting Party indicated in item 2, that Contracting Party is deemed to be the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

4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for Multiple Applicants *(if applicable)*

Complete this item if there are **multiple applicants,** and **no representative** is appointed.

Note: If there is only one applicant or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the information provided under this item will be disregarded.

Email address[3]: .....

3.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to this email address only. Please ensure that it is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5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optional)*

The person identified below is hereby appointed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applicant.

Only **one representative** may be appointed. Note: a legal firm is regarded as one representative. If both a natural person and a legal entity are indicated, the representative will be recorded with the name of the legal entity preceding the name of the natural person.

(a) The representative is a (check the appropriate box):

☐ **Natural person** - Family(last) name: ..... Given(first) name: .....

☐ **Legal entity** - Official designation(legal nature): .....

(b) **Address**: .....

Postal code: ..... City: ..... Region/state(optional): ..... Country: .....

(c) **Email address**[4]: .....

(d) **Telephone(optional)**[5]: .....

4. If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to this email address. Please ensure that it is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5. Include the country and area code, e.g. +41 22 338 7575

6 Number of Designs, Reproductions and/or Specimens

Unity of design is a requirement in **Brazil, China, Estonia, Kyrgyzstan, Mexico, Romania, the Russian Federation, Saudi Arabia, the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zbekistan** and **Viet Nam.** If this application includes more than one design and designates any of these Contracting Parties, WIPO strongly recommends that you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International Application – Item 6 and the Guidance on multiple designs. If designating **China**, also refer to item 16

(a) **Total number of designs *(maximum of 100)***: .....

(b) **Total number of reproductions**: .....

(c) **Total number of A4 pages comprising reproductions**: .....

(d) **Total number of specimens *(if any)***: .....

7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Select all Contracting Parties where you seek protection.

Important: **Additional Contracting Parties cannot be designated in the same application after filing.**

- ☐ **AL** Albania
- ☐ **AM** Armenia
- ☐ **AZ** Azerbaijan
- ☐ **BA** Bosnia and Herzegovina
- ☐ **BG** Bulgaria
- ☐ **BN** Brunei Darussalam
- ☐ **BR** Brazil
- ☐ **BW** Botswana
- ☐ **BX** Benelux
- ☐ **BY** Belarus
- ☐ **BZ** Belize
- ☐ **CA** Canada
- ☐ **CH** Switzerland
- ☐ **CN** China
- ☐ **DE** Germany
- ☐ **DK** Denmark
- ☐ **EE** Estonia
- ☐ **EG** Egypt
- ☐ **EM** European Union
- ☐ **ES** Spain
- ☐ **FI** Finland
- ☐ **FR** France
- ☐ **GB** United Kingdom
- ☐ **GE** Georgia
- ☐ **GH** Ghana
- ☐ **GR** Greece
- ☐ **HR** Croatia
- ☐ **HU** Hungary
- ☐ **IL** Israel
- ☐ **IS** Iceland
- ☐ **IT** Italy
- ☐ **JM** Jamaica
- ☐ **JP** Japan
- ☐ **KG** Kyrgyzstan
- ☐ **KH** Cambodia
- ☐ **KN** Saint-Kitts and Nevis
- ☐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 **KR** Republic of Korea
- ☐ **LI** Liechtenstein
- ☐ **LT** Lithuania
- ☐ **LV** Latvia
- ☐ **MA** Morocco
- ☐ **MC** Monaco
- ☐ **MD** Republic of Moldova
- ☐ **ME** Montenegro
- ☐ **MK** North Macedonia
- ☐ **MN** Mongolia
- ☐ **MU** Mauritius
- ☐ **MX** Mexico
- ☐ **NA** Namibia
- ☐ **NO** Norway
- ☐ **OA**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 **OM** Oman
- ☐ **PL** Poland
- ☐ **RO** Romania
- ☐ **RS** Serbia
- ☐ **RU** Russian Federation
- ☐ **RW** Rwanda
- ☐ **SA** Saudi Arabia
- ☐ **SG** Singapore
- ☐ **SI** Slovenia
- ☐ **SM** San Marino
- ☐ **SR** Suriname
- ☐ **ST** Sao Tome and Principe
- ☐ **SY** Syrian Arab Republic
- ☐ **TJ** Tajikistan
- ☐ **TM** Turkmenistan
- ☐ **TN** Tunisia
- ☐ **TR** Türkiye
- ☐ **UA** Ukraine
- ☐ **US** United States of America
- ☐ **UZ** Uzbekistan
- ☐ **VN** Viet Nam
- ☐ **WS** Samoa

8 Product Indication

Indicate for each design the product which constitutes the design or in relation to which the design is to be used.

Special note: Products belonging to class 32 of the Locarno Classification are not eligible for protection under the national laws of **Canada, China (only 32-01 is excluded), Israel, Mexico** and **the Republic of Korea** (protection would be refused by their respective Offices).

Locarno Class to which the design(s) belong(s) (optional): .....

No. of the design *(in numerical order)*	**Total number of reproductions**	**Product(s)**	**Subclass** *(optional)*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9 Description *(if applicable)*

General note: Only describe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designs that appear in the reproductions. Matter shown in a reproduction but for which protection is not sought may also be indicated here (and/or in the reproduction by means of dotted or broken lines or coloring). The description can disclose the operation or possible use of the design so long as it is not technical. Furthermore, omission of a specific view may be indicated. If the description exceeds 100 words, an additional fee of two Swiss francs per word exceeding 100 applies.

Special note for some Contracting Parties: If designating the **Syrian Arab Republic**, you must inclu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reproduction or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design. If designating **China, Romania** or **Viet Nam**, you must inclu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design. If designating the **Russian Federation**, the Office recommends that you inclu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design.

.....

.....

.....

.....

.....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10 Legends *(optional)*

Recommended, especially when designating **China, Japan** and/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Guidance on Reproductions.

Associate the number in the margin of the reproduction with the corresponding code:

1 Perspective; **2** Front; **3** Back; **4** Top; **5** Bottom; **6** Left; **7** Right;

8 Reference; **9** Unfolded; **10** Exploded; **11** Cross-sectional; **12** Enlarged; **00** Other (limited to 50 characters)

No. (e.g. 1.1)	Code (e.g. 2)	Legend (indicate only when code 00 is selected)	No. (e.g.1.1)	Code (e.g. 2)	Legend (indicate only when code 00 is selected)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11 Identity of the Creator *(if applicable)*

If **Brazil, Finland, Ghana, Hungary, Iceland, Mauritius, Mexico, Romania** and/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designated in item 7, you must indicate the identity of the creator. In respect of the designation of Brazil, Finland, Ghana, Hungary, Iceland, Mauritius and/or Mexico, the person indicated in item 11 declares to be the creator of the design. Where the person identified as the creator is a person other than the applicant, it is hereby stated that the present international application has been assigned by the creator to the applicant. I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designated in item 7, you must also submit an oath or declaration of inventorship using Annex I. If **Bulgaria, Chin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Serbia, Tajikistan** and/or **Türkiye** are designated in item 7,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you indicate the identity of the creator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Identity of the creator"**).

No. of the design (in numerical order)	Creator(s)							
	Family name			Given name				
	Address							
	Postal code		City		Region/ state (optional)		Country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12 Claim *(if applicable)*

Applicable only when designat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or **Viet Nam.**

United States of America[6] :

The ornamental design for ..... as shown and described.

6. Indicate the article in which the design is embodied in or applied to. If multiple designs for the same article are contained in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article should be written in singular form.

Viet Nam :

By designating Viet Nam in item 7, the applicant is making the following claim: "Application for overall protection for design(s) as shown and described."

13 Priority Claim *(if applicable)*

Indicate the number of each design for which priority is claimed. If no design is indicated, then the priority claim will relate to all designs included in this application.

Brazil, China, Japan, Mexico,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Türkiy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quire submission of priority documents directly to their Offices.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International Application – Item 13.**

Office or country of earlier filing	No. of earlier filing *(if available)*	Date of earlier filing (Day/month/year)	DAS code (if available) (Refer to Guide to the Hague System, WIPO Digital Access Service – Item 13)	No. of the design (in numerical order) (e.g. design 1, design 2)	Annex V provided (Only if **China**, **Japan** or the **Republic of Korea** is designated)
					☐ Yes
					☐ Yes
					☐ Yes

By providing this information, the applicant claims the priority of the earlier filing(s) indicated above.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14 International Exhibition *(if applicable)*

You may benefit from temporary protection for designs exhibited at an international exhibition under Article 11 of the Paris Convention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the **Database on Temporary Protection for Designs Shown at International Exhibitions**). By providing this information, the applicant claims that one or more designs were shown at an official, or offici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exhibition.

Place where exhibition was held			
Name of the exhibition			
Date on which product(s) was(were) first exhibited (Day/month/year)		**No. of the design**[7]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7. Indicate the number of each design shown at the exhibition in numerical order. If no design is indicated, it is understood that all designs were shown.

15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f applicable)*

If designating **China,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you may benefit from an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due to prior disclosure.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International Application — Item 15.**

(a) Contracting Party(ies) concerned: ☐ **China** ☐ **Japan** ☐ **Republic of Korea**

(b) The applicant claims to benefit from exceptional treatment provided for in the design law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ed, for the following designs contained in the present application.

☐ **all** designs, or

☐ **the following** designs (e.g. design 1, design 2)

....

You must submit supporting documentation via Annex II (see check box below) or directly to the Office concerned

☐ Check this box if Annex II is attached.

16 **Main or Principal Design** *(if applicable)*

If designating **China,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WIPO strongly recommends to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International Application – Item 16.**

China: main design

If designating **China**, you may include a maximum of 10 similar designs for the same product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f more than one design is included, you **must** indicate one of them as the **main design.**

The applicant indicates the following design as the **main design** (e.g. design 1): .....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principal and related designs

If designating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designs may be registered as related to a principal design.

(a) Contracting Party(ies) concerned: ☐ **Japan** ☐ **Republic of Korea**

(b) The applicant requests that the following designs contained in the present application be registered as **related designs**:

☐ **all** designs, or

☐ the following designs (e.g. design 1, design 2)

_____ _____

_____ _____

(c)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incipal design** to which the designs indicated under item (b) are related (Note: The principal design must be subject of an application or a registration with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i) The **principal design** is the subject of:

☐ the present international application

☐ a prior international application designating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WIPO Reference Number(e.g.123456789 or WIPO12345): .....

☐ a pri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designating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 a prior national application filed with the Office of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Application Number/Applicant's reference: .....

☐ a prior national registration at the Office of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ii) If the above national or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registration contains several designs, indicate **the number of the design to be considered as the principal design**. .....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17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ptional)*

Publication will take place **12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unless the applicant selects one of the options below:

☐ immediate publication (upon recording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publication at a chosen time : ..... months from **the filing date.**

Important : International registrations must be published within **30 months** of the filing date or, where priority is claimed, of the priority date.

- If you designate Belarus, Belize, Benelux, Brazil, Brunei Darussalam, Cambodia, Croatia, Denmark, Estonia, Finland, Greece, Hungary, Iceland, Israel, Jamaica, Mexico, Monaco, Norway, OAPI, Poland, the Russian Federation, Samoa, Saudi Arabia, Slovenia, Suriname, Syrian Arab Republic, Ukrain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zbekistan or Viet Nam, the chosen time cannot exceed **12 months.**

- If Singapore is designated, the chosen time cannot exceed **18 months** from the filing date.

18 Reduction of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if applicable)*

Applicable only when designating **Israel**, **Mexico** and/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heck the applicable boxes.

Israel

□ The applicant is a natural person, a small entity whose yearly revenue does not exceed the amount set in the Israeli Design Regulations, or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recognized by Israeli law, and no priority is claimed under item 13.

Important : For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a fee reduction, please visit the Israel Patent Office website.

Mexico

□ The applicant declares under oath to fall into one of the categories (a creator who is a natural person, a micro or small entity, a public or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or a public scientific or technological research institute) referred to in the first paragraph of the Fourth General Provision of the Agreement setting forth the fees for services provided by the Mexican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MPI) and, accordingly, may pay only 50 percent of the corresponding fees.

Important : Applicants who wish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entitled to micro or small enterprise status should consult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classifica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nly in Spanish).

United States of America

☐ The applicant asserts **small entity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41(h) of Title 35 of the United States Code and Section 3 of the Small Business Act, and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The applicant certifies **micro entity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23 of Title 35 of the United States Code and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micro entity certification** form PTO/SB/15A or PTO/SB/15B using Annex IV.

Important : For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micro or small entity status, please visit the USPTO website.

19 Signature

The signatory is the :

☐ **Applicant** ☐ **Representative of the applicant**[8]

Full Name[9]: .....

Date (Day/month/year) : .....

Signature[10] .....

8. If signed by the **representative**, item 5 above must be completed.

9. As indicated in item 1 or 5 above

10. Text string signatures (e.g. /John Doe/) are recommended. Signatures may also be handwritten, printed, stamped, typed or in another electronic form (image, digital or computer generated).

PAYMENT OF FEES

☐ The applicant has requested deferred publication (more than 12 months indicated under item 17) and wishes to pay the publication fees at a later date. (Note: The publication fee must be paid no later than three weeks prior to the expiry of the deferment period.)

1. Total in Swiss francs (use the **Fee Calculator** or the Fee Calculation Sheet): .....

2.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at WIPO

WIPO is hereby instructed to debit the required amount of fees from the following Current Account at WIPO (if this item is completed, it is not necessary to complete items 3 or 4 below):

Holder of the account: ..... Account number: .....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instruction[11]: .....

11. Full name or authorized user name

3. Payment received and acknowledged by WIPO

This must refer to a payment which you have previously sent to WIPO and wish to use for this application.

Identity of the party which made the payment (full name of the bank account holder) : .....

WIPO receipt number(receipt number of your previous payment(s)) : .....

4. Bank transfer

Identity of the party making the payment (full name of the bank account holder) : .....

☐ Payment made to WIPO bank account

WIPO,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0
Swift/BIC: CRESCHZZ80A

Payment identification	
	As indicated in the payment, e.g. Hague, user reference
day/month/year	

☐ Payment made to WIPO postal account (within Europe only)

WIPO, SWISS POST/Postfinance,
Engelhaldenstrasse 37, CH-3030 Bern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8
Swift/BIC: POFICHBE

Payment identification	
	As indicated in the payment, e.g. Hague, user reference
day/month/year	

5. Payment made to the Office (applicable to indirect filings only)

☐ Payment made to the USPTO

FEE CALCULATION SHEET

Note: This sheet is provided for the convenience of users. It is recommended to use the **Fee Calculator.**

Applicants from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may benefit from a 90% reduction in fees.

Basic fee

For one design: **397**

For each additional design: 50 × [ ] designs = [ ]

Publication fee

17 × [ ] reproductions = [ ]

150 × [ ] pages showing reproductions (counting from page 2) = [ ]

Additional fee where the description exceeds 100 words

2 × [ ] words exceeding 100 = [ ]

Standard designation fee

Level 1

(Albania, Azerbaijan, Belize, Benelux,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Egypt, France, Greece, Italy, Liechtenstein, Monaco, Mongolia, Montenegro, North Macedonia, Oman, Rwanda, Samoa, San Marino,Sao Tome and Principe, Singapore, Slovenia, Spain, Suriname, Türkiye, United Kingdom, Uzbekistan)

For the first design: 42 × [ ] Contracting Parties = [ ]

For each additional design: 2 × [ ] designs × [ ] Contracting Parties = [ ]

Level 2

(Armenia, Belarus, Brazil, Bulgaria, Cambodia, Croatia, Denmark, Estonia, Germany, Hungary, Latvia, Mauritius, Morocco, Norway, Poland, Saint Kitts and Nevis, Saudi Arabia, Switzerland, Tunisia, Ukraine)

For the first design: 60 × [ ] Contracting Parties = [ ]

For each additional design: 20 × [ ] designs × [ ] Contracting Parties = [ ]

Level 3

(Brunei Darussalam,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nland, Georgia, Ghana, Iceland, Jamaica, Lithuania, Namibia, Republic of Korea (designs belonging to Locarno class 1, 2, 3, 5, 9, 11 or 19), Romania, Serbia,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Viet Nam)

For the first design: 90 × [ ] Contracting Parties = [ ]

For each additional design: 50 × [ ] designs × [ ] Contracting Parties = [ ]

Individual designation fee

Canada

370 × [ ] designs = [ ]

China

497 = [ ]

European Union

59 (first design) + 59 (per additional design) × [ ] designs = [ ]

Israel

106 (standard amount) × [ ] designs = [ ]

63 (reduced amount (item 18)) × [ ] designs = [ ]

Japan

436 × [ ] designs = [ ]

Kyrgyzstan

129 (first design) + 64 (per additional design) × [ ] designs = [ ]

Mexico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for Mexico comprises two parts, the first part to be paid at the time of filing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the second part upon notification by IMPI)

98 (first design) (standard amount) + 3 (per additional design) × [ ] designs = [ ]

49 (first design) (reduced amount (item 18)) + 1 (per additional design) × [ ] designs = [ ]

OAPI

Single design: 73 (standard amount) or 8 (for applicants from least developed countries) = [ ]

Multiple designs: 110 (standard amount) or 12 (for applicants from least developed countries) = [ ]

Republic of Korea

(designs belonging to Locarno class 4, 6, 7, 8, 10, 12 to 18, or 20 to 32)

162 × [ ] designs = [ ]

Republic of Moldova

73 (first design) + 7 (per additional design) × [ ] designs = [ ]

Russian Federation

107 (first design) + 22 (per additional design) × [ ] designs = [ ]

Turkmenistan

589 (first design) + 36 (per additional design) × [ ] designs = [ ]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mprises two parts, the first part to be paid at the time of filing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the second part upon invitation by the USPTO)

1,150 (standard amount) or 460 (for a small entity (item 18)) or 230 (for a micro entity (item 18)) = [ ]

TOTAL [ ]

CONTRACTING PARTIES OF THE HAGUE AGREEMENT

The table below provides the type of designation fees payable.

A numeral(**1, 2 or 3**) indicates the applicable level of standard designation fees. The letters "**IF**" indicate that individual designation fees are applicable (amounts of all fees are indicated in the Fee Calculation Sheet).

Contracting Parties of the Hague Agreement		*Designation Fee*
(AL)	Albania	*1*
(AM)	Armenia	*2*
(AZ)	Azerbaijan	*1*
(BA)	Bosnia and Herzegovina	*1*
(BG)	Bulgaria	*2*
(BN)	Brunei Darussalam	*3*
(BR)	Brazil	*2*
(BW)	Botswana	*1*
(BX)	Benelux	*1*
(BY)	Belarus	*2*
(BZ)	Belize	*1*
(CA)	Canada	*IF*
(CH)	Switzerland	*2*
(CN)	China	*IF*
(DE)	Germany	*2*
(DK)	Denmark	*2*
(EE)	Estonia	*2*
(EG)	Egypt	*1*
(EM)	European Union	*IF*
(ES)	Spain	*1*
(FI)	Finland	*3*
(FR)	France	*1*
(GB)	United Kingdom	*1*
(GE)	Georgia	*3*
(GH)	Ghana	*3*
(GR)	Greece	*1*
(HR)	Croatia	*2*
(HU)	Hungary	*2*
(IL)	Israel	*IF*
(IS)	Iceland	*3*
(IT)	Italy	*1*
(JM)	Jamaica	*3*

(JP)	Japan	*IF*
(KG)	Kyrgyzstan	*IF*
(KH)	Cambodia	*2*
(KN)	Saint Kitts and Nevis	*2*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3*
(KR)	Republic of Korea	*IF/3*
(LI)	Liechtenstein	*1*
(LT)	Lithuania	*3*
(LV)	Latvia	*2*
(MA)	Morocco	*2*
(MC)	Monaco	*1*
(MD)	Republic of Moldova	*IF*
(ME)	Montenegro	*1*
(MK)	North Macedonia	*1*
(MN)	Mongolia	*1*
(MU)	Mauritius	*2*
(MX)	Mexico	*IF*
(NA)	Namibia	*3*
(NO)	Norway	*2*
(OA)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OAPI)	*IF*
(OM)	Oman	*1*
(PL)	Poland	*2*
(RO)	Romania	*3*
(RS)	Serbia	*3*
(RU)	Russian Federation	*IF*
(RW)	Rwanda	*1*
(SA)	Saudi Arabia	*2*
(SG)	Singapore	*1*
(SI)	Slovenia	*1*
(SM)	San Marino	*1*
(SR)	Suriname	*1*
(ST)	Sao Tome and Principe	*1*
(SY)	Syrian Arab Republic	*3*
(TJ)	Tajikistan	*3*
(TM)	Turkmenistan	*IF*
(TN)	Tunisia	*2*
(TR)	Türkiye	*1*
(UA)	Ukraine	*2*
(US)	United States of America	*IF*
(UZ)	Uzbekistan	*1*
(VN)	Viet Nam	*3*
(WS)	Samoa	*1*

〔별지 제19호의2서식〕〈개정 2025. 11. 28.〉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

DM/1/II (E)

ANNEX II:

Supporting Document(s) Concerning a Declaration to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under Section 408(c)(ii) of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IMPORTANT

1. This Annex can be used to submit documents in support of a declaration concerning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to the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CNIPA)**, the **Japan Patent Office (JPO)** and/or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OIP)** (refer to form DM/1, item 15). The submitted document(s) will be transmitted by WIPO to the Office(s) concerned.
2. This Annex must be submitted with form DM/1 at the time of filing.
3. Submit only one Annex II per declaration to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regardless of how many Contracting Parties you have designated.
4. Please note that a declaration concerning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might affect the applicant's rights in other jurisdiction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applicant to ensure that their rights are preserved.
5.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procedure when designating Japan, please visit the JPO website.
6. Please number your pages.

For use by the applicant	For use by WIPO
This Annex concern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referenced by the applicant as below: Reference:	Document type: DDD

II **Supporting Document(s) Concerning a Declaration to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The supporting document(s) concern(s) the following design(s), for which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s claimed in item 15 of form DM/1:

○ **all** designs, or
○ **the following** designs:

indicate the design numbers.

Number of pages (including the cover page):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9호의3서식〕〈개정 2025. 11. 28.〉

발명자 선언서

DM/1/I (E)

ANNEX I:

Oath or Declaration of the Creator under Rule 8(1)(a)(ii) of the Regulations

IMPORTANT

1. This Annex is mandatory content for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designat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 This Annex can be used to submit a Declaration of Inventorship (Declaration), following Rule 8(1)(a)(ii) OR, in the impossibility to provide such declaration, a Substitute Statement in Lieu of a Declaration of Inventorship (Substitute Statement). Please provide a Declaration OR a Substitute Statement for each creator indicated under item 11 of the DM/1 form.
3. The Declaration and Substitute Statement require the signer to declare inventorship with respect to a "claimed invention". For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a "claimed invention", refer to the **Hague Guide for Users, International Application – Item 12.**
4. This Annex may also be used by applicants who wish to submit an alternative document that they know is deemed a valid inventor's oath or declaration und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ational requirements.
5.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inventor's oath or declaration, visit the USPTO website: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forms/aia_oathdecl_guide.pdf.
6. This Annex must be submitted with form DM/1 at the time of fil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ogether with the Declaration/Substitute Statement/Alternative Document referred to above.
7. Please number your pages.

For use by the applicant	For use by the International Bureau
This Annex concern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referenced by the applicant as below: Reference:.....	Document type: DDO Contracting Party: US

I Declaration Under Rule 8(1)(a)(ii) of the Regulations

Number of pages (including this cover page): .....

210㎜×297㎜〔백상지 80g/㎡〕

DM/1/I (E)

ANNEX I – DECLARATION OF INVENTORSHIP (Page 1 of 1)

I

Declaration of Inventorship for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hereby declare that I believe I am the original inventor or an original joint inventor of a claimed invention in the application.

This declaration is directed to the attached international application (if filing declaration with application).

This declaration is directed to international application .....

(if furnishing declaration after filing the application, the declaration must identify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y the application reference number assign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or the office of indirect filing, or by applicant's reference number which was on the application as filed).

I hereby declare that the above-identified international application was made or authorized to be made by me.

I hereby acknowledge that any willful false statement made in this declaration is punishable under 18 U.S.C. 1001 by fine or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five (5) years, or both.

Name of Inventor: .....

(Family (last) name, given (first) name)

Inventor's Signature: .....

(The signature must be that of the inventor, not that of the agent.)

Date *(optional)*: .....

Residence: *(required only if the inventor lives at a location different from the mailing addres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City: ..... U.S. State (*if applicable*) ..... Country: .....

DM/1/I (E)

ANNEX I – SUBSTITUTE STATEMENT (Page 1 of 2)

I

Substitute Statement in Lieu of a Declaration of Inventorship for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is statement is directed to:

○ **The attached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 **international application:** .....

(if furnishing statement after filing the application, the statement must identify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y the application reference number assign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or the office of indirect filing, or by applicant's reference number which was on the application as filed).

Legal name of inventor to whom this substitute statement applies:

.....

(Family (last) name, given (first) name)

Residence: *(not required if the inventor lives at the same location as the mailing addres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the inventor is deceased or legally incapacitated)*

City: ..... U.S. State (*if applicable*): ..... Country: .....

I believe the above-named inventor or joint inventor to be the original inventor or an original joint inventor of a claimed invention in the application.

The above-identified application was made or authorized to be made by me.

I hereby acknowledge that any willful false statement made in this statement is punishable under 18 U.S.C. 1001 by fine or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five (5) years, or both.

Relationship to the inventor to whom this substitute statement applies:

○ Legal Representative (for deceased or legally incapacitated inventor only)

○ Assignee

○ Person to whom the inventor is under an obligation to assign

○ Person who otherwise shows a sufficient proprietary interest in the matter (a petition under 37CFR1.46 is required and should be submitted directly to the USPTO after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r

○ Joint inventor

DM/1/I (E)

ANNEX I – SUBSTITUTE STATEMENT (Page 2 of 2)

Circumstances permitting execution of this substitute statement:

○ Inventor is deceased

○ Inventor is under legal incapacity

○ Inventor cannot be found or reached after diligent effort, or

○ Inventor has refused to execute the oath or declaration under 37CFR1.63.

Person executing this Substitute Statement

Name : .....

Date *(optional)* : .....

Signature: .....

The party who is signing the substitute statement must be an applicant. If the applicant is a juristic entity (legal entity), list the applicant name and the title of the signer below.

Applicant name: .....

Title of person executing this Substitute Statement: .....

(The signer, whose title is supplied above, is authorized to act on behalf of the applicant.)

Residence of the signer: *(not required if the signer's mailing address i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indicated below and the signer lives at the same location as the mailing address)*

City: ..... U.S. State *(if applicable)*: ..... Country: .....

Mailing address of the signer: *(not required if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City: ..... U.S. State *(if applicable)*: ..... Zip: ..... Country: .....

〔별지 제19호의4서식〕〈개정 2025. 11. 28.〉

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

DM/1/III (E)

ANNEX III:

Information on Eligibility for Protection
under Rule 7(5)(g) and Section 408(d) of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IMPORTANT

1. This Annex is optional and can be used to submit a statement under Rule 7(5)(g) that identifies information known by the applicant to be material to the eligibility for protec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concerned.
2. This Annex is only relevant for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an be used to submit a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and relevant accompanying documentation. Please note that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may also be submitted directly to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3.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forms (SB08a/SB08b/SB08a-EFS-web) are available on the USPTO web site: www.uspto.gov/forms/aia_forms.jsp.
4.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visit the USPTO web site: www.uspto.gov/web/offices/pac/mpep/s609.html.
5. This Annex must be submitted with form DM/1 at the time of filing; it cannot be submitted separately.
6. Please number your pages.

For use by the applicant	For use by WIPO
This Annex concern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referenced by the applicant as below: Reference:.....	Document type: DDP Contracting Party: US

III Information on Eligibility for Protection

Number of pages (including this cover page):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9호의5서식〕〈개정 2025. 11. 28.〉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

DM/1/IV (E)

ANNEX IV:

REDUCTION OF UNITED STATES INDIVIDUAL DESIGNATION FEE

under Section 408(b) of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IMPORTANT

1. This Annex is only relevant for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s mandatory content if the applicant claims micro entity status in form DM/1. It cannot be submitted separately.
2. This document is to submit a certification following Section 408(b) of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3. The certification form (**PTO/SB/15A** or **PTO/SB/15B)**, along with the instructions for its completion and signature, is available on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eb site: www.uspto.gov/forms/aia_forms.jsp.
4. Please number your pages.

For use by the applicant	For use by the International Bureau
This Annex concern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referenced by the applicant as below: Reference:.....	Document type: DDE Contracting Party: US

Ⅳ REDUCTION OF INDIVIDUAL DESIGNATION FEES

Number of pages (including this cover page):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25. 10. 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 취하서

(앞쪽)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지식재산처참조번호】

【취하대상의 표시】

【서류명】

(【취하요지】)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5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제출원을 취하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3조).

2. 처리절차

국제출원 취하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 서식 흠결 시: 보정 통지 또는 반려 통지
(제출인)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 기재방법

1.【출원인】 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 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영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출원인】 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 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 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만큼 【제출인 ○○○의 인감(서명)】 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

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 란에는 "국제출원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 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출원인】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2. 【대리인】 란

가.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영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 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 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 【지정된 변리사】 란에는 대리인 신고 시 적은 영문 성명만을 적으며,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지정된 변리사】 HONG Gil Dong, KANG Gam Chan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 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 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 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3. 【사건의 표시】란

서식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지식재산처참조번호】를 적습니다.

4. 【취하대상의 표시】란

【서류명】, 【접수번호】, 【제출일】 및 【취하요지】란에는 각각 취하대상이 된 서류명과 이를 제출하고 받은 접수번호, 서류 제출일 및 취하요지를 간략하게 적으며, 【서류명】란에는 국제출원서만 적을 수 있습니다.

5. 【첨부서류】란

이 서식에는 기재방법 제3호 또는 제4호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첨부서류】란에는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부수를 적습니다.

6. 일반적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이나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Ⅱ

디자인 관련 훈령·예규·고시

1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지식재산처훈령 제6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제4조(심사사무의 감독)
제5조(심사관 지정)
제5조의2(심사관보 및 그 업무)
제6조(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제7조(심사관 변경)
제8조(심사관의 제척 등)
제9조(협의심사 등)
제10조(심사부서 등의 포상)
제11조(심사의 순위)
제12조(심사점검표 작성)
제13조(심사관련 지정기간)
제14조(서류방식의 심사)
제15조(절차의 무효처분)
제16조(문서의 시행명의)
제17조(서류의 송달)
제18조(반송된 서류의 처리)
제19조(수취인이 복수인 경우 반송된 서류의 처리)
제20조(서류의 공시송달)

제2장 디자인심사

제1절 디자인 분류 심사

제21조(디자인분류)
제22조(디자인분류의 외부용역)
제23조(디자인분류의 처리기한)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절차

제24조(심사처리기한)
제25조(거절이유통지)
제26조(보정각하)
제27조(심사의 보류 또는 연기 등)
제28조(신규성상실 예외주장 등의 처리)
제29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제30조(등록여부결정 등)
제31조(직권보정에 대한 의견서의 처리)
제31조의2(직권 재심사)
제32조(출원공개 신청에 대한 처리)
제33조(비밀디자인 지정청구에 대한 처리)

제3절 우선심사

제34조(우선심사여부 결정의 기한)
제35조(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제36조(우선심사 관련 의견문의)
제37조(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제38조(우선심사심의협의회 상정)
제39조(우선심사심의협의회 구성)
제40조(우선심사결정의 통지)
제41조(우선심사결정 후 심사처리기한)
제42조(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

제4절 일괄심사

제43조(일괄심사의 착수 및 종결)
제44조(일괄심사관련 증명서류 열람의 기록)

제5절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제45조(이의결정심사관 지정 및 심사관합의체 구성 등)

제46조(이의신청의 각하결정)
제47조(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
제48조(이의신청 심사관련 지정기간 등)
제49조(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제50조(이의신청 심사절차의 중지)
제51조(이의결정)
제52조(이의결정서의 기재사항)
제53조(이의신청의 취하)

제6절 재심사청구 및 취소환송에 대한 처리

제54조(재심사가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제55조(취소환송된 디자인등록출원 등의 심사)

제3장 보 칙

제56조(모형 및 견본의 처리)
제57조(심사관의 등록무효심판청구)
제58조(심사관 면담)
제59조(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제60조(심사자문위원 선정기준)
제61조(심사자문위원 추천서류)
제62조(심사자문 의뢰)
제63조(심사자문의 대상)
제64조(심사자문위원에 대한 심사자료 제공)
제65조(심사자문위원의 의견제출 기한)
제66조(심사자문위원 의견서의 보존)
제67조(심사자문수당)
제68조(시장조사)
제69조(통계관리)
제70조(재검토기한)

부 칙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 정 2022. 9. 28. 특허청훈령 제1088호
일부개정 2023. 4. 25. 특허청훈령 제1109호
일부개정 2023. 12. 21. 특허청훈령 제1148호
일부개정 2025. 10. 30. 지식재산처훈령 제2호
일부개정 2025. 11. 1. 지식재산처훈령 제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포함)을 말한다.
2. "이의신청"이라 함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을 말한다.
3. "심사원"이라 함은 심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① 출원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사무처리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정보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사무의 감독) ① 국장, 심사과장(심사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심사과장"이라 한다) 및 디자인팀장은 심사의 정확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관을 지휘 감독한다.

② 심사관은 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디자인팀장과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
2. 출원에 대한 4회 이상의 의견제출통지

③ 심사관은 출원 또는 우선심사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디자인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2. 의견제출통지 후의 등록결정

3. 거절결정. 다만, 의견제출통지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으로부터 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④ 심사관은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을 할 때에는 디자인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뢰,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안내,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심사참고자료제출요청 등에 관한 사항 및 상표·디자인 심사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디자인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석심사관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서, 우선심사보완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협의통지서 포함),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 통지서, 거절결정서(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
2. 책임심사관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서, 우선심사보완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협의통지서 포함),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 통지서
3. 선임심사관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서 및 우선심사보완통지서

⑤ 심사관이 행한 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8조제3항에 따른 담당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디자인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등록결정
2. 거절결정

제5조(심사관 지정) ① 국장은 한국분류의 물품류 구분(이하 "물품류구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출원의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심사과장 및 디자인팀장을 포함한다)을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장은 심사국 내에서 심사관 소속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출원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심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③ 국장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물품류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심사관합의체를 포함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국장은 직권 재심사하는 출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결정을 한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심사관보 및 그 업무) 국장은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심사관보에게 심사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물품류의 부여, 우선심사 결정업무, 심사통지서 작성 등의 심사와 관련된 업무 지원
2. 심사와 관련된 절차 진행 등의 업무

제6조(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① 신임심사관(심사과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은 디자인팀장 또는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자(이하 "경력심사관"이라 한다) 중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경력심사관을 보좌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관 발령을 받지 않고 심사할 때도 동일하다.

② 신임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개월간은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경력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신임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제5조의2에 따른 심사관보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좌심사기간, 제2항에 따른 공동심사기간에 심사관보 경력을 반영할 수 있다.

④ 디자인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4급 또는 5급으로 심사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6개월 이상 심판관·심판연구관·소송수행관으로 근무하거나 상표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좌심사와 공동심사 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한다.

⑤ 심사경력이 없는 신임심사과장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은 경력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⑥ 6급 신임심사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좌심사와 공동심사 기간을 각 6개월로 한다.

제7조(심사관 변경) ① 국장은 심사관 인사이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심사관에게 그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관의 제척 등) ① 국장은 담당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1. 「디자인보호법」 제76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심사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용직전 2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기업, 연구소, 특허사무소, 대학 등)의 출원을 심사하는 경우

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가 출원인, 대리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일한 상표·디자인팀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한 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대리하는 출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심사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을 심사할 수 있는 다른 심사관을 지정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단, 심사관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과장으로 하여금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심사 등) ① 담당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다른 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의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디자인팀장 및 담당심사관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협의심사는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담당심사관은 협의심사 결과를 심사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심사관으로 구성하는 심사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제1항에 의한 협의심사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
2. 심사에 관련된 법규의 통일된 운용과 정확한 심사처리를 위하여 결정이 어려운 출원에 대하여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⑤ 제4항의 심사관합동회의는 디자인심사정책과 담당서기관(사무관)이 간사가 되며, 경력심사관 중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0조(심사부서 등의 포상) 지식재산처장 또는 국장은 심사실적, 심사품질평가결과 또는 심사품질향상 기여도 등에 따라 우수심사부서, 우수심사관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우수조사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의 순위) ① 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순위에 따른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의신청순위에 따른다.

제12조(심사점검표 작성) 심사관은 해당 출원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종 검색

결과나 출원인의 의견 및 보정 내용, 심사관의 판단 등을 간략하게 심사점검표에 기재하여, 디자인팀장·심사과장 및 국장이 결재할 때에 그 심사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관련 지정기간) ① 「디자인보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과 심사와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심사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회 1개월씩 총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은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④ 기간연장신청서가 지정 또는 연장기간 내에 제출되고, 연장신청기간이 매회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기간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⑤ 출원인이 1회의 연장신청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그 연장기간을 1개월로 본다.

⑥ 연장기간은 지정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다음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만료하며,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에 만료한다.

⑦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⑧ 「디자인보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출원인이 지정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 제출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제출일에 지정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서류방식의 심사) ① 심사관은 출원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중에 접수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1개월 이내에 보정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행위능력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경우
2.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② 심사관은 방식심사결과 수수료 등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된 사실을 납부자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절차의 무효처분) ① 심사관은 제14조에 따른 보정명령에 대하여 출

원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지한 보정명령의 적법성을 재검토하여 적법한 경우에는 그 출원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4조에 따른 보정명령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정명령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그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제16조(문서의 시행명의) ① 출원의 심사에 관한 문서는 심사관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절차에 관한 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문서는 심사관합의체의 공동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이의신청서의 각하는 심사장 명의로,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등본의 송달은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좌심사에 관한 사항은 경력심사관 명의로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심사에 관한 사항은 경력심사관과 공동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서류의 송달) ① 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송하여야 한다.

1. 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게는 온라인 발송
2.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문서송달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에게는 해당 문서송달함으로 발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게는 우편발송

② 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되지 않은 통지서나 기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사항을 전산입력한 후 시행문서를 운영지원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송한 통지서를 수취인이 7일 동안 받지 않는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문서를 출력하여 운영지원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통지서 등의 발송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별도로 국내의 송달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제18조(반송된 서류의 처리) ① 발송한 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반송관리심사원은 반송사유 · 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반송사항 입력 후 반송관리심사원은 전화 또는 주민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취인의 주소(제17조제4항단서의 주소를 포함한다)를 조사하여 해당 주소로 반송된 통지서 등을 재발송하고 조사된 주소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화로 조사된 주소거나 제17조제4항단서의 주소에 한하

여 재발송한 통지서 등이 또 반송되는 경우에는 다시 주민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소를 조사한 후 해당 주소로 통지서 등을 재발송하고 조사된 주소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된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해당 서류 등을 발송하여 반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반송관리심사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서 등을 재발송하는 경우 "출원인 등 주소변경신고 안내서"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제19조(수취인이 복수인 경우 반송된 서류의 처리) 복수의 수취인 중 어느 하나의 수취인에게 제18조에 따라 재발송하였으나 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다른 수취인의 주소로 재발송하고 또 반송되는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20조(서류의 공시송달) ① 반송관리심사원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재발송에도 불구하고 통지서 등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정보관리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반송된 통지서를 재발송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디자인보호법」 제2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디자인심사

제1절 디자인 분류 심사

제21조(디자인분류) ①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방식심사가 완료되어 출원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출원디자인의 물품에 대한 가분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출원 중「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해 출원에 대한 분류를 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을 출원과장에게 재이송할 수 있다.

②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분류담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행한 가분류가 디자인분류표에 따라 부여되었는지 확인하게 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여 심사과에 이송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의 전문기관에서 가분류한 출원이 적합하게 분류된 것인지 심사 착수 시에 확정하고, 적합하게 분류되지 않아 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심사정책과에 분류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분류정정 신청

이 없이 심사가 착수되면 확정분류된 것으로 본다).

④ 분류담당자는 심사관으로부터 분류정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심사처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디자인분류의 외부용역) ①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디자인보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출원디자인의 물품에 대한 가분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분류를 의뢰할 수 있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으로 물품분류코드가 자동분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분류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행한 가분류가 디자인분류표에 따라 정확하게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3조(디자인분류의 처리기한) ①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의 가분류는 분류담당자 또는 전문기관이 출원을 해당 전산시스템에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하 "일부심사출원"이라 한다)의 가분류는 분류담당자 또는 전문기관이 출원을 해당 전산시스템에 이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절차

제24조(심사처리기한) ①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있는 경우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간서류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제출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디자인보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출원인이 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 제출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간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일부심사출원을 담당하는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 심사착수 전 출원인이 자진보정한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보정서 등 제출서류가 이관된 날
2.「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신규성상실 예외를 주장한 경우에는 신규성상실 예외를 주장한 날로부터 30일이 만료되는 날
3.「디자인보호법」 제51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는 날
4.「디자인보호법」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만료되는 날
5.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서류가 심사관에게 이관된 날

⑤ 일부심사출원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있는 경우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제출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간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의견제출기간 만료 전이거나 의견제출기간 만료 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⑥ 제27조에 해당하는 출원에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심사관은 제27조에 따라 심사보류 또는 연기된 출원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이송받은 이후에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그 중간서류 처리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 다만, 심사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도 처리기한은 1회만 연장한다.

⑧ 일부심사출원을 담당하는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이 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보정서 제출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발견된 거절이유를 모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심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거절이유만을 통지 할 수 있다.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거절이유가 있는 디자인의 일련번호와 거절이유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한 이후에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여 추가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이전 거절이유에 대한 해소 여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이 요지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이 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출원인이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는 해당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 또는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출원인이 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출원인이 2 이상의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접수순서에 따라 요지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요지를 변경한 보정서가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보정각하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심사관이 보정각하결정을 한 후 출원인의 보정서나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제기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심사의 보류 또는 연기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보류하거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선출원과 경합되는 경우
2.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외부 의견문의를 한 경우
3. 선출원이 심판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4. 기본디자인이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에 계류 중이며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해당 출원과 관련된 서류 등이 무효처분 또는 반려처분된 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단, 무효처분 또는 반려처분이 취소되어도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6. 그 밖에 심사의 보류 또는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때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류 또는 연기하는 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신규성상실 예외주장 등의 처리) ①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한 「디

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분할출원 등이 적법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등에 관한 불인정예고통지를 거절이유통지와 별도의 서식으로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등 불인정확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제3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가 우선권인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우선권주장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적법하지 않은 경우 거절이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등록여부결정을 통지할 때에 그 심사결과와 제공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출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활용여부를 통지하지 않는다.

제30조(등록여부결정 등) ①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여부결정통지서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을 적용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의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에 관한 심사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등록디자인공보에도 같은 취지를 게재한다.

② 심사관은 해당 출원일부터 6개월 이전에 심사에 착수하고 이후에 등록여부결정을 하는 때에는 선출원 및 선등록 디자인등록출원을 재검색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신규성상실 예외 주장, 분할출원 및 우선권주장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등록결정서의 우선권주장일자 또는 출원소급일자 등의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해당 출원을 거절결정하는 경우 거절결정서에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와 이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 및 보정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최종적으로 심사관이 거절결정하는 이유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식재산처 퇴직자의 재직 중 출원, 퇴직 후 2년 이내의 출원 또는 전문기관 직원의 출원에 대해서는 디자인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의뢰한 후 심사관 3인이 협의하여 디자인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제31조(직권보정에 대한 의견서의 처리) ① 「디자인보호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관은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결정을 취소한 경우 심사관은 등록과장 및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과장을 포함한 3인 협의에 의하여야 하며, 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취소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권 재심사에 이르게 된 명백한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2조(출원공개 신청에 대한 처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출원공개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사관은 물품의 가분류일 또는 출원공개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비밀디자인 지정청구에 대한 처리) 비밀디자인 지정청구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결정서의 여백에「이 출원은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밀을 보장함」이라고 기재한다.

제3절 우선심사

제34조(우선심사여부 결정의 기한) ① 심사관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가분류일 또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거나 송부된 경우에는 보정기간 등의 만료일 또는 해당 서류가 심사관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15일을 기산한다.

1. 제14조에 따른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되는 보정서
2. 제35조에 따른 보완지시에 따라 제출되는 보완서
3. 제36조에 따른 의견문의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서
4. 제38조에 따른 우선심사심의협의회로부터 통보되는 결정서

5. 삭제

제35조(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① 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중에 신청인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제36조(우선심사 관련 의견문의) 심사관은 해당 출원이 디자인우선고시 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속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문의를 할 수 있다.

제37조(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하고, 우선심사신청인과 출원인(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디자인우선고시 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2.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의 정상적인 심사착수예정시기가 우선심사신청 관련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3.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정서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에 의하여도 보정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4. 제35조에 따른 보완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완서에 의하여도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우선심사심의협의회 상정) 심사관은 우선심사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안건을 우선심사심의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39조(우선심사심의협의회 구성) ① 우선심사심의협의회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디자인심사정책과장, 해당 심사과장 및 심사관과 2인 이내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이 된다.

② 우선심사심의협의회는 우선심사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을 참작하여 우선심사 여부를 심의한다.

제40조(우선심사결정의 통지) 심사관은 해당 출원이 디자인우선고시 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여 우선심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우선심사신청인과 출원인에게 우선심사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우선심사결정 후의 심사처리기한) ① 우선심사를 결정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결정서를 발송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있는 경우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간서류를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해야 할 경우로서 45일 이내에 처리할 경우 아직 의견서제출기간이 남아 있을 때에는 의견서제출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제출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이 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 제출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27조에 따라 심사보류 또는 연기된 출원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제27조에 해당하는 출원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심사관은 우선심사를 결정한 출원에 대한 최종처리결과(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포기 등)를 우선심사신청인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에는 즉시 그 통지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절 일괄심사

제43조(일괄심사의 착수 및 종결) 심사관은 제11조제1항, 제24조 및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이 일괄심사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일괄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일괄심사고시 제10조에 따라 심사착수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일괄심사관련 증명서류 열람의 기록) 심사관은 일괄심사가 신청된 출원에 있어서 일괄심사고시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증명서류를 열람함으로써 증명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때에는 심사점검표에 그 증명서류의 열람 일시·장소 및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5절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제45조(이의결정심사관 지정 및 심사관합의체 구성 등) ① 심사과장은 해당 이의신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경력심사관 중에서 이의결정심사관을 지

정한다. 이의신청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의결정 전담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심사과장은 이의신청심사를 담당하기 위해 심사과장을 포함하는 3인의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하고, 심사관합의체 중의 1인을 이의결정심사관으로 지정하며, 심사과장이 심사장이 된다.

③ 심사장은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④ 심사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관합의체가 구성된 때에는 이의신청일, 이의신청번호, 등록번호,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예고등록의뢰서를 등록과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이의신청의 각하결정) ① 심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그 보정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이의신청 대상인 디자인등록이 무효·취소 등으로 소멸되어 이의신청의 목적물이 없게 된 경우
3. 이의신청인이 해당 디자인등록을 승계한 경우
4. 이의신청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사망하여 절차가 중단된 경우 그 승계인이 수계하지 않아 절차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심사장 명의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47조(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 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때에는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이 지난 후 디자인권자(2인 이상인 때에는 공유자 모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취지를 해당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등록을 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이의신청 심사관련 지정기간 등) ①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답변서제출기간 등 심사장 또는 이의결정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정기간은 심사장이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이나 디자인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이의신청이유 등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

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을 포함하여 총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①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심사를 하여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심사장은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0조(이의신청 심사절차의 중지) 제27조에 따른 심사의 보류 등은 이의신청심사의 중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1조(이의결정) ① 이의결정은 디자인권자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결정심사관이 이의신청인의 의견 또는 출원인의 재답변이 필요하여 이의신청 의견서 또는 재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시기가 지나면 이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이의결정심사관은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이 유사한 내용의 재답변서와 이의신청 의견서를 계속 제출하여 이의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서를 통지하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으로 하여금 주장 내용을 모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의결정은 심사장이 주관하여 심사관합의체에서 결정한다.

④ 이의결정심사관은 심사관합의체의 결정에 따라 이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심사장의 결재를 받아 국장에게 보고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결정이 있을 때에는 심사장은 지식재산처장 명의의 이의결정등본과 함께 이의결정서를 특별송달방법으로 이의신청인과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게도 이의결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디자인보호법」 제72조에 따라 해당 디자인권에 대하여 2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나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52조(이의결정서의 기재사항)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

1. 이의결정기관 및 이의결정 서면의 표시

2. 이의신청번호
3. 출원번호
4. 등록번호
5. 이의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주소
6. 디자인권자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주소
7. 이의결정의 주문
8. 이의신청취지
9. 등록디자인 등 관련 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이의결정의 이유
11. 이의결정 연월일
12. 심사관합의체 심사관 기명날인

제53조(이의신청의 취하) ①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 심사장은 이의신청의 취하서를 수리한 때에 이의신청서류에 취하에 대한 기재와 함께 날인하고 디자인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 경우 해당 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제46조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에도 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이유나 증거 중에 등록취소의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관 명의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절 재심사청구 및 취소환송에 대한 처리

제54조(재심사가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①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 제64조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심사 착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하여 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일반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④ 제55조는 재심사가 청구된 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재심사청구된 출원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디자인심사국의 심사관합동회의의 자문을 요

청하여 처리한다.

제55조(취소환송된 디자인등록출원 등의 심사) ①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출원 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심판에 관한 사항이 전산입력된 후 1개월 이내에 재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재심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한다.

③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일반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④ 심사관합의체는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당초 이의결정에 인용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각결정을 하고, 당초 이의결정에 인용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당초 이의신청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49조는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취소환송된 출원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제9조에 따른 심사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56조(모형 및 견본의 처리) ① 심사관은 출원과장으로부터 인수받은 모형 및 견본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가 끝난 것에 대하여는 그 제출인에게 최소한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찾아갈 것을 통지하는 서면을 송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출원과장에게 인계한다.

제57조(심사관의 등록무효심판청구) ① 무효심판의 청구 여부는 무효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과장, 디자인팀장 및 심사관을 포함하는 3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따라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관은 사전에 그 취지를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판의 각하 또는 취하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심사과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심사관 면담) ① 심사관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대면 또는 화상으로 면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이의신청이 있는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하여 면담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와 이의신청인을 동시에 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거절이유통지상의 거절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2.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3. 이의신청심사에서 주장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신속·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면담을 할 때에는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기일을 지정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면담할 때에는 당사자가 면담신청 내용을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면담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심사과장은 면담대장에 면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면담을 한 때에는 면담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면담대장 및 면담기록서의 작성·보관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⑥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면담요청을 받은 자가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면담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견제출통지서 등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심사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료심사관 또는 상위 결재자인 디자인팀장과 함께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제59조(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① 출원의 심사와 그 밖에 디자인 분야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해당 연도 말로 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0조(심사자문위원 선정기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진 자 중에서 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의 분야별로 안배하여 위촉한다.

1. 업계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동 기술분야에서 10년이상 경력자
2.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투자기관 : 부장, 실장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인자
3. 학계 : 조교수 이상인 자
4. 공무원 : 5급 이상인 자
5. 기타 : 변리사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자

제61조(심사자문위원 추천서류) ① 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한다.

1. 이력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② 재위촉할 경우 제1항 각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한다.

제62조(심사자문 의뢰) 심사관이 출원의 심사나 그 밖에 디자인 분야의 정책 등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의뢰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 및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와 출원서류의 부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의견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

제63조(심사자문의 대상)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당시 출원 및 그 밖에 디자인 정책에 대한 관련사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출원된 내용의 파악 및 디자인 분야의 정책결정을 위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2. 출원된 디자인 및 디자인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 및 디자인 정책에 대하여 특별히 의견문의가 필요한 경우

제64조(심사자문위원에 대한 심사자료 제공) 심사관은 위원의 심사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가 소장하고 있는 해당분야의 자료, 심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5조(심사자문위원의 의견제출 기한) ① 위원의 심사 의견서는 의견문의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59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의 의견서가 해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6조(심사자문위원 의견서의 보존) 심사자문위원의 의견서는 해당 출원 또는 정책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제67조(심사자문수당) 위원의 수당은 심사의견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 예산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시장조사) 디자인 시장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1. 출원물품의 다량 거래지역에서의 시장조사
2. 출원 전 공지여부
3. 외국물품 여부
4. 자기제품임을 입증하는 입증서를 제출 시 입증서의 전부(입증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증인 증명 첨부 시는 예외로 한다)
5. 카탈로그 등의 유인물 발행여부
6. 그 밖에 디자인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69조(통계관리) 디자인심사정책과의 통계담당심사원은 출원, 심사, 이의신청, 취소환송 등에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상표심사정책과의 통계담당심사원에 공유하여야 한다.

제7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6호, 2025. 11.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좌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심사관보, 보좌심사, 공동심사 및 지도심사 업무를 수행 중인 자에게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촉장

위 촉 장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귀하를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20 년도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 관한 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지 식 재 산 처 장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귀 위촉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있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업무수행상 지득한 내용은 위촉기간내는 물론 해촉 후에도 누설(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제외)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지 식 재 산 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의견의뢰요청서

심 사 의 견 의 뢰 요 청 서

분류번호 : 20 . . .
수 신 :
제 목 : 의견문의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아래 출원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출원내용

가. 출원번호 : 디자인등록출원 제 30-0000-00000 호 (국내 또는 국외)
나. 디자인대상물품 도면
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2. 의견서 작성요령(붙임 참조)

붙 임 :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지 식 재 산 처 장

〔별지 제4호 서식〕 심사의견제출서

심 사 의 견 제 출 서

수 신 : 지식재산처장
참 조 :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제 목 : 의견서 제출

다음 출원에 대한 20 . . . 의견 문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디자인등록출원 제 30-0000-00000호

붙 임 : 의견서. 끝.

20 . . .

위원 (인)

〔별지 제5호 서식〕 출원심사처리(보류, 연기) 통지서

출원심사처리 보류/연기 통지서

수신	출원인	성명		주소	
	대리인	성명		주소	
출 원 번 호	20 년 디자인등록출원 제 호				
디자인을 표현할 물품					

위 출원서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출원 심사처리를 연기/보류 키로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아 래

1. 연장이유 : 1) 타출원과 경합
   2) 외부 의견문의
   3) 심판이나 소송에 의한 보류
   4) 기타 (사유)

2. 처리예정시기 :

20 . . .

지 식 재 산 처 장

〔별지 제6호 서식〕 면담요청서

면 담 요 청 서

수 신 인	출원표시		출원과의 관계	
	주소 및 성명			
심 사 관	소속 및 직급			
	성 명			

출 원
귀하께서 대 리 한 20 년 디자인등록출원 제 호의
이의신청

다음 사항에 관하여 면담이 필요하오니 20 . . . 까지
○ ○ 심사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면담할 사항

20 . . .

심 사 관 ○ ○ ○ (인)

〔별지 제7호 서식〕 면담신청서

면 담 신 청 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연 락 처		
심 사 관	소 속					
	직급 및 성명					
대 상	출 원 권리분야		출원번호		면 담 신청일	

상기 디자인등록출원 제 호의 다음 사항에 관하여 담당심사관과의 면담을 신청합니다.

면담할 사항 (개요)

20 . . .

신 청 인 ○ ○ ○ (인)

〔별지 제8호서식〕 면담대장

면 담 대 장

일련번호	접수			면담내용			면담신청인	
	년월일	사건표시(출원번호)	심사관	면담(예정)일	면담방법	면담사항요약	사건과의 관계	주소·성명·연락처

〔별지 제9호 서식〕 면담기록서

면담기록서

출원 종류	디자인	출원번호	
면담 사유*	□ 거절이유 명확(1호) □ 의견서 및 보정서 등 명확(2호) □ 이의신청심사 주장 명확(3호) □ 기타 필요한 경우(4호) *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		
면담 일시		면담 방법	□ 대면 □ 영상
면담 장소			
면담 참석자	□ 출원인 □ 대리인 □ 이의신청인 □ 기타( )		
	(참석자명)		

【 면 담 내 용 】

※ 지식재산처 및 지식재산처 직원은 법령에서 정한 법정 수수료 외에 일체의 금품·향응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나 사례를 인지 또는 목격하였을 경우,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s://www..moip.go.kr) 공직비리신고센터(지식재산처-민원/참여-국민신고-공직비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면담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면담 참석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면담 심사관 (서명 또는 인)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지식재산처훈령 제7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제4조(문서의 시행명의)
제5조(심사사무의 감독 및 보고)
제6조(적용범위)
제7조(심사의 순위)
제8조(심사의 보류 또는 연기 등)
제9조(심사관 합동회의)

제2장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분류·번역 및 심사관 지정 등

제1절 분류 및 번역

제10조(디자인 분류의 절차)
제11조(디자인 분류 및 번역의 외부용역)
제12조(디자인 분류 및 번역의 처리기간)

제2절 심사관 지정

제13조(심사관 지정)
제14조(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제15조(심사관 변경)
제16조(심사관의 제척 등)

제3장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절차

제1절 방식심사 등

제17조(서류방식의 심사)
제18조(절차의 무효처분)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절차

제19조(심사처리 기한)
제20조(거절통지)
제21조(하자 있는 거절에 대한 처리)
제22조(심사 관련 지정기간)
제23조(보정각하)
제24조(명의변경 통지에 대한 처리)
제25조(포기 또는 감축 통지에 대한 처리)
제26조(분할출원 및 출원의 변경 등에 대한 처리)
제27조(경정통지에 대한 처리)
제28조(등록결정)
제29조(거절결정)
제30조(심사점검표 작성)

제4장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제31조(심사관합의체 지정 등)
제32조(이의신청 심사관련 지정기간 등)
제33조(이의결정서의 기재사항)
제34조(이의신청서의 각하)
제35조(이의신청의 결정각하)
제36조(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 등)
제37조(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제38조(이의결정)
제39조(이의신청의 취하)
제40조(이의신청 심사절차의 중지)

제5장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의 취소환송 및 재심사

제41조(취소환송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등의 심사)
제42조(재심사가 청구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제6장 기 타

제1절 우선심사

제43조(서류의 이송)
제44조(방식심사)
제45조(우선심사신청의 처리기한)
제46조(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제47조(의견문의)
제48조(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제49조(우선심사심의협의회 상정)
제50조(우선심사심의협의회의 구성)
제51조(우선심사결정의 통지)
제52조(우선심사결정 후의 심사착수 기한)
제53조(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

제2절 면 담

제54조(심사관 면담)

제3절 외부의견 문의

제55조(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제56조(심사자문위원 선정기준)
제57조(심사자문위원 추천서류)
제58조(심사자문 의뢰)
제59조(심사자문의 대상)
제60조(심사자문위원에 대한 심사자료 제공)
제61조(심사자문위원의 의견제출 기한)
제62조(심사자문위원 의견서의 보존)
제63조(심사자문수당)

제4절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제64조(심사관의 등록무효심판 청구)

제5절 시장조사 등

제65조(시장조사)
제66조(통계관리 등)
제67조(견본의 처리)
제68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제6절 서류의 발송·반송서류의 처리

제69조(서류의 발송)
제70조(반송서류의 처리)
제71조(수취인이 복수인 경우 반송서류의 처리)
제72조(반송서류의 공시송달)
제73조(재검토기한)

부 칙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 정 2014. 6. 9. 특허청훈령 제 766호
일부개정 2016. 5. 1. 특허청훈령 제 843호
일부개정 2018. 12. 18. 특허청훈령 제 927호
일부개정 2023. 4. 25. 특허청훈령 제1110호
일부개정 2023. 12. 21. 특허청훈령 제1149호
일부개정 2024. 02. 15. 특허청훈령 제1154호
일부개정 2025. 10. 30. 지식재산처훈령 제2호
일부개정 2025. 11. 1. 지식재산처훈령 제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헤이그협정"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통규칙"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공통규칙」을 말한다.
3. "시행세칙"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을 말한다.
4. "국제출원"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하여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제출되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을 말한다.
5. "국제등록"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국제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말한다.
6.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7.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함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을 말한다.
8.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심사하여 등록된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말한다.

9. "국제사무국"이라 함은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국제사무국을 말한다.
10. "심사원"이라 함은 심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11. "디자인전문기관"이라 함은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을 말한다.
12. "포기(Renunciation)"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산업디자인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축(Limitation)"이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 중 하나 또는 일부로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14. "경정(Correction)"이라 함은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부의 내용상 오류를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명의변경(Change in ownership)"이라 함은 계약, 상속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제등록의 권리자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16. "거절통지(Notification of refusal)"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이 지정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해당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없는 이유를 국제사무국을 통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17.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이 지정체약당사자 영역에서 해당 디자인이 보호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국제사무국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18. "무효통지서(Notice of invalidation)"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이 지정체약당사자 영역에서 해당 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국제사무국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19.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된 모든 자료를 일반공중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검색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업무처리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정보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받은 문서 또는 자료에서 오류를 발견한 자는 국제출원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산에 의한 세부업무처리는 「특허넷시스템 사용자 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문서의 시행명의)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문서는 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절차에 관한 문서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시행한다.

②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문서는 심사관합의체의 공동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이의신청서의 각하는 심사장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좌심사에 관한 사항은 지도심사관 명의로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심사관의 공동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사무의 감독 및 보고)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심사과장(디자인심사정책과장 및 심사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사파트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심사의 일관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관을 지휘·감독한다.

② 담당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 및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의결정
2. 취소환송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통지
3.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3회 이후의 거절통지

③ 담당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또는 우선심사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거절결정. 다만, 심사관의 거절통지에 대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의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3.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통지 이후의 등록결정
4.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5.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과 관련된 각종 변경사항의 통지지연 또는 전산시스템에의 등재지연 등으로 인한 처분의 취소

④ 담당심사관은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뢰,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안내,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심사참고자료제출요청 등에 관한 사항 및 상표·디자인 심사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사파트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석심사관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서, 우선심사보완통지서, 거절통지서(협의통지서 포함),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 통지서, 거절결정서(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
2. 책임심사관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서, 우선심사보완통지서, 거절통지서(협의통지서 포함),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 통지서
3. 선임심사관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서 및 우선심사보완통지서

⑤ 담당심사관이 행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6조제3항에 따른 담당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심사파트장을 거쳐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등록결정
2. 거절결정

제6조(적용범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무의 처리는 다른 법령(헤이그협정, 공통규칙 및 시행세칙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심사의 순위)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국제공개일의 순위에 따른다.

②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의신청 순위에 따른다.

제8조(심사의 보류 또는 연기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하거나 처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거절통지를 한 후에 심사를 보류하거나 처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선출원과 경합되는 경우

2.「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외부 의견문의를 한 경우
3. 선출원이 심판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4. 감축, 포기, 경정, 명의변경 등 국제등록의 변경사항을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받기 전에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인지한 경우
5. 해당 출원과 관련된 서류 등이 무효처분된 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단, 무효처분이 취소되어도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6. 기본디자인이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에 계류중이며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출원 중인 관련디자인과 후출원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기타 심사의 보류 또는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의 보류 또는 처리기간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실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보류 또는 연기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심사관 합동회의) ①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심사와 관련된 법규의 운용과 심사처리의 판단이 어려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심사관으로 구성하는 심사관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동회의는 디자인심사정책과 담당서기관(사무관)을 간사로 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담당심사관 및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에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심사관 중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2장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분류 · 번역 및 심사관 지정 등

제1절 분류 및 번역

제10조(디자인 분류의 절차) ①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방식심사가 완료되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이송된 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출원디자인의 물품에 대한 가분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분류담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행한 가분류가 디자인분류표에 따라 부여되었는지 확인하게 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여 심사관에게 이송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의 전문기관에서 가분류한 출원이 적합하게 분류된 것인지 심사 착수시에 확정하고, 적합하게 분류되지 않아 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심사정책과에 분류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분류정정 신청이 없이 심사가 착수되면 확정분류된 것으로 본다).

④ 분류담당자는 심사관으로부터 분류정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심사처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디자인 분류 및 번역의 외부용역) ①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디자인보호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디자인전문기관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에 대하여 국내분류에 따른 물품분류코드의 부여를 의뢰하거나 물품명칭 및 디자인의 설명 등에 대하여 한글 번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코드의 부여나 번역을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분류나 자동번역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분류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코드의 부여나 번역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정확한 물품분류코드나 번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2조(디자인 분류 및 번역의 처리기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물품분류코드의 부여 및 번역은 분류담당자 또는 디자인전문기관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해당 전산시스템에 이송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심사관 지정

제13조(심사관 지정) ① 국장은 국제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심사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장은 상표디자인심사국 내에서 담당심사관의 소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에 착수한 그 담당심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진행하여 종결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장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된 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국제등록번호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심사관합의체를 포함한다)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임심사관(심사과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 심사파트장 또는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자 중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타심사관을 보좌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관 발령을 받지 않고 심사할 때도 동일하다.

② 신임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3개월간 경력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신임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의2에 따른 심사관보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좌심사기간, 제2항에 따른 공동심사기간에 심사관보 경력을 반영할 수 있다.

④ 국장은 국제디자인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4급 또는 5급으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 상표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특허심판원에서 심판관·소송수행관 등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좌심사 또는 공동심사 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한다.

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경력이 없는 신임 심사과장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타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⑥ 신임심사관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좌심사 또는 공동심사 기간에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에 의한 재택근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⑦ 6급 신임심사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좌심사와 공동심사 기간을 각 6개월로 한다.

제15조(심사관 변경) ① 국장은 심사관 인사이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국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심사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관의 제척 등) ① 국장은 담당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1. 디자인보호법 제76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심사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용직전 2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기업, 연구소, 특허사무소, 대학 등)의 출원을 심사하는 경우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가 출원인이거나 대리인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
2. 동일 상표・디자인팀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한 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대리하는 출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심사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을 심사할 수 있는 다른 심사관을 지정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단, 심사관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디자인심사정책과장으로 하여금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절차

제1절 방식심사 등

제17조(서류방식의 심사) ① 심사관은 실체 심사 진행 중에 접수된 접수문서(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접수된 문서는 제외한다)가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되었거나, 수수료 등이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방식심사결과 수수료 등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된 사실을 납부자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접수된 문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서면문서와 전자문서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정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국제사무국에 문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절차의 무효처분) ① 심사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에 대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한 보정명령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서 또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나 보정명령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절차

제19조(심사처리 기한) ①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국제공개일부터 심사등록출원은 1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6월 내에 최초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관은 거절통지를 한 후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심사등록출원은 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1개월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관은 거절통지를 한 후 의견서 또는 보정서 등이 제출된 경우, 그 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심사등록출원은 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1개월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지정기간단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심사등록출원은 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1월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심사관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보류 또는 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심사등록출원은 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1월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절차 진행 중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분할이전의 통지를 받은 경우,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공개일부터 심사등록출원은 1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6월 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통지에서 통지하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해서만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거절통지) ①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견된 거절이유를 모두 기재하여 하나의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심사하고 발견된 거절이유에 대해서만 거절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여러 개의 디자인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일련번호와 거절이유 등을 모두 기술하여 하나의 통지서로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 한 후 추가적으로 거절통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로 발견된 거절이유와 이전 거절이유에 대한 해소여부를 함께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거절통지서에는 공통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 통지하는 관청
2. 국제등록번호
3. 거절이유와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
4. 거절의 기초가 된 선행디자인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
5. 거절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
6. 의견서 또는 보정서의 제출기한
7.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시 대리인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
8.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기관
9. 거절통지일자 등

⑤ 심사관은 거절통지서(Notification of provisional refusal)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도 거절통지를 한다.

제21조(하자 있는 거절에 대한 처리) ① 심사관은 거절통지에 대해 국제사무국이 공통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거절로 간주되지 않는 통지임을 통보한 경우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즉시 그 하자가 치유된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서 등의 제출기간은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거절통지에 대해 국제사무국이 공통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하자 있는 통지임을 통보한 경우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즉시 그 하자가 치유된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심사 관련 지정기간) ① 「디자인보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서 등의 제출기간과 관련하여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은 2월 이내로 한다.

② 심사관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매회 1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희망기간 만료일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이 2회를 일괄하여 신청된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기간연장신청서가 지정 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제출되고, 연장신청된

기간이 매회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된 때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기간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부터 신청된 연장기간이 1월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연장기간을 1월로 본다.

⑥ 연장된 기간은 지정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다음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

⑦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⑧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지정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제출일에 지정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23조(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제출된 포기, 감축통지 등은 제외한다)이 요지변경된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는 날부터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 청구를 한 때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보정서가 2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요지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요지변경된 보정서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정각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심사관이 보정각하결정을 한 후 출원인의 보정서나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제기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명의변경 통지에 대한 처리) ① 심사관은 등록결정 전에 통지된 명의변경으로 공유인 국제등록의 일부지분이 이전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또는 기본디자인이 관련디자인과 함께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법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또는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이 함께 이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아니한다는 취지로 명의변경의 효력이 없다는 선언서(Declaration that a change in ownership has no effect)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② 심사관은 등록결정 전에 통지된 명의변경으로 공유인 국제등록의 일부 지분이 이전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모든 절차를 승계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의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명의변경의 무효이유
2. 이에 상응하는 법규정
3. 그 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④ 심사관은 명의변경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후에 구 명의인(양도인)의 대리인에게 발송하였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문서는 신 명의인(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다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심사관은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었는지의 여부를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은 후에 명의변경 통지를 받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한다.

1. 명의변경의 효력일이 거절결정일 이전인 경우 다시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기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국제사무국에 대하여는 거절통지 이후의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provisional refusal, 이하 같다)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해서는 등록결정서(Decision of grant of protection, 이하 같다)를 통지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명의변경을 승인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2. 명의변경의 효력일이 거절결정일 이후인 경우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이 경우 명의변경의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하지 아니한다.

⑦ 심사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효력일이 거절결정일 이전인 명의변경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기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신 명의인(양수인)에게 거절결정을 통지할 수 있다.

제25조(포기 또는 감축 통지에 대한 처리) ① 심사관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포기 또는 감축 통지를 받은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83조 제1항에 따

라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그 취하된 범위 내에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종료한다.

② 심사관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감축통지를 받은 경우 감축 후 남은 디자인에 대해서만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③ 심사관은 감축통지와 보정서의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감축통지에 의하여 취하간주된 디자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국제등록의 포기 또는 감축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었는지를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심사관은 거절결정이 있은 후에 감축통지를 받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한다.

1. 감축의 효력일이 거절결정일 이전인 경우 다시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기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국제사무국에 대하여는 거절통지 이후의 보호부여기술서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해서는 등록결정서(Decision of grant of protection, 이하 같다)를 통지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감축을 승인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2. 감축의 효력일이 거절결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감축을 승인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제26조(분할출원 및 출원의 변경 등에 대한 처리) ① 「디자인보호법」 제50조 및 제187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분할출원(국제사무국의 분할이전출원은 제외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 적법하게 된 때에는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출원은 국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관이 처리하며, 분할출원의 심사관은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관에게 분할출원된 사실을 전자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국제등록의 분할통지서(Notification of division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이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지하는 관청
2. 관련된 국제등록번호
3. 분할의 대상이 된 디자인의 일련번호
4. 분할출원의 국내 출원번호

④ 심사관은 심사 중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 분할출원,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신규성의제주장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분할출원, 신규성의제)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분할출원, 신규성의제)불인정 통지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⑥ 「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2항 및 제186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변경은 기본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변경하거나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말한다.

제27조(경정통지에 대한 처리) ①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경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보호법」제203조에 따라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경정이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9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은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달라진 경정
2. 「디자인보호법」제48조에 따른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정
3. 국제등록일 또는 우선일에 대한 경정

③ 심사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정이 통지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시 심사한 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통지일로부터 심사등록출원은 12개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6개월 내에 경정에 따른 거절통지서(Notification of provisional refusal following a correction)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며,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해소되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에 따른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correction)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경정에 따른 등록결정서(Decision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correction)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통지서에는 기존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정이 통지된 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다시 심사할 수 있다. 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였거나 추후 새로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며,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등록여부결정을 유지한다.

제28조(등록결정)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국제공개일부터 심사등록출원은 1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6월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거절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하여 거절을 통지한 이후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에 대하여는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이하 같다)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마다 등록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대하여는 거절통지 이후의 보호부여기술서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마다 등록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등록여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결정서 및 보호부여기술서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타 디자인과의 유사여부에 관한 심사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디자인등록공보에도 이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다.

⑤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 신규성의제주장, 분할출원이 인정되거나 출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록결정서에 우선권주장일자, 신규성의제주장, 또는 출원소급일자 등의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은 지식재산처 및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선출원 또는 공지 디자인이 있는지를 검색한 후에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9조(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제20조에 따라 거절통지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에 대하여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디자인마다 거절결정서(Decision of refusal, 이하 같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서에는 공통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 통지하는 관청
2. 국제등록번호
3. 거절이유와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
4. 거절의 기초가 된 선행디자인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
5. 거절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
6. 재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불복기한
7. 재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대리인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
8. 재심사 및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기관
9. 거절결정일자 등

제30조(심사점검표 작성) 심사관은 실체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종 심사관련 검색결과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의 의견서 또는 보정서의 내용요약, 심사관의 판단·의견 등을 심사점검표에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파트장, 심사팀장 및 국장에게 보고시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제31조(심사관합의체 지정 등) ① 국장은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하 이 장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과장과 담당심사관을 포함하는 3인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이하 이 장에서 "심사관합의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중 1인을 이의결정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며, 심사과장을 심사장으로 지정한다. 다만, 담당심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타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심사장은 해당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심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관합의체가 지정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이의신청번호 및 심사관합의체 각 심사관명을 이의신청인 및 국제등록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통지서에 이의신청번호 및 심사관합의체 각 심사관명을 일괄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심사장은 심사관합의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국제등록디자인권자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과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자의 답변서 또는 이의신청인의 변박서의 부본송달 통지서에 변경된 심사관합의체 각 심사관명을 함께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심사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와 동시에 이의신청일, 이의신청번호, 국제등록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예고등록의뢰서를 등록과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이의신청 심사관련 지정기간 등) ①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심사와 관련하여 이의신청담당심사관 또는 심사장이 지정하는 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② 심사장이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항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1월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에서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이의결정서의 기재사항)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의결정기관 및 이의결정 서면의 표시
2. 이의신청번호
3. 국제등록번호
4. 디자인의 일련번호
5. 이의신청인 및 그 대리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
6. 국제등록디자인권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
7. 이의결정의 주문
8. 이의결정의 이유 및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
9. 이의결정 연월일
10. 심사관합의체 심사관 및 담당심사관 기명날인

제34조(이의신청서의 각하) 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서가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또는 같은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배되거나 같은법 제85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인이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국제등록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심사장은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국제등록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의 결정각하) ①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이후 3월이 경과된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있은 후 이의신청인이 승계한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한 이의신청, 사망 또는 합병으로 이의신청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의신청 등 보정이 불가능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심사관합의체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 등록이 무효되거나 취소되어 디자인권이 상실된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 등) 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때에는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국제등록디자인권자(국제등록디자인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취지를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기타 등록을 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①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심사 결과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심사장은 국제등록디자인권자 및 이의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8조(이의결정) ① 이의결정은 국제등록디자인권자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의 변박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자의 재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박서 또는 재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결정할 수 있으며,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를 한 경우에도 그 예정시기가 지나면 이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이의결정심사관은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이 유사한 내용의 재답변서와 이의신청 의견서를 계속 제출하여 이의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서를 통지하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으로 하여금 주장 내용을 모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34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각하, 제35조에 따

른 이의신청의 결정각하 및 제39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취하를 함에 있어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중에 등록취소의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 명의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사장은 이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서를 우편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국제등록디자인권자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도 이의결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이의신청의 취하) 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의 취하서를 수리한 때에 이의신청서류에 취하사실에 대한 기재와 함께 날인하고 국제등록디자인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 경우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40조(이의신청 심사절차의 중지) 이의신청심사의 중지에 관하여 제8조를 준용한다.

제5장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의 취소환송 및 재심사

제41조(취소환송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등의 심사) ①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거절결정이 취소환송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결정이 취소환송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심판에 관한 사항이 전산입력된 후 1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1월 이내에 심사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당초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한다. 이 경우 당초 거절이유가 해소되어 등록결정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거절통지 이후의 보호부여기술서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등록결정서를 통지한다.

③ 심사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당초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하고 일반심사절차에 따른다.

④ 심사관합의체는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당초 이의결정에 인용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

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각결정을 하고, 당초 이의결정에 인용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당초 이의신청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취소환송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디자인심사국의 심사관합동회의의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한다.

제42조(재심사가 청구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①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 제64조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전산입력된 후 1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1월 이내에 심사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재심사가 청구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당초 거절이유가 해소되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결정을 한다. 이 경우 당초 거절이유가 해소되어 등록결정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거절통지 이후의 보호부여기술서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등록결정서를 통지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 당초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하고 일반심사절차에 따른다.

④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후 재심사가 청구된 심사에 관하여 제41조를 준용한다.

⑤ 재심사가 청구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디자인심사국의 심사관합동회의의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한다.

제6장 기 타

제1절 우선심사

제43조(서류의 이송) 출원과장은 우선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방식심사를 완료한 후 해당 심사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우선심사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심사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4조(방식심사) ① 제43조에 따라 서류를 이송받은 심사관은 그 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그 서류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위배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보정을 명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수수료가 과오납되었을 때에는 납부자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한다. 이 경우에는 관련서류(우선심사신청료 납부영수증 원본을 포함한다) 일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5조(우선심사신청의 처리기한) ① 심사관은 제10조부터 제12조에 따른 물품의 분류일과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거나 송부된 경우에는 보정기간 등의 만료일 또는 해당서류가 심사관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15일을 기산한다.

1. 제44조에 따른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되는 보정서
2. 제46조에 따른 보완지시에 따라 제출되는 보완서
3. 제47조에 따른 의견문의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서
4. 제49조에 따른 우선심사심의협의회로부터 통보되는 결정서
5. 〈삭제〉

제46조(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제47조(의견문의) 심사관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제59조제2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 등에 의견문의를 할 수 있다.

제48조(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각하하고, 우선심사신청인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우선심사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정상적인 심사착수 예정시기

가 우선심사신청 관련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월 이내인 경우

3.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정서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에 의하여도 보정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4. 제46조에 따른 보완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완서에 의하여도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5. 복수디자인출원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하나의 신청서에 모든 디자인에 대하여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9조(우선심사심의협의회 상정) 심사관은 우선심사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안건을 우선심사심의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50조(우선심사심의협의회의 구성) ① 우선심사심의협의회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디자인심사정책과장, 그리고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속하는 심사과의 과장 및 해당 심사관과 2인 이내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이 된다.

② 우선심사심의협의회는 우선심사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을 참작하여 우선심사 여부를 심의한다.

제51조(우선심사결정의 통지) 심사관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여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우선심사신청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우선심사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우선심사결정 후의 심사착수 기한) ①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 이내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우선심사 대상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중간서류는 심사관이 이송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중간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
2. 제출된 중간서류를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심사관이 이송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할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이 아직 경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53조(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심사관은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종처리결과(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포기 등)를 우선심사신청인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

우에 한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절 면 담

제54조(심사관 면담) ① 심사관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국제등록디자인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등"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대면 또는 화상으로 면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이의신청이 있는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과 관련하여 면담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을 동시에 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거절통지서상의 거절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2. 거절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3.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심사에서 주장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4. 기타 신속·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등에게 기일을 지정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등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등이 면담신청 내용을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면담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면담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심사과장은 면담에 관한 면담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면담요청을 받은 자가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면담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거절통지서 또는 이의결정서 등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절 외부의견 문의

제55조(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을 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해당연도 말까지로 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6조(심사자문위원 선정기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자 중에서 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의 분야별로 안배하여 위촉한다.

1. 업계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2.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투자기관 : 부장, 실장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인자
3. 학계 : 전임강사급 이상인 자
4. 공무원 : 5급 이상인 자
5. 기타 : 변리사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자

제57조(심사자문위원 추천서류) ① 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한다.

1. 이력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② 재위촉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한다.

제58조(심사자문 의뢰) 담당심사관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견의뢰요청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 및 관련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견제출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심사의견제출서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

제59조(심사자문의 대상)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 당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기타 디자인 관련 정책사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내용파악 및 정책결정을 위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 및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특별히 의견문의가 필요한 경우

제60조(심사자문위원에 대한 심사자료 제공) 심사관은 위원의 심사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가 소장하고 있는 해당분야의 자료, 심사기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1조(심사자문위원의 의견제출 기한) ① 위원의 심사의견서는 의견문의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위원의 심사의견제출서가 해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2조(심사자문위원 의견서의 보존) 심사자문위원의 의견서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관련 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제63조(심사자문수당) 위원의 수당은 심사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 예산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제64조(심사관의 등록무효심판 청구) ① 심사관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무효심판 청구여부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이를 무효심판청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무효심판청구심의위원회는 심사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심사관과 국장이 지명하는 심사관 1인이 위원이 된다.

④ 심사관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판청구의 각하 또는 취하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시장조사 등

제65조(시장조사) 디자인 시장조사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1. 출원물품의 다량 거래지역에서의 시장조사
2. 출원 전 공지여부
3. 외국상품 여부
4. 자기제품임을 입증하는 입증서를 제출 시 입증서의 전부(입증자의 사업

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증인 증명 첨부 시는 예외로 한다)

5. 카탈로그 등의 유인물 발행여부

6. 기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66조(통계관리 등) ① 심사과장은 매월 심사관별 및 디자인물품류별로 심사착수시기, 심사종결처리내용, 이의신청 및 취소환송, 재심사청구 등의 접수 및 처리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상표심사정책과장 및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표심사정책과의 통계담당심사원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통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견본의 처리) ① 심사관은 국제출원과장으로부터 인수받은 견본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가 끝난 것에 대해서는 그 제출인에게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찾아갈 것을 통지하는 서면을 송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견본을 국제출원과장에게 인계한다.

제68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여부결정을 통지하는 때에 심사결과 및 제공된 정보의 활용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절 서류의 발송·반송서류의 처리

제69조(서류의 발송) ① 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1. 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 대한 온라인 발송

2.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문서송달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에 대한 발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 대한 우편발송

② 「디자인보호법」 제211조제2항에 따라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외자에게 통지하는 거절결정서는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되지 아니한 통지서 또는 기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발송되는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그 시행문서를 운영지원과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송된 통지서가 7일 동안 수취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시

행문서를 출력하여 운영지원과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통지서 등의 발송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별도로 국내의 송달장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제70조(반송서류의 처리) ① 발송한 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반송관리담당 심사원은 반송사유 및 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반송사항 입력 후 반송관리담당 심사원은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취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변동여부를 조사하여 변경된 주소로 반송된 통지서 등을 재발송하고 그 주소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발송한 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한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그 서류 등을 이미 발송하여 반송된 경우에는 다시 발송하지 아니한다.

제71조(수취인이 복수인 경우 반송서류의 처리) 다수의 수취인 중 1수취인에 대하여 제70조제2항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재발송한 통지서 등이 반송되는 경우 송달을 하지 않은 수취인에 대하여 제69조에 따라 통지서 등을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72조(반송서류의 공시송달) ① 반송관리담당 심사원은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재발송에도 불구하고 통지서 등이 다시 반송되는 경우에는 정보관리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디자인보호법」 제21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7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7호, 2025.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좌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심사관보, 보좌심사, 공동심사 및 지도심사 업무를 수행 중인 자에게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촉장

위 촉 장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귀하를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20 년도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 관한 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지 식 재 산 처 장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귀 위촉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있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업무수행상 지득한 내용은 위촉기간내는 물론 해촉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지 식 재 산 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의견의뢰요청서

심 사 의 견 의 뢰 요 청 서

분류번호 :　　20 . . .

수　　신 :

제　　목 : 의견문의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아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출원내용

가. 국제등록번호 :

나. 디자인 대상 물품 도면

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물품류구분 및 해당 물품명칭 :

2. 의견서 작성요령(붙임 참조)

붙　　임 :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지　식　재　산　처　장

〔별지 제4호 서식〕 심사의견제출서

심 사 의 견 제 출 서

수 신 : 지식재산처장

참 조 :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제 목 : 의견서 제출

다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20 . . . 의견 문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국제등록번호 제 호 (국제등록일 20 . . .)

서 류

붙 임 : 의견서. 끝.

20 . . .

위원 (인)

〔별지 제5호 서식〕 출원심사처리(보류/연기)통지서

출원심사처리 보류 연기 통지서

수신	출원인	성명		주소	
	대리인	성명		주소	
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제 호			
디자인을 표현할 물품명칭 및 물품류					

위 출원서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처리를 연기 또는 보류키로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아 래

1. 연장이유 : 1) 타출원과 경합
   2) 외부 의견문의
   3) 심판이나 소송에 의한 보류
   4) 기타 (사유)

2. 처리예정시기 :

20 . . .

지 식 재 산 처 장

〔별지 제6호 서식〕 면담요청서

면 담 요 청 서

수 신 인	출원표시		출원과의 관계	
	주소 및 성명			
심 사 관	소속 및 직급			
	성 명			

귀하께서 출원 대리한 국제등록번호 제 호의 이의신청

다음 사항에 관하여 면담이 필요하오니 20 . . . 까지 ○ ○ 심사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면담할 사항

20 . . .

심 사 관 ○ ○ ○ (인)

〔별지 제7호 서식〕 면담신청서

면 담 신 청 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연 락 처		
심 사 관	소 속				
	직급 및 성명				
대 상	출원 권리분야		출원번호		면 담 신청일	

상기 국제등록번호 제 호의 다음 사항에 관하여 담당심사관과의 면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 ○ (인)

〔별지 제8호 서식〕 면담대장

면 담 대 장

일련번호	접 수			면 담 내 용			면담신청인	
	년월일	사건표시 (국제등록번호)	심사관	면담 (예정)일	면담 방법	면담사항 요약	사건과 의관계	주소·성명 ·연락처

〔별지 제9호 서식〕 면담기록서

면 담 기 록 서

사건의 표시		국제등록번호 제 호			
면담참석자	당사자	주소 및 성명		연락처	
	심사관	소속 및 직급		성 명	
면담일시			면담장소		

20 . . .

면담당사자 ○ ○ ○ (인)

면담심사관 ○ ○ ○ (인)

3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제7조(우선심사 신청의 특례)
제8조(재검토기한)

부 칙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 정 2009.12.14. 특허청고시 제2009-41호
일부개정 2011. 7.15. 특허청고시 제2011-13호
일부개정 2013. 6.25. 특허청고시 제2013-13호
일부개정 2013.10.31. 특허청고시 제2013-26호
일부개정 2014. 6.25. 특허청고시 제2014-17호
일부개정 2015. 1.26. 특허청고시 제2015- 2호
일부개정 2016. 8.29. 특허청고시 제2016-23호
일부개정 2017.12.28. 특허청고시 제2017-34호
일부개정 2021. 3.31. 특허청고시 제2021- 7호
일부개정 2023.12.21. 특허청고시 제2023-24호
일부개정 2024.11.25. 특허청고시 제2024-22호
일부개정 2025.10.30. 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란 디자인등록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2. "제3자"란 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디자인에 관한 실시의 허락을 얻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호라목에 따른 출원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출원 시 또는 출원 중에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으로 한다.

1.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방산물자에 관한 출원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다.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출원을 포함한다)

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사.「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또는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출원

아.「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출원

자. 국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3)「에너지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5)「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6)「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7)「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8)「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

(9)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차. 삭제

카.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해당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지식재산관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만 해당한다)

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중인 출원

파. 삭제

하.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지식재산관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거. 삭제

너.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출원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1통(별표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

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서를 보완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삭제

제7조(우선심사 신청의 특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5-4호, 2025. 10.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제5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신 청 이 유 (관련조문)	증 빙 서 류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한 출원 (제4조제1호)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등)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 (제4조제2호가목)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출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녹색기술 등과직접관련된출원 (제4조제2호나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기술개발사업 선정공고 등) 2. 금융기관으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대출실적서 등) 3. 환경마크인증서, 탄소성적표지인증서,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발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우수재활용제품인증서(발행기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5. 그 밖에 국가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제4조제2호다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수출실적 입증서류 2.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3. 디자인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수출계약 입증서류 5.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수출 촉진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라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벤처기업의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출원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출원 (제4조제2호마목, 바목, 사목)	다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디자인과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사업자등록증 등) 2. 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아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자목, 차목))	국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결과물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제4조제2호카목)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 지식재산관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 중인 출원 (제4조제2호타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실시품의 실물사진,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2.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3. 그 밖에 실시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출원인이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제4조제2호타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시제품의 실물사진, 견본,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2.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3.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4. 출원된 디자인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실시 준비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삭제	삭제
외국 지식재산관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제4조제2호하목)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지식재산관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출원 (제4조제2호너목)	제4조제2호너목에 따른 출원에 해당함을 입증 또는 설명하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별지 제2호서식〕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서지사항〕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번호〕
〔출원일〕

〔우선심사 신청이유〕

〔증빙자료〕

※ 기재요령

1. 〔우선심사 신청이유〕란에는 출원디자인이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 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호 및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호 제○○목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호(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디자인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실시한 상황(실시주체, 실시기간, 실시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 본 디자인은 YYYY년MM월DD일 출원공개 되었습니다. 이 후 출원인이 아닌 자(회사명 : △△△, 대표자 : □□□)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YYYY년MM월DD일부터 상기 ○○○디자인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4제1호 및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우선심사신청의 대상이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2. 〔증빙자료〕란에는 별표(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신청이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제2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
제3조(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서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
제4조(재검토 기한)

부 칙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제 정 2018. 7. 20. 특허청고시 제2018-15호
일부개정 2018. 12. 1. 특허청고시 제2018-27호
일부개정 2019. 12. 16. 특허청고시 제2019-21호
일부개정 2020. 4. 1. 특허청고시 제2020- 8호
일부개정 2020. 8. 27. 특허청고시 제2020-27호
일부개정 2023. 7. 1. 특허청고시 제2023- 9호
일부개정 2025. 10. 30. 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세계지식재산기구(「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제1조에 따라 설립된 세계지식재산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하기로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합의한 국가(지식재산처장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국가
6. 대만

제3조(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국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하여 우선권 증

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하기로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합의한 국가(지식재산처장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5-4호, 2025. 10.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부정경쟁방지법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4(실태조사)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제3조(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제3조의3(오인·혼동방지청구)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제9조(의견청취)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9조의5(과징금)
제9조의6(청문)
제9조의7(비밀유지 등)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제13조(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제14조(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제4장 보 칙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포상금 지급)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제17조의2 삭제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벌칙)
제18조의2(미수)
제18조의3(예비·음모)
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18조의5(몰수)
제19조(양벌규정)
제19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0조(과태료)

부 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 정 1961.12.30 법률 제 911호
전부개정 1986.12.31 법률 제 3897호
1991.12.31 법률 제 4478호
1997.12.13 법률 제 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 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8.12.31 법률 제 5621호
1999. 2. 5 법률 제 5814호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01. 2. 3 법률 제 6421호
2004. 1.20 법률 제 7095호
2004.12.31 법률 제 7289호
(디자인보호법)
2007.12.21 법률 제 8767호
2008.12.26 법률 제 9225호
2009. 3.25 법률 제 9537호
2009.12.30 법률 제 9895호
2011. 6.30 법률 제10810호
2011.12. 2 법률 제11112호
2013. 7.30 법률 제11963호
2015. 1.28 법률 제13081호
일부개정 2016. 1. 27 법률 제13844호
타법개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
(상표법)
일부개정 2017. 1. 17 법률 제14530호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15580호
일부개정 2019. 1. 8 법률 제16204호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29호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27호
일부개정 2021. 12. 7 법률 제18548호
일부개정 2023. 3. 28 법률 제19289호
일부개정 2025. 5. 27 법률 제20963호
타법개정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

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

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이하 "부정경쟁방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전의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분석평가
3.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
4.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분쟁현황 및 대응
5.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6.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사항
7.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8.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0. 10. 20.〕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5로 이동〈2020. 10. 20.〉〕

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0. 10. 20.〕

제2조의4(실태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교육·홍보 등 기반구축,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2025. 10. 1.〉

〔본조신설 2009. 3. 25.〕

〔제2조의2에서 이동 〈2020. 10. 20.〉〕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07. 12. 21.〉

제3조(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國章),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하 이 조에서 "지리적 표시"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2.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종류", "유형", "양식" 또는 "모조품"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②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본조신설 2011. 6. 30.〕

제3조의3(오인·혼동방지청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2. 제2조제1호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2023. 3. 28.〕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6. 30.〉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6. 30.〉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 3. 28.〉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6. 3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2016. 1. 27., 2017. 1. 17., 2018. 4. 17., 2020. 10. 20., 2021.

12. 7., 2023. 3. 28.,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6. 30.,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신설 2020. 10. 20., 2025. 10. 1.〉

④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신설 2020. 10. 20.,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1. 6. 30., 2020. 10. 20.〉

⑥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①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20.〕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4. 2. 20.,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신설 2020. 10. 20., 2024. 2. 20.,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10. 20., 2024. 2. 20.〉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 또는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 6. 30., 2017. 1. 17., 2018. 4. 17., 2020. 10. 20., 2021. 12. 7., 2024. 2. 20.〉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 2. 20., 2025. 10. 1.〉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0. 10. 20.〕

제9조(의견청취)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 6. 30., 2020. 10. 20., 2024. 2. 20., 2025. 10. 1.〉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개정 2007. 12. 21.〉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

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5. 1. 28.〉

〔본조신설 2013. 7. 30.〕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5. 10. 1.〉

②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에 대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전자지문의 추출·등록 및 보관
2.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
3.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
4.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관리 등

⑤ 원본증명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이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중단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에 전자지문의 등록에 관한 기록 등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원본증명기관이 인수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이 제4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⑥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9조의5(과징금)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원본증명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9조의6(청문) 지식재산처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3. 7. 30.〕

제9조의7(비밀유지 등) ①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2. 20.〕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3. 3. 28.〕

제14조(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3. 3. 28.〕

제4장 보칙 〈개정 2007. 12. 21.〉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2020. 12. 22.〉

1. 그 물건의 양도수량(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개정 2011. 6. 30.〉

③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6. 30.〉

④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11. 6. 30.〉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1. 6. 30.〉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 8., 2020. 10. 20., 2024. 2. 20.〉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8.〉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전문개정 2007. 12. 21.〕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6. 30.〉

〔전문개정 2007. 12. 21.〕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20.〉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4조의7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

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받은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제4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
2.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

②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하는 경우 해당 조사기록에 관한 당사자(이하 "조사기록당사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그 밖에 법원이 제5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하였을 때에는 조사기록당사자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조사기록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록송부 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조사기록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특정한 조사기록당사자에게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복사 신청 사실 및 제4항에 따라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기록당사자가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⑥ 법원은 제5항 후단의 기간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을 다른 사람이 열람·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5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조사기록당사자가 같은 항 후단의 기간에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복사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2. 20.〕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4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개정 2011. 6. 30., 2013. 7. 30., 2021. 12. 7., 2024. 2. 20.〉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개정 2013. 7. 30., 2018. 4. 17., 2021. 12. 7., 2024. 2.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16조(포상금 지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25. 5. 27.,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5. 27.,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5. 27.〉

〔본조신설 2013. 7. 30.〕

〔제목개정 2025. 5. 27.〕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삭제 〈2011. 6. 30.〉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의5에 따른 연구·교육·홍보 등 기반구축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전문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9. 3. 25., 2020. 10. 20.,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나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09. 3. 25., 2011. 6. 30.,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09. 3. 25., 2011. 6. 30., 2020. 10. 20.〉

⑤ 지식재산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9. 3. 25., 2025. 10. 1.〉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제17조의2 삭제 〈2023. 3. 28.〉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 3. 25.〕

〔제17조의2에서 이동 〈2016. 1. 27.〉〕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

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9. 1. 8.〉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24. 2. 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3. 7. 30., 2017. 1. 17., 2018. 4. 17., 2021. 12. 7., 2024. 2. 20.〉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증명용 표지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3. 7. 30., 2024. 2. 20.〉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⑥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24. 2.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8조의3(예비·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전문개정 2007. 12. 21.〕

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18조의5(몰수) 제1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한다.

〔본조신설 2024. 2. 20.〕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2024. 2.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19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9조에 따른 행위자가 제18조제1항 또

는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본조신설 2024. 2. 20.〕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7. 30., 2024. 2. 20.〉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 6. 30., 2025. 10. 1.〉

③ 삭제〈2009. 12. 30.〉

④ 삭제〈2009. 12. 30.〉

⑤ 삭제〈2009. 12. 30.〉

〔전문개정 2007. 12. 21.〕

부 칙〈제21065호, 2025. 10. 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생략〉···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5〉까지 생략

〈57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3제1항·제2항, 제2조의4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조의5,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8조제1항·제2항·제5항, 제9조, 제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5제1항·제2항, 제9조

의6, 제1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20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법률 제20963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57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정당한 사유)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제2조(시정권고의 방법 등)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제3조의2(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제3조의5(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조의6(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인수)
제3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4조(업무의 위탁 등)
제4조의2(공동사무의 운영절차)
제5조(교육)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 정 1987. 7. 1 대통령령 제12203호
1992.12.14 대통령령 제13781호
1993.12.31 대통령령 제14062호
전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65호
2001. 6.27 대통령령 제17255호
2009. 8.18 대통령령 제21691호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1. 9.22 대통령령 제23153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1.28 대통령령 제25121호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타법개정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74호
타법개정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76호
타법개정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타법개정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일부개정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32호
일부개정 2023. 9. 27 대통령령 제33773호
타법개정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일부개정 2024. 8. 13 대통령령 제34830호
타법개정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18.〕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3)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9. 27.〉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삭제 〈2023. 9. 27.〉
4.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8. 18.〕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2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1.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기업의 인식도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2. 영업비밀 보유자의 현황 및 영업비밀 취득·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발생유형·피해구제 현황 등 분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식재산처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목적·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실태조사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사업무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1. 4. 20.〕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1. 4. 20.〉〕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① 지식재산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등"이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2025. 10. 1.〉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의 제출 요청

2.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청, 자문 및 진술 청취

②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사·검사의 목적, 일시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2025. 10. 1.〉

⑤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 4. 20.,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경쟁행위등의 조사 및 조사 중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4. 20., 2025. 10. 1.〉

〔전문개정 2018. 9. 18.〕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21. 4. 20.〉〕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①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의 현황·목록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 4. 20.,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이 종료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을 수거 또는 제출 당시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1. 4. 20., 2025. 10. 1.〉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8. 9. 18.〕

〔제1조의4에서 이동〈2021. 4. 20.〉〕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1.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정대리인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변호사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조사를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지식재산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첨부서류, 열람 또는 복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4. 8. 13.〕

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8. 9. 18., 2021. 4. 20., 2024. 8. 13.〉

1. 시정권고·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권고·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②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2., 2024. 8. 13.,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 8. 13., 2025. 10. 1.〉

〔전문개정 2009. 8. 18.〕

〔제목개정 2024. 8. 13.〕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①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3., 2025. 10. 1.〉

1. 위반행위를 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권고·시정명령의 이유 및 내용

②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1. 4. 20.〕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①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 9. 22., 2021. 4. 20., 2024. 8. 1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 4. 20., 2024. 8. 13.〉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1. 4. 20., 2024. 8. 13.〉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18.〕

제3조의2(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과 설비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30., 2025. 10. 1.〉

1. 전문인력: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설비의 운영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출 것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설비: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가. 원본증명업무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송신·수신에 관한 사항
   나.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체계에 관한 사항
   다. 화재 및 수해(水害) 등 재해 예방 체계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 관련 시스템 관련 설비 등 원본증명업무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 1. 28.〕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사업계획서
2. 제3조의2 각 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원본증명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3.,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그 지정신청이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제출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⑤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4. 1. 28.〕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3조의5(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원본증명기관의 명칭 및 주소(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처분의 내용

〔본조신설 2014. 1. 28.〕

제3조의6(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인수) ① 법 제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원본증명기관지정서 원본
2. 법 제9조의4제4항 본문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의 인계·인수계약서 사본 1부

② 법 제9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이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될 때까지는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2.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 및 그 목록 1부

〔본조신설 2014. 1. 28.〕

제3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개정 2023. 12. 12.,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4. 1. 28.〕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 받는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은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②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지식재산처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해당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의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2.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가 취한 이익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3.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4. 1. 28.〕

제4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삭제 〈2011. 9. 22.〉

② 삭제 〈2011. 9. 22.〉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 9. 22., 2021. 4. 20., 2025. 10. 1.〉

1.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2. 법 제2조의5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9. 22.〉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1. 9. 22., 2014. 1. 28., 2025. 10. 1.〉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2., 2025. 10. 1.〉

〔전문개정 2009. 8. 18.〕

〔제목개정 2011. 9. 22.〕

제4조의2(공동사무의 운영절차)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의 운영절차 및 지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1. 9. 22.〕

제5조(교육)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09. 8. 18.〕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제3조의2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2021년 1월 1일
2.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2021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1. 4. 20.〕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9. 8. 18.〕

부 칙〈제35809호, 2025. 10. 1.〉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조의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조제2항·제4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3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8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 제5조 및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조의6제4항 전단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3조의3제5항 중 "특허청 인터넷"을 "지식재산처 인터넷"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같은 표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5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비고란 중 ""특허청" 또는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를 각각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별표 1〕〈개정 2025. 10. 1.〉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제3조의4 관련)

1. 전자지문의 추출·등록 및 보관(법 제9조의3제4항제1호 관련)
   가. 원본증명기관은 원본등록 신청인이 보유한 영업비밀로부터 전자지문을 추출·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원본등록확인서를 발급할 것
   나. 원본증명기관은 등록된 전자지문을 안전하게 보관할 것
2.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법 제9조의3제4항제2호 관련)
   가.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 발급 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원확인을 위한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할 것
   나.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의 발급명세 등을 관리할 것
3.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법 제9조의3제4항제3호 관련)
   가.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 담당 및 책임 직원에 대하여 그 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것
   나.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릴 것
4. 원본증명업무의 운영·관리(법 제9조의3제4항제4호 관련)
   가.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와 관련한 정보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나.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관리할 것
   다. 원본증명기관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관련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개정 2023. 9. 27.〉

행정처분 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9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법 제9조의4	지정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부분 본문에 따라 원본증명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를 한 경우	제3항제2호			
다.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중단한 경우	법 제9조의4제3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라.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4제3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4제3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4제3항제5호	경고	지정취소	

〔별표 3〕〈신설 2014.1.28〉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7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자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마. 라목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는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월의 이전 1년간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지정·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별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1년간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 (단위: 건)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만원)
600 이하 60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20 40 60

〔별표 4〕〈개정 2024. 8.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관계 공무원의 영업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영업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500	1,000	2,000
2) 영업장 내의 증거품을 반출하거나 숨기거나 인멸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200	400	800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장을 이탈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100	200	400
4)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조사 확인이나 조사에 필요한 제품의 수거를 거부하는 등 기피행위를 한 경우		50	100	200
나. 법 제8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2	300	600	1,200
다. 법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300	600	1,200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10. 1.〉

제 호

수거증

사업소(영업소)명:

소재지:

사업자 성명:

수거물품 명세

상표	제품	수량	상표	제품	수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을 수거하오니 이 수거제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년 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속: (전화:)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1. 위 수거제품에 대한 검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돌려 드립니다.
2.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조사팀(전화번호)(시·도, 시·군·구의 경우에는 관할 부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 10. 1.〉

(앞쪽)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제 호

성 명

지식재산처

50㎜×80㎜[백상지 150g/㎡]

(색상: 하늘색)

(뒤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지식재산처장 직인

비고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처장" 대신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를 표시한다.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 10. 1.〉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상호(또는 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원본증명업무의 종류 및 내용

원본증명업무 제공 대상 또는 지역

주요 장비의 개요 및 설치장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재산처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원본증명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5. 10. 1.〉

제 호

원본증명기관지정서

기관명 :

대표자 :

주 소 :

제공서비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식재산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5. 10. 1.〉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신고인	상호(또는 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계 불가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식재산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2.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 및 그 목록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인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5. 10.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

①법인명		②연락처	
③주소			
④업무명			
⑤신청금액			

위와 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재산처장 귀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Ⅳ

종전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20692호)

1

종전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20692호, 시행 2025. 7. 22.)

디 자 인 보 호 법
(법률 제2069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제7조(대리권의 범위)
제8조(대리권의 증명)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제11조(개별대리)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6조(기간의 계산)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제18조(절차의 무효)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제21조(절차의 속행)
제22조(절차의 중단)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4조(수계신청)
제25조(절차의 중지)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5조(관련디자인)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제39조(공동출원)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43조(비밀디자인)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6조(선출원)
제47조(절차의 보정)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49조(보정각하)
제50조(출원의 분할)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제52조(출원공개)
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55조(정보 제공)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제5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3장 심사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1조(우선심사)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63조(거절이유통지)
제64조(재심사의 청구)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
제66조(직권보정)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재심사)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70조(심사·결정의 합의체)
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8조(준용규정)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79조(디자인등록료)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제83조(등록료의 보전)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제85조(수수료)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5장 디자인권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5조(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제97조(전용실시권)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99조(통상실시권)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1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2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3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제10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105조(디자인권의 포기)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07조(포기의 효과)
제108조(질권)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

제110조(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디자인권 소멸)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16조(과실의 추정)
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118조(서류의 제출)

제7장 심판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25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25조의2(국선대리인)
제126조(심판청구방식)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8조(심판청구의 각하 등)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130조(심판관)
제131조(심판관의 지정)
제132조(심판장의 지정)
제133조(심판의 합의체)
제134조(답변서 제출 등)
제135조(심판관의 제척)
제136조(제척신청)
제137조(심판관의 기피)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40조(심판절차의 중지)
제141조(심판관의 회피)
제142조(심리 등)
제142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43조(참가)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45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46조(심판의 진행)
제146조의2(적시제출주의)
제147조(직권심리)
제148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
제150조(심결)
제151조(일사부재리)
제152조(소송과의 관계)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153조(심판비용)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제15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58조(재심의 청구)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67조(피고적격)
제16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6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2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9장「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제173조(국제출원)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 발생시기)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제183조(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
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
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9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10장 보칙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제208조 삭제
제209조(서류의 송달)
제210조(공시송달)
제211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12조(디자인공보)
제213조(서류의 제출 등)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
제216조(불복의 제한)
제217조(비밀유지명령)
제21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1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1장 벌칙

제220조(침해죄)
제221조(위증죄)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제224조(비밀유지명령위반죄)
제225조(비밀누설죄 등)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7조(양벌규정)
제228조(몰수 등)
제229조(과태료)

부 칙

디자인보호법

제 정 1961. 12. 31 법률 제 951호
전부개정 1973. 2. 8 법률 제2507호
일부개정 1973. 12. 31 법률 제2660호
타법개정 1976. 12. 31 법률 제2957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27호
일부개정 1982. 11. 29 법률 제3568호
일부개정 1986. 12. 31 법률 제3894호
전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208호
타법개정 1993. 3. 6 법률 제4541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5호
일부개정 1995. 1. 5 법률 제4894호
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82호
일부개정 1997. 4. 10 법률 제5329호
일부개정 1997. 8. 22 법률 제5354호
타법개정 1998. 9. 23 법률 제5576호 (특허법)
타법개정 1999. 9. 7 법률 제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2001. 2. 3 법률 제6413호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6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12. 11 법률 제6767호
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 제7289호
일부개정 2005. 5. 31 법률 제7556호
타법개정 2006. 3. 3 법률 제7869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7. 1. 3 법률 제8187호
타법개정 2007. 4.11 법률 제 8357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7. 5.17 법률 제 8456호
타법개정 2008. 2.29 법률 제 8852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12.26 법률 제 9223호
타법개정 2009. 1.30 법률 제 9381호 (특허법)
일부개정 2009. 6. 9 법률 제 9764호
타법개정 2010. 2. 4 법률 제10012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11. 6.30 법률 제10809호
일부개정 2011.12. 2 법률 제11111호
타법개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2013. 5.28 법률 제11848호
타법개정 2013. 7.30 법률 제11962호 (변리사법)
일부개정 2014. 1.21 법률 제12288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40호
일부개정 2016. 2.29 법률 제14032호
일부개정 2017. 3.21 법률 제14686호
일부개정 2018. 4.17 법률 제15579호
일부개정 2019. 1. 8 법률 제16203호
일부개정 2020.10.20 법률 제17526호
일부개정 2020.12.22 법률 제17725호
일부개정 2021. 4.20 법률 제18093호
일부개정 2021. 8.17 법률 제18404호
일부개정 2021.10.19 법률 제18500호
일부개정 2022. 6.10 법률 제18886호
일부개정 2022.10.18 법률 제18998호
일부개정 2023. 6.20 법률 제19494호
일부개정 2023. 9.14 법률 제19710호
타법개정 2024. 2. 6 법률 제20200호
일부개정 2025. 1.21 법률 제2069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

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

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디자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디자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디자인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디자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의 선임

제8조(대리권의 증명)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제11조(개별대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제132조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리인이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취하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의 신청
5.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제16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제58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

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0. 19.〉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2. 29.〉

1.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21조(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절차의 중단)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2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제24조(수계신청) ①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특허청장 또는 제130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⑥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5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절차의 중지)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② 당사자에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권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 4. 17.〉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으로 증명한 날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디자인등록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제7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종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

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에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6. 20.〉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이들 디자인 사이에는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6. 20.〉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

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② 삭제 〈2023. 6. 20.〉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이하 "물품류"라 한다)
4.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7.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8.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 도면·사진 또는 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도면에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본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39조(공동출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

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비밀디자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열람청구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라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선출원)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2021. 10. 19., 2023. 6. 20.〉

1.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2. 제6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
3.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0. 19.〉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50조(출원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자인등

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6. 20.〉

③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다.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10. 19., 2023. 6. 20.〉

⑤ 제4항에 따라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9., 2023. 6. 20.〉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46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7. 3. 21.〉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3. 6. 20.〉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23. 6. 20.〉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①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52조(출원공개)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제212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이하 "디자인공보"라 한다)에 게재

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業)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118조 또는 「민법」 제760조·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73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제12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제1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55조(정보 제공) 누구든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특허청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4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심사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디자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우선심사)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34조, 제37조제4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0.〉

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하여 제55조에 따른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1. 10. 19.〉

1.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디자인등록결정 전

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4조(재심사의 청구)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제외한다)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20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19.〉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직권보정) ① 심사관은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관은 그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여

야 한다.

⑥ 직권보정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신설 2023. 6. 20.〉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제35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0.〉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0.〉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70조(심사 · 결정의 합의체)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결정한다.

② 특허청장은 각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 제132조제2항 및 제133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결정할 수 있다.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합의체는 제68조제3항 및 제6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심사장은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사건의 번호
2.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과 관련된 디자인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②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등본을 이의신청인과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은 "심사"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본다.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8조(준용규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 제129조,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 제142조제7항, 제145조, 제1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54조를 준용한다.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79조(디자인등록료) ① 제90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이하 "등록료"라 한다)를 내야 하며,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그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는 그 납부 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낼 때에는 디자인별로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내야 할 등록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③ 추가납부기간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등록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83조(등록료의 보전)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79조제3항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1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 27.〉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5조(수수료)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등록료 및 수수료
2. 제121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청구한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 1. 21., 2016. 1. 27., 2021. 8. 1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등록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8. 17.〉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2016. 1. 27., 2021. 8. 17.〉

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3.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
   나. 제61조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다. 심사관이 제63조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4. 제157조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보정 또는 제12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심판청구가 제128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개정 2022. 10. 18.〉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①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디자인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 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디자인권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였을 때
3. 제83조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3.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제95조(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①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디자인권이 그 디자인권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

12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②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③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디자인권은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제97조(전용실시권)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實施事業)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④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디자인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9조(통상실시권)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④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⑤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⑥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01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제100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타인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받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을 것
2.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3. 제1호 중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제102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2 이상의 등록디자인 중 그 하나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原)디자인권자
2.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의 원디자인권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

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해당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등록을 받은 자
2. 제104조제2항에 해당하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3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하 "원디자인권"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디자인권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원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과 저촉되고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84조제5항,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10조, 제162조, 제16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05조(디자인권의 포기)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및 제97조제4항·제99조제1항 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및 제97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107조(포기의 효과)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제108조(질권)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110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자(공유인 디자인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제목개정 2021. 10. 19.〕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①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소멸된다. 〈개정 2021. 10. 19.〉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신설 2021. 10. 19.〉

〔제목개정 2021. 10. 19.〕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3.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의 합계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1. 그 물건의 양도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 10. 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5. 1. 21.〉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16조(과실의 추정) ①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8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심판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9.〉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9.〉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0.〉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디자인등록된 후 그 디자인권자가 제27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①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제95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4항제1호, 제49조,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4항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는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까지"로 보고, 제49조제3항 중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심판절차에서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5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제121조제1항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또는 제122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3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25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26조(심판청구방식) ① 제121조부터 제123조까지에 따라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0.〉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디자인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22조에 따라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디자인을 말한다)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

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2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실시하려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제120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7. 30.〉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과 출원번호(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일과 등록번호)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 또는 보정각하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개정 2023. 9. 14.〉

1. 심판청구서가 제126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127조제1항에 위반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나.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26조제2항 또는 제12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2023. 9. 14.〉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14.〉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14.〉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신설 2023. 9. 14.〉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신설 2023. 9. 14.〉

〔제목개정 2022. 2. 3.〕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

제130조(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31조(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33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32조(심판장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133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4조(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135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제136조(제척신청) 제135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7조(심판관의 기피) 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

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36조 및 제137조에 따라 제척 및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140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1조(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35조 또는 제13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2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조서는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제299조 및 제

367조를 준용한다.

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제142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4.〕

제143조(참가) ① 제125조제2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145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증거보전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6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42조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146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147조(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제148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같은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50조(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

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제123조의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51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디자인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디자인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153조(심판비용) ① 제121조제1항 및 제122조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19조·제120조 또는 제123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4조제1항·제2항, 제143조 및 제144조는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디

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5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58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품에는 미

치지 아니한다.

1. 무효가 된 디자인권(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된 디자인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1.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디자인의 선의의 실시
2. 등록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① 제1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이에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 목적 및 디자인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

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3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⑦ 제1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53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167조(피고적격) 제166조제1항에 따른 소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제16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한 소 또는 제166조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6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6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

허심판원을 기속한다.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0조에 따른 소송에서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172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제173조(국제출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99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을 통하여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①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헤이그협정의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1.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의 취지
2.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 주소가 서로 다르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락을 받을 주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3. 제174조 각 호에 관한 사항
4.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는 국가(헤이그협정 제1조(x ii)에 따른 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5. 도면(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7. 헤이그협정 제5조(1)(vi)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④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정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출원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도면 또는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설명
3. 디자인권의 청구범위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국제출원서,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함께 헤이그협정 제1조(x x viii)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 사본을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인"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장에서 "대체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의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3.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국제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국제출원인(대리인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과 연락을 하기 위한 주소 등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
5. 도면 또는 견본이 없는 경우
6. 지정국 표시가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대체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체서류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로 본다.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①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국제출원서 및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사무국으로 보내는 데에 필요한 금액(이하 "송달료"라 한다)을 특허청장에게 내야 한다.

② 송달료, 그 납부방법·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허청장은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①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으로 본다.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33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보,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로 한다.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제2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3조(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① 헤이그협정 제16조(1)(ⅳ)에 따른 포기 및 같은 협정 제16조(1)(ⅴ)에 따른 감축 등 변경사항의 등재에 따라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며, 국제등록디자인권(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 또는 포기의 효력은 국제등록부에 해당 국제등록의 변경사항이 등재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① 특허청장은 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10조(5)(a)에 따른 비밀사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이하 이 절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목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2.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① 제48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은 "도면의 기재사항"으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48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 공개가 있은 날부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으로 한다. 〈개정 2023. 6. 20.〉

④ 제48조제5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① 제50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는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로 한다.

② 제50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48조제4항"은 "제186조제3항"으로 한다.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51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일"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로 한다.

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5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은 각각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된"으로 한다.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① 제57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③ 제57조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2항 및 제5항"은 "제2항"으로 한다.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제61조제1항제1호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37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6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로 한다.

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물품류에 따라 같은 협정 제7조(1)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또는 같은 협정 제7조(2)에 따른 개별지정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및 개별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나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87조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청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99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국제등록만료일"이라 한다)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만료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93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없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2.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이 제96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8조제1항제1호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③ 제98조제2항을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은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07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은 각각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①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이하 이 조에서 "경정"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경정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은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206조제2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제10장 보칙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디자인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 · 심사 · 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①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21. 8. 17., 2024. 2. 6.〉

1.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1의2.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②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제208조 삭제 〈2024. 2. 6.〉

제209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0조(공시송달) 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11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디자인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212조(디자인공보)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3조(서류의 제출 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제216조(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심결,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제217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그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1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1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았을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

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장 벌칙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2. 6. 10.〉

제221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제2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제224조(비밀유지명령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7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5조(비밀누설죄 등)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연기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85조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도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225조를 적용할 때에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본다.〈개정 2024. 2. 6.〉

제2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제1항,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28조(몰수 등) ① 제2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20692호, 2025.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디자인 관련 법령집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발 행 처 : 지식재산처
- 발 행 일 : 2025년 12월
- 편　　찬 :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정책과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TEL : 042)481-5766
  FAX : 042)472-7470
  www.moip.go.kr

ISSN : 2092-6014

※ 디자인 관련 법령집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책의 무단복제 및 전재를 금함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OPEN 공공누리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